신용정보관리규약

2012. 10.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 국 은 행 연 합 회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제도는 「신용정보법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업권 대표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가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신용정보관리규약집」은 2010년 규약집 발간이후 개정된 「신용정보법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및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과 수차례 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반영하였으며, 금융기관 실무자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 해설'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2012.8월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용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글화하고 중복되는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업무 담당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규약집이 금융기관 신용정보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우리 연합회는 앞으로도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체제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규약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금융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협력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10월

전 국 은 행 연 합 회

신 용 정 보 부 장

총 목 차

- 신용정보관리규약 ····· 1
- 신용정보관리규약 해설 ····· 69
- 신용정보관련 법령·규정 등 ····· 171
-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등 ····· 313

신용정보관리규약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7
제2조【용어의 정의】 ····· 7
제3조【적용기관·관리기관】 ····· 8
제4조【신용정보의 등록】 ····· 8

제2장 신용거래정보

제5조【신용거래정보】 ····· 9

제3장 신용도판단정보

제6조【신용도판단정보】 ····· 10
제7조【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특례】 ····· 11
제8조【어음 및 수표 최종부도거래처의 해제】 ····· 12
제9조【어음 및 수표의 회수인정】 ····· 12

제4장 신용능력정보 등

제10조【신용능력정보】 ····· 13
제11조【공공정보】 ····· 14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한】 ····· 15
제13조【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 15
제14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청】 ····· 16
제15조【신용정보의 누설 금지】 ····· 16

제6장 신용정보의 관리

제16조【신용정보의 관리사항】 ····· 16
제17조【신용도판단정보의 관리예외】 ····· 17
제18조【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 방식 변동】 ····· 17
제19조【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 ····· 17
제20조【신용정보의 정비】 ····· 18
제21조【신용정보의 정정·삭제】 ····· 18
제22조【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 ····· 19
제23조【장부 및 서류 보관】 ····· 19

제7장 보안관리

제24조【신용정보 인터넷망 이용】 ····· 20
제25조【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20

제8장 보 칙

제26조【규약위반에 대한 제재】 ····· 20
제27조【신용정보운영분담금】 ····· 20
제28조【신용정보 제공·이용의 제한】 ····· 21
제29조【위임】 ····· 21

부 칙 ····· 21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 32
〈별표 2〉 외국인·재외동포의 신용정보 등록시 관리번호 부여요령 ····· 50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 ····· 51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52
〈별지 제3호 서식〉『기업신용거래정보 대상기업체』 변동상황 보고서 ····· 54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55
〈별지 제5호 서식〉 신용정보 정정요청서 ····· 56
〈별지 제6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 ····· 57
〈별지 제7호 서식〉 기업어음(CP) 거래상황표 ····· 68

신용정보관리규약

2000. 7. 28. 제정
2001. 1. 2. 시행
2001. 3. 21. 개정
2001. 4. 19. 개정
2001. 6. 5. 개정
2001. 7. 18. 개정
2001. 7. 21. 개정
2001. 12. 11. 개정
2001. 12. 31. 개정
2002. 4. 26. 개정
2002. 6. 12. 개정
2002. 7. 9. 개정
2002. 8. 2. 개정
2002. 9. 2. 개정
2002. 10. 10. 개정
2002. 10. 30. 개정
2003. 6. 16. 개정
2003. 9. 1. 개정
2003. 10. 15. 개정
2004. 1. 2. 개정
2004. 4. 26. 개정
2004. 6. 18. 개정
2004. 9. 10. 개정
2004. 11. 23. 개정
2005.3.25.전면개정
2005. 6. 3. 개정
2005. 8. 3. 개정
2005. 11. 8. 개정
2005. 12. 9. 개정
2006. 1. 25. 개정
2006. 3. 28. 개정
2006. 5. 9. 개정
2006. 7. 11. 개정
2006. 10. 2. 개정
2007. 4. 30. 개정
2007. 8. 31. 개정
2007. 12. 24. 개정
2008. 5. 7. 개정
2008. 7. 28. 개정
2008. 9. 1. 개정
2008. 12. 9. 개정
2009. 4. 8. 개정
2009. 6. 12. 개정
2009. 10. 26. 개정
2010. 2. 2. 개정
2010. 4. 30 개정
2010. 8. 9. 개정
2011. 1. 31. 개정
2011. 7. 4.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3. 30. 개정
2012. 8. 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금융기관 간 신용정보의 교환·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및 공공정보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26.)
2. "신용정보주체"란 개인, 개인기업, 법인 및 법인의 관련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을 말한다. (이하 '거래처'라 한다)(개정 2012.8.29.)

3. "금융기관"이란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26.)
4. "연체"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신용공여"란 기업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6. "주채무계열"이란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 계열기업군을 말한다.(개정 2012.8.29.)
7. "기타 계열"이란 주채무계열이 아닌 2개 이상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지정하는 기업의 계열을 말한다.
   (신설 2005.12.9.)
8. "과점주주"란「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의 해당자로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개정 2007.4.30. 2010.2.2. 2012.8.29)

제3조【적용기관·관리기관】 이 규약은 제2조제3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신용정보의 관리업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담당한다. (개정 2009.10.26.)

제4조【신용정보의 등록】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시 전산매체(전산망 포함) 또는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별지 제6호 서식>, 「기업어음거래상황표」<별지 제7호 서식>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2012.8.29.)

제 2 장 신용거래정보

제5조【신용거래정보】 ① 신용거래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대상거래처, 등록사유・등록코드, 해지코드, 등록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2009.10.26.)

1. 개인대출・채무보증현황, 기업신용공여현황
2. 신용카드현금서비스현황
3.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4.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의 신용거래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26. 2011.12.27. 2012.8.29.)

1.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거래
2.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발급(자동갱신 발급 제외) 및 해지거래
3. 대출거래(약정 시 1회 징구)
4. 채무보증(약정 시 1회 징구)

③ 금융기관이 개인대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함에 따라 기 등록된 대출정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종류, 등록금액, 계좌번호 등을 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대출정보를 해지하고 특수채권으로 신규 등록(부분상각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정보 계좌번호를 추가로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3.30.)

④ 신용공여(연체포함), 담보현황, 한도거래상황, 기업어음정보,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제공 대상거래처(이하 '대상기업체'라 한다)의 신규발생, 변경,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신용거래정보 대상기업체 변동상황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산매체(전산망 포함)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는 주채무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는 신규편입, 변경, 합병 등의 내용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직접 등록한다. (개정 2007.8. 31. 2008.7.28. 2009.10.26. 2012.8.29.)

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상기업체 명단을 종합하여 전산매체(전산망 포함)로 금융기관에 매월 2회(10일, 25일 기준)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8.31 2012.8.29.)

⑥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 거래처가 소속된 계열 기업군중 주채무계열이 아닌 기타계열기업군에 대하여 계열기업군형성 및 변동 상황을 매분기말 다음 달 30일 이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9.10.26.)

제 3 장 신용도판단정보

제6조【신용도판단정보】 ① 신용도판단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해당 정보의 관련인정보 포함·이하 "연체 등" 이라 한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그 관련인정보를 말하며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등록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1> 「관리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9.10.6. 개정 2012.8.29.)

② "연체 등"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신설 2009.10.26. 개정 2012. 8.29.)

1.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은 연체기산일로부터 「관리기준」의 등록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등록사유발생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한다. (개정 2010.8.9. 2012.8.29.)
2. 제1호의 연체기산일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상환에 의해 차기납입일이 변경된 경우 연체기산일은 차기납입일의 다음 날로 한다.

3. 연체정보의 등록금액은 남은 대출원금으로 하며, 연체금액은 실제 연체가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등록금액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청구 후 미결제원금으로 한다.(할부로 청구된 경우 미결제원금을 포함)
4. 최초 "연체 등"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특수채권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각 등록코드 앞에 "7"을 추가하여 구분 표시한다. 다만,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신용도판단정보의 관련인에 대하여는 각 등록코드 앞에 "8"을 추가하여 등록한다.
5. 해외대출금연체,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 등록대상은 해외영업점 거래처로서 주민등록번호로 약정한 개인, 개인기업, 국내법인(해외지사 포함) 등으로 한다.(개정 2012.8.29.)
6. 채무부존재소송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판결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본다.

③ "연체 등"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은 해당 연체사유 등이 해소된 날로 하며, 구체적인 해제사유는 「관리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9.10.26. 개정 2012.8.29.)

제7조【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 등"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1. 본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로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인계절차 미필로 등록대상이 된 매도인
2. 건설업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자에게 실행된 대출금으로서 건설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된 거래처
3. 본인의 예・적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불입액 범위내의 대출을 연체한 거래처 (신설 2009.10.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6.)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투자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업체의 관련인이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개정 2010.2.2.)
2.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관에 대한 출자법인 등
3. 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③ 어음 및 수표의 최종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도판단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10.26. 2012.8.29.)

1.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제8조【어음 및 수표 최종부도거래처의 해제】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에 대한 해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8.29.)

1. 부도처리한 어음·수표를 회수한 경우
2. 제9조에 의거 회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9조【어음 및 수표의 회수인정】 ① 부도 처리된 어음 및 수표를 분실·멸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또는 수표 용지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1. 수사기관의 증거물 압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2. 변제공탁을 한 경우
3. 공시최고와 함께 어음 및 수표금액을 별단예금에 입금한 경우
4. 어음 및 수표에 대하여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5. 어음 및 수표의 결제 당시 소지인(이하 "최종소지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거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첨부한 결제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

6.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되고 어음 및 수표의 최종소지인의 사망, 행방불명, 주민등록 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거래처가 다음 각목의 하나를 취한 경우
   가. 신문 공고와 함께 어음 및 수표 금액을 별단예금에 입금한 경우
   나.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날까지 어음 및 수표의 소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관계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의한 신문 공고 신청이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거래처로 하여금 전국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토록 하되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어음 및 수표의 종류, 번호, 발행일, 발행인, 지급장소, 발행금액
2. 공고인의 성명
3. 공고의 취지
4. 어음 및 수표의 소지인이 권리관계를 신고할 장소 및 신고 기간

③ 별단예금 입금액은 제1항제3호의 경우 제권판결문을 제출할 때까지, 제1항제6호 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에 대한 신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신용능력정보 등

제10조【신용능력정보】 신용능력정보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 등과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코드, 등록시기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0.26. 2012.8.29.)

제11조【공공정보】 ① 공공정보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인 등록사유·등록코드, 등록시기, 해제사유·해제코드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0.26.)

1.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자
2.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체납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체납자
4. 「관세법」에 의한 관세체납자
5.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자(개정 2012.8.29.)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자
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일반회생 포함)가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개정 2012.8.29.)
8.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9.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거래처
1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12. 조달청의 정부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신설 2011.1.31.)
1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의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신설 2011.12.27.)

② 제1항 제7호 및 제8호는 신용거래정보중 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연체 등"정보 중 어느 하나가 등록된 거래처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연체 등"정보가 등록된 거래처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10.26. 개정 2010.2.2.)

③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는 "연체 등"정보가 등록된 거래처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10.26.)

④ 공공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등록하거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당해 공공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⑤ 제1항 제7호의 경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연체 등"정보 해제사유 발생일로하여 당해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정보를 해제한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제 처리한다. (개정 2009.10.26. 2011.12.27.)

⑥ 제1항 제8호의 경우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일을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연체 등"정보의 해제(지)사유발생일로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제(지)처리한다. (개정 2009.10.26.)

⑦ 제1항 제9호의 경우 신용회복지원확정일을 "연체 등"정보 해제사유발생일로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연체 등"정보를 해제 처리한다. (개정 2009.10.26.)

⑧ 제1항 제10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확정일을 "연체 등"정보 해제사유발생일로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연체 등"정보를 해제 처리한다. (개정 2009.10.26.)

제 5 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한】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26. 2012.8.29.)

제13조【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금융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정보는 제외)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09.10.26. 개정 2011.12.27 2012.8.29.)

제14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청】 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거래처)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유무선통신,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2010.8.9.)

②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달라 서면으로 정정·삭제 요청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7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경과 등을 우선 통보하고 처리가 끝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09.10.26.)

제15조【신용정보의 누설 금지】 신용정보업무와 관련한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거래처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6.)

제 6 장 신용정보의 관리

제16조【신용정보의 관리사항】 ① 금융기관은 거래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9.10.26.)

1.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가. 개 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별표 2>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
   -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다. 법 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 개인기업·법인의 기업체명
3. 성명(개인기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4. 직업(개인기업·법인의 경우 업종)

5. 거래 금융기관 및 점포명

6. 등록사유

7. 사유발생일자

8. 사유해제일자(해지일자)

9. 해제사유

10. 금액(등록・연체금액)

11. 등록일자

12. 약정일자

13. 계좌번호(또는 식별번호)

② "개인대출정보"와 "연체 등"정보는 발생내역별로 관리하고, 기타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2011.7.4 2012.8.29.)

제17조【신용도판단정보의 관리예외】 ①「관리기준」상의 신용도판단정보 중 등록금액 50만원 이하의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단 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은 제외)에 대하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5.11.8. 2009.10.26. 2010.2.2. 2012.8.29.)

② 전항의 연체건수를 포함하여「관리기준」상의 신용도판단정보가 2건 이상일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05.11.8. 2012.8.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개정 2005.11.8. 2012.8.29.)

1. 신용도판단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9.10.26.)

2. 발생내역별 "연체 등"의 사유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제18조【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 방식 변동】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신용정보의 집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8.29.)

제19조【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 ①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능력정보는 등록사유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한다. (개정 2009.10.2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신용거래정보 중 기업신용공여정보는 해당 자료의 등록 기준일로부터 12월보의 경우 3년, 기타월보의 경우 1년, 일보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존한다.

③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0.26.)

1. "연체 등"정보 :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

2. 금융질서문란정보 : 5년(개정 2010.8.9.)

④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신용도판단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며,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1.25. 2009.10.26.)

⑤ 공공정보 중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하며,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0.26.)

⑥ 공공정보 중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며,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개정2009.10.26.)

제20조【신용정보의 정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16조(신용정보의 관리사항)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즉시 정정하여 신용정보의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제21조【신용정보의 정정·삭제】 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정정, 삭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정정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사실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록을 유예하여야 하며, 등록된 이후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정정청구 등을 받은 경우 즉시 정정청구중(코드 0044)"임을 입력하고, 금융기관은 정정이 청구된 정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한 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가 사실인 경우에는 "정정청구중 해소(코드 0055)"한다. (개정 2009.6.12.)

④ 제3항에 의거 정정청구중(코드 0044)이 입력된 정보는 정정청구중 사실만 공유되며, 구체적인 등록내용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해당 금융기관만 관리한다. (신설 2009.6.1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체등정보' 등록을 유예하며, '연체등정보' 등록 후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체등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2.)

⑥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의 등록대상이 아닌 거래처를 등록하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등록취소(코드 0077)"임을 전산 입력한다. (신설 2007.8.31. 개정 2009.6.12. 2011.12.27. 2012.3.30.)

⑦ 금융기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취소(코드 0077)"가 표시된 정보를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신설 2012.3.30.)

제22조【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연체자명단 등 신용정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이 정정, 취소, 삭제 후 신규 등록한 신용정보를 전산 처리 후 그 내역을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신용정보업무 담당부서 및 검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 및 서류 보관】 ① 금융기관은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거래처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서류를 해제 후 기록보존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②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정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해당 조치일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제 7 장 보안관리

제24조【신용정보 인터넷망 이용】 금융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인터넷망"을 통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1. 신용정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신용정보 인터넷망의 조작자를 지정하고 동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터넷망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통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2. 인사이동, 기타의 사유에 따른 조작자 교체 임명 시에는 지체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금융기관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 포함)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제 8 장 보 칙

제26조【규약위반에 대한 제재】 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 교환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누락, 지연, 거짓 등록 등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 「신용정보제재금부과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담한다.

② 제재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신용정보운영분담금】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신용정보협의회에서 결정한 신용정보운영분담금을 부담한다. (개정 2009.10.26.)

제28조【신용정보 제공·이용의 제한】 금융기관이 이 규약에서 정한 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8.31. 2009.10.26.)

제29조【위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의 범위 및 관리기준의 변경은 신용정보협의회규약 제12조의 신용정보실무협의회에 위임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1. 1. 2. 부터 시행한다.

2.【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신용위험평가협의회 협약 대상기업에 대한 특례】

가. 종전 업권별 규약 상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다. '신용위험평가협의회 협약'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3.【신용불량정보 대상자중 관련인에 대한 특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표 1〉「관리기준」의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투자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업체의 관련인이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관에 대한 출자법인 등

다. 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4.【경과조치】

가. 이 규약 시행일 이전의 각 금융업권별 자율규약은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 연체가 진행 중이나 종전 업권별 규약에 의해 이 규약 시행일 전까지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는 2001. 1. 2.에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 제5조제1항제2호의 정보 집중 시기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1. 4.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개인채무보증정보 집중시기 이전에 발생된 개인채무보증은 기한연장·갱신·대환 등의 시점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를 징구하고 등록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1. 5. 1.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관리기준」의 특수채권 개정내용은 2001. 7.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1.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1. 6. 29.부터 시행한다.
2.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당해기업에 대한 특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당해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1. 8. 1.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제1항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02. 3. 1.부터 시행한다.

   ② 전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정보 집중기준 하향조정 관련 사항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개인대출금은 기한연장(자동갱신 등 자동기한연장 포함), 갱신, 대환 등의 시점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를 징구하고 등록한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2. 1. 2.부터 시행한다. 단, 제 25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제8조제4호, 제15조제1항의 정보 집중 및 기업신용거래정보 집중기준 하향조정은 2002.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7.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9. 2.부터 시행한다. 단, (서식 7)은 2002.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10.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3. 8.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용정보 집중시기 단축과 관련하여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3.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3. 10.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4. 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4. 4. 26.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약은 시행일 이전의 신용불량정보와 기록보존중인 정보 중 등록코드 0608, 0609, 0610운 각각 0112, 0206, 0207로 전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4. 7. 5.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는 2004. 8. 1.부터, 제18조제2항의 기업어음거래상황정보는 2005.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4. 9. 23.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제1항제10호는 2004.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4. 12. 1.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및 신용공여조사표 개정에 따른 집중은 2005. 2. 1.부터시행하며, 신용공여조사표(은행)상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단'의 집중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

2.【**금융질서문란자 등록의 예외**】 신용카드 현금융통 의뢰인이 현금융통관련자(가맹점, 현금융통업자)를 2005. 12. 31.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0933)에서 제외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해제사유(해제코드 13) 신설은 2005. 8.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카드론현황은 2006.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집중시기 단축은 2007. 9. 1.부터 시행하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에 의한 특례는 2007. 3. 30.부터 시행한다.

2.【**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에 의한 기업에 대한 특례**】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에 의한 기업에 대하여는 연체등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부 칙

1.【**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07. 10. 1.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제4항은 2007. 8. 20.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신규 집중, 기업어음거래 상황표 개정, 제2금융권 신용공여조사표 통합・변경 및 한도거래・담보기록 추가 집중, 대상기업체 통보 확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의 한도거래상황 및 담보기록 추가 집중은 2008. 6. 1.부터, 새마을금고의 한도거래상황 및 담보기록 추가집중은 2009.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8. 6.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여(연체정보)는 2009. 7. 1.부터 시행하며, 공공기록정보 추가 및 신용공여조사표 변경은 2008.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8.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단 새마을금고의 일일여신(평일보) 집중방식 변경은 200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9.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9. 7. 1.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는 2009. 5. 29. 시행한다.
2. **제2조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채권공동관리 기업에 대한 특례】**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용을 받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기업에 대하여는 연체(10일 이상 연체 포함)등 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부 칙

1.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9. 9. 1.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의 종전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학자금대출연체는 이 규약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9. 10. 2.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거래 집중항목 추가, 해제코드(15) 신설은 2009.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유예】** 신용카드 현금융통 의뢰인이 현금융통관련자(가맹점, 현금융통업자)를 2010. 2. 8.부터 2010. 12. 31.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중 금융질서문란정보(0933)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10. 5.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10. 9.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는 2010. 11. 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규약에 따라 시행된 전자어음 부도정보는 이 규약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1. 3. 1.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중 31번 신용공여조사표(은행, 특수금융기관)변경은 2011. 3. 31.자 일일집중분(말일보)부터 시행하고, 31번 신용공여조사표(비은행금융기관) 변경은 2011.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2. 1.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일 이전 종전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개인대출정보는 등록기관이 시행일 전(2012. 1. 24)까지 이 규약에 따라 정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1. 4.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13조는 2011.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1.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의 단서 및 제21조제6항 중 개인채무보증정보・카드론현황・신용카드현금서비스의 등록취소 구분(0077)은 2012.5.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12. 9. 10.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 변경 사항은 등록사유발생일이 이 규약 시행일 이후인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신 용 정 보 관 리 기 준

1. 식별정보

구 분		항 목	내 용
식별정보	개 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하되, 동 번호가 없는 경우 〈별표 2〉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여권번호 조합)를 사용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 집중(주민등록초본에 의한 확인) • 점포코드, 성명, 변경전·후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직 업	- 신용도판단정보의 경우 제외 (개정 2009.10.26.)
	개 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신용거래정보의 등록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함. (개정 2005.12.9.)
		- 기업체명	
		- 대표자명	
		- 업 종	
	법 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기업체명	
		- 대표자명	
		- 업 종	

2. 신용거래정보

1) 개설・발급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등록시기	비 고
개설・발급 정 보	당해 개인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0011	0012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07.4.30.)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0081	0082		
		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0083	0084		
	개인기업 및 법인	가계당좌 개설 및 해지사실	0011	0012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0021	0022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0081	0082		

2) 개인대출정보

구분	대상 거래처	등록 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대출(담보)종류 (신설 2011. 7. 4)			서민금융 (신설 2011.7.4)		등록시기	비 고
					종류		코드	종류	코드		
대출 현황	당해 개인	대출 거래 사실	0031	0032	신용 대출	신용대출	100	새희망 홀씨	100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개정 2007.4.30. 2011. 7. 4)	- 담보대출중 부분담보 구분 • "0" : 담보 대출 • "1" : 부분담보 대출 - 서민금융 구분은 취급기관간에만 공유 .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도 제공 (개정 2011.12.27)
						학자금대출	150				
					담보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200				
						유가증권(주식,채권, 펀드 등)담보대출	210				
						주택담보대출	220				
						주택외 부동산(토지, 상가등)담보대출	230	햇살론	200		
						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	240				
						학자금(지급보증담보) 대출	250				
						기타 담보대출	290				
					할부 금융	신차 할부금융	500				
						중고차 할부금융	510	기타	900		
						기타 할부금융	590				
					리스	금융리스	700				
						운용리스	710				

3) 카드론현황 등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등록시기	비 고
카드론현황 (신설 2005.11.8.)	당해 개인	카드론 거래사실	0037	0038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개정 2011. 7. 4.)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사실	0041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개정 2006.10.2. 2011. 7. 4.)	

4) 개인채무보증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등록시기	비 고
개인채무 보증정보	당해 개인	채무보증사실	0033	0034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07.4.30.)	

5) 기업신용공여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등록시기	비 고
대출(연체포함)·지급보증, 기업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거래 및 신용공여기간 포함) (개정 2007.8.31 2008.7.28.)	- 개인기업 및 법인 -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주채무계열 기업군 소속기업체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타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출(10일 이상 연체포함)·지급보증, 기업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공여 (개정 2007.8.31 2008.7.28.)	「업권별 신용공여 조사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함		- 집중시기 ·일일집중〔신용공여(10일 이상 연체 포함),기업어음〕 :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단, 말일보 6영업일 이내) ·월집중(신용공여, 담보현황, 한도거래상황,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 익월 6영업일 이내 (개정 2007.8.31. 2008.7.28.)	단,「기업어음거래상황표」〈별지 제7호 서식〉 해당 정보는 은행, 증권, 종금, 자산운용사업권에서만 제공하며, 집중항목중 매매금리는 공유제외함. (신용공여조사표) - 31번 : 제1금융권, 제2금융권 - 32번 : 한도거래상황 - 33번 : 담보현황 - 34번 :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개정 2007.8.31. 2008.7.28.)

3. 신용도판단정보

1) 연체정보

구 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등록시기	비고
대출금연체	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1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삭제. 다만 기간경과(7년)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개정 2007.4.30.)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07.4.30.)	
	2.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02	〃			
	3.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신설 2008.9.1.)	0114	〃			
	4.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다만 졸업 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졸업 후 24개월 까지 등록 유예 (신설 2009.7.30. 개정 2011.12.27))	0115	〃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 유예 (개정 2011.12.27)
	5. 농림수산식품부지원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원금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지원 무상학자금대여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10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신설 2010. 8. 9.)	0116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삭제. 다만 기간경과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한국장학재단에 한함
	6.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3	〃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삭제. 다만, 기간경과(7년)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개정 2006.7.11. 2007.4.30.)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07.4.30.)	
신용카드대금연체	7.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4	〃			
할부금융대금연체	8.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5	〃			

구 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등록시기	비고
매 입 외 환 연 체	9.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추심후 지급 부도 포함)	0106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삭제. 다만 기간경과(7년)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개정 2007.4. 30.)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07. 4.30.)	
외 환 관 련 연 체	10.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107	〃			
해 외 대출금 연 체	11.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8	〃			
기 일 경 과 어 음 미결제	12. 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거래처	0109	해당 기일경과 어음을 결제한 때			종금사 및 은행 종금계정 CP에 한함
무보증 회사채 상 환 불이행	13.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처	0110	해당 만기도래 지급제시 무보증 회사채를 상환한 때			
무담보 미 수 채 권	14.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111	해당 무담보미수채권을 상환한 때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기간경과(7년)해제시 : 1년		증권사에 한함

구 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등록시기	비고
부 실 채 권 인 수	1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0112	해당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 삭제. 다만 기간경과(7년)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개정 2007.4.30. 2009. 6. 12.)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07. 4.30.)	
부 실 채 권 차 주	16. 정리금융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차주 (신설 2006.1.25.)	0113	"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 삭제. 다만 기간경과(7년)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개정 2007.4. 30.)		

2)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구 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등록시기	비고
지급보증대지급·대위변제	1.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0201	해당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삭제. 다만 기간 경과(7년)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개정 2007.4.30.)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07.4.30.)	
	2.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0202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3.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거래처	0203	해당 대위변제금을정리한때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	4.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204	해당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소구·구상불능	5.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 (단, 선적전금융은 대위변제후 1개월로 할 수 있다)	0205	해당 소구·구상불능 채무를 정리한 때			
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	6.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0206	해당 채무액을 완납한 때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기간경과(7년) 해제시 : 1년		
	7.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0207	〃			

구 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등록시기	비고
학자금대출관련대지급금('09. 6, 12. 신설 '09. 7. 30 개정))	8. 학자금대출 관련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단 졸업 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졸업 후 24개월까지 등록 유예 (개정 2009.7.30)	0208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등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 삭제. 다만 기간경과(7년) 해제시는 1년 동안 보존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및 보증기관에 한함 (개정 2009. 7.30)

3) 부도정보

구 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등록시기	비고
어음·수표 부도사실	1. 어음·수표 부도사실이 있는 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 또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 사유로 인한 부도사실거래처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부도일 익영업일로 함 (개정 2009.6.12. 2010. 8. 9)	0404	등록사유가 발생한때	- 1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2007. 8. 31. 비고 삭제)
가계수표 최종부도	2. 가계수표 거래정지처분 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거래처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0401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 1년		
당좌수표 최종부도	3. 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 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거래처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0402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 1년		
약속어음 최종부도	4. 약속어음 거래정지처분 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 또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거래처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개정 2010. 8. 9.)	0403	- 부도어음을 회수한 때 - 기간경과 해제 없음. 단, 2001. 1. 2.전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어음부도거래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10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봄	- 1년		

4) 금융질서문란정보 (개정 2009.10.26.)

구 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등록시기	비고
금융거래관련부당행위자	1. 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기소중지자 포함)	090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5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07.4. 30.)	
	2.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거래처	0902	〃			개인이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거래처	0903	〃			
	4. 대출금을 약정용도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04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한 때			
	5. 대여시설물(리스물건 포함) 불법처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거래처	0905	계약사항의 원상회복 또는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			
	6. 양도담보물을 금융기관의 승인없이 임대 또는 처분한 거래처	0906	해당채무를 정리한 때			
	7. 여신관련 명의대여 및 차명거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을 부인하는 자	0907	〃			
가계당좌불량	1. 가계수표를 할인한 거래처	091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2. 타인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에게 가계수표용지를 제공한 거래처	0912	〃			
외국환거래법위반자	1. 계약파기 등으로 대외신용을 추락시키거나 외화를 유용, 도피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0922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수출보험사고	1. 수출보험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처	0923	〃			

구 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등록시기	비고
신용카드 관련 부당 행위자	1.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093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5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07.4.30.)	
	2. 타인의 신용카드(도난, 분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32	〃			
	3.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33	〃			
	4.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과 대표자 및 관련자	0934	〃			
	5.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0935	〃			
	6.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변조 포함) 또는 이중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0936	〃			
	7. 1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0937	〃			
	8. 사기·타인의 명의도용(차명 포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가맹점개설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거래처	0938	〃			
	9.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한 가맹점 및 대표자	0939	〃			
	10. 신용카드를 양도, 수수, 차용, 대여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자	0940	〃			
신용회복지원 관련자	1.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0950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한 때			
	2.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0951	〃			

5) 관련인 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비 고
관련인	전 1)~4) 각호의 거래처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다만 어음·수표 부도사실(0404)의 관련인은 제외 (개정 2007.12.24. 2009. 19. 26) 가.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당해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각 등록코드 앞에 '9' 표시	관련 거래처의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사유가 해소되는 때 또는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때	- 관련 거래처의 해제시 : 동시삭제 - 관련 거래처의 기간경과 해제시 : 관련 거래처의 기록보존기간을 따름(단 금융질서문란정보의 관련인은 5년)	- 과점주주 및 최다출자자의 경우 등록여부의 판단은 당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 - 특수채권 관련인은 각 등록코드 앞 "8" 표시

※ 해제코드

- 채무자변제(관련인변제 포함) : 01
- 보증인변제 : 02
- 강제회수(해당 금융기관이 법적절차 등에 의해 회수한 경우) : 03
- 손실처리(감면, 면제 등) : 04
- 양도(자산관리공사 매각채권 등) : 05
- 신용회복지원(개별기관) : :06
- 채무자변제 및 손실처리 : 07
- 보증인변제 및 손실처리 : 08
- 강제회수 및 손실처리 : 09
-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 10
- 신용회복지원 (한마음금융) : 11
- 회생계획인가결정 (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12 (개정 2006.3.28. 2009.6.12.)
- 소멸시효완성 : 13 (신설 2005.8.3.)
-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 14 (개정 2007.4.30.)
- 법인의 청산 : 15 (신설 2009.10.26.)
- 기타(해제사유가 "유예" 등인 경우) : 99

4. 신용능력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등록항목)		등록코드	등록시기	비 고
일 반 정 보	외부감사 실시기업	차 주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종업원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정보등록기관에만 제공
		주 소	본사(자택)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번호			
		전화번호	본사(자택) 전화번호 및 사업장 전화번호			
		업 종	업종, 산업분류코드(세분류)			
		설립일자	설립일자			
		경영방식	창업자(소유주), 창업2세, 동업, 전문경영인, 기타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재 무 정 보		재무상태	결산일자, 총자산, 자본총계, 총차입금,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자본금			
		재무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자산회전율			
비재무 정 보		상장유무	코스닥등록, 거래소시장, 제3시장 거래여부 등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5. 공공정보 (개정 2009. 10. 26.)

1) 체납정보 등(개정 2011. 1. 31)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기록보존기간	비 고
국세체납	1.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0. 2. 2.)	0601	- 해당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동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봄 ('06. 1. 25. 개정)		- 해제와 동시에 삭제	
	2.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0.2.2.)	0602				
	3.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0.2.2.)	0603				
지방세체납	4.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2010.2.2.)	0604				
	5.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0.2.2.)	0605				
	6.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0. 2.2.)	0606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기록보존기간	비 고
과태료 체 납 ('08. 7. 28. 신설)	7.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0. 2. 2.)	0611				
	8. 과태료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0.2.2.)	0612				
	9. 과태료 체납 결손 처분액이 5맥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0.2.2)	0613				
관 세 체 납	10. 관세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0.2.2)	0701	- 해당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동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봄 ('06. 1. 25. 개정)		- 해제와 동시에 삭제	
	11. 1년에 3회 이상 관세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0.2.2)	0702				
	12. 관세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10. 2.2))	0703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기록보존기간	비 고
채 무 불 이 행 자	1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0801	- 해당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동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봄(개정 2006.1.25.)		- 해제와 동시에 삭제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07. 12. 24. 신설)	14.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802				
	15.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803				
	16.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804				
신용회복지원	1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일반회생 포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명령이 있는 때	1003	-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77	- 해제와 동시에 삭제	
	18.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1101	- 확정된 신용회복 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확정된 이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 신용회복지원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연체등"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등록
	19.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1201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에서 통보하여 등록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기록보존기간	비 고
신용회복지원	2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일	1301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또는 5년이 경과한 때	77	- 해제와 동시에 삭제	법원에서 통보하여 등록
	21.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 2년이상 채무 변제로 채무조정사실 해제 후 3개월 이상 채무 상환을 불이행한 경우	1501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또는 확정된 신용회복 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확정된 이후 2년이상 변제한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등록
국외이주신고	2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 해외이주비 환전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에 의거 해외이주비를 환전(또는 송금)하는 날	1401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또는 국외이주포기신고서에 의해 국외이주를 포기한 때			동의서를 징구받은 고객에 대해서만 한함

2) 조달청의 정부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신설 2011. 1. 31. 개정 2011.12.27)

구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등록항목)	등록코드	등록시기	비고
조달 업체 정보	정부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	기업체명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수요기관 정보		수요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계약 정보		업무구분			1:시설, 2:용역, 3:내자
		계약구분			1:총액계약, 2:단가계약 3:제3자단가계약 4:단가납품요구 5:제3자 납품요구
		계약번호			
		계약차수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시작일자			
		계약종료일자			
		계약해지여부			
		계약해지일			
		채권가압류금액			
		지분율			
지급 정보		납품금액			
		대금구분			1:선금, 2:대금, 3:기성, 4:준공, 5:유보
		지체상금			
		선금청산액			
		유보금			
		감가액			
		지급금액			

3) 사망자정보(신설 2011.12.27)

구분	대상자	등록항목	등록시기	비고
사망자 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개인 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에 의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자	사망여부 등	연2회(반기별)	

〈별표 2〉

외국인·재외동포의 신용정보 등록시 관리번호 부여요령

· 여권번호에 의한 외국인 ·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시 관리번호 부여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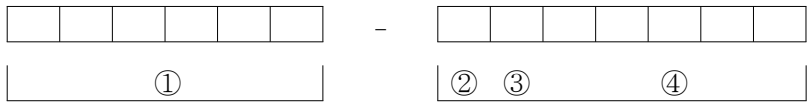

* 기재요령

◎ ① - 내국인과 동일하게 생년월일로 표시

〈예시〉 65년 7월 7일 - 650707

◎ ② - 성별구분 외국인 · 재외동포 남자 : 7 〈예〉 650707-7000000

외국인 · 재외동포 여자 : 8 〈예〉 650707-8000000

◎ ③ - 국적구분 〔미국인 : 1, 일본인 : 2, 중국인 : 3, 기타 외국인 : 4〕

650707 - 7100000 미국인 남자

650707 - 8300000 중국인 여자

650707 - 7400000 태국인 남자

◎ ④ - 여권번호의 마지막 숫자부터 순차적으로 5자리의 숫자를 사용하여 기재

· 외국인 여권번호 J0284578 일본인 남자

▶ 650707 - 7284578

여권번호 A000782 미국인 남자

▶ 650707 - 7100782

여권번호 88001234 태국인 여자

▶ 650707 - 8401234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 (일련번호 /)[1]

(년 월 일)

수 신 : 전국은행연합회 발 신 : 장(인)

참 조 : 신용정보부장 경 유 : 장(인)

구분[2]	KEY 구분[3]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4]	기업 체명[5]	성 명 (대표자)	직업 코드[6]	업종 코드[7]	관 련 인[8]		계좌 번호[9]	영업점 지 로 코 드	관련인 코드[10]	등록 코드	등록사유 발생일자[11]	해제사유 발생일자[12]	해 제 코드[13]	약정 일자	등록 금액 (천원)	연체 금액 (천원)	법 인 등록번호[14]	대출(담보)구분 주[15]	서민금융 구분 주[16]	비고
							KEY 구분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 1) 일련번호는 장수가 25매일 경우에는 1/25 ~ 25/25 까지로 기입

2) 구분'란에 가계당좌예금 개설(0011) 또는 해지(0012), 당좌예금 개설(0021) 또는 해지(0022), 신용카드 발급(0081) 또는 해지(0082), 신용체크카드 발급(0083) 또는 해지(0084), 대출(0031) 또는 상환·변제(0032), 채무보증(0033) 또는 해지(0034), 카드론(0037) 및 해지(0038)신용카드 현금서비스(0041),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0066) 또는 해제(0077) 기입

3) 법인과 개인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인은 "1", 개인기업은 "2", 법인은 "3" 으로 표기

4)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법인등록번호"란에는 개인기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기함

5) 기업체명은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명기 [예 : (주), (합자), (합명)]

6) 직업코드는 "직업구분코드" 참조.(단,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제외함)

7)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 업종 기입

8) 주민(사업자)등록번호는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거래처'의 관련인의 주민(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

9) 계좌번호는 숫자와 영문자로 이루어진 연번으로만 표시가능하고 특수문제는 제외함

10)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거래처'중 관련인은 9번으로, 관련인 이외에는 0번으로 기입

11) 대출정보는 대출발생일 기입

12) 대출정보는 대출금 일부상환 또는 변제일자 기입

13) 해제코드는 "해제구분코드" 참조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해제코드 해당사항 없음

14)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보고하되 정보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법인등록번호를 기입

※ 2000년 2월 1일의 경우 '20000201'로 기입

※ 모든 란은 아라비아 숫자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기입

15) 대출(담보) 구분은 '대출(담보)종류 코드' 참조

16) 서민금융 구분은 '서민금융종류 코드' 참조

직업구분코드

직업 구분	코드
공무원	10
교육공무원	20
군인	30
국영기업체	40
은행원	50
회사원	60
자유업	70
협력상점	80
기타	90

해제구분코드

해 제 사 유	코드
채무자변제(관련인변제 포함)	01
보증인변제	02
강제회수(법적절차 등)	03
손실처리(감면, 면제 등)	04
양도(자산관리공사 매각채권등)	05
신용회복지원(개별기관)	06
채무자변제 및 손실처리	07
보증인변제 및 손실처리	08
강제회수 및 손실처리	09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	10
신용회복지원(한마음금융)	11
회생인가결정(채무자회생법)	12
소멸시효 완성	13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14
법인의 청산	15
기 타	99

대출(담보종류)

구 분	코드
신용대출	100
학자금대출	150
예·적금담보대출	200
유가증권(주식,채권, 펀드 등) 담보대출	210
주택담보대출	220
주택외 부동산(토지,상가 등) 담보대출	230
지급보증(보증서)담보대출	240
학자금(지급보증담보)대출	250
기타 담보대출	290
신차 할부금융	500
중고차 할부금융	510
기타 할부금융	590
금융리스	700
운용리스	710

서민금융 종류

구 분	코드
새희망홀씨	100
햇살론	200
기타	900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_____ 기관 귀하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예)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및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 거래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공동사업자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예)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1), (2)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_____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상품 및 서비스 소개, 회원유치, 서비스이용 권유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_____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할인쿠폰 제공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신용거래정보 대상기업체』 변동상황 보고서

수 신: 장(인)

1. 신규 보고 대상기업체

일련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출잔액	업종코드

주) 구분란에 개인기업은 '1', 법인은 '3', 현지법인은 '5'로 기재

2. 변경 보고 대상기업체

변경구분	기업체명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코드
전							
후							
전							
후							

주) 1. 변경전란에는 법인(주민)등록번호, 구분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입하고 변경후란에는 해당항목의 내용을 기재함
2. 구분란에 개인기업은 '1', 법인은 '3', 현지법인은 '5'로 기재

3. 기업합병 보고 대상기업체

피합병회사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회사					등기일자
법인(주민)등록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주) 구분란에 개인기업은 '1', 법인은 '3', 현지법인은 '5'로 기재

4. 삭제 대상기업체

일련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코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_____기관 귀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
(예)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 조회 목적 :
(예)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등

□ 조회동의 효력 기간 :
(예) 귀하가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의 효력이 종료(예 : 기간만기, 계약해지 등)하는 시점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거래가 본____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조회자(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예) 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 ____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신용정보 정정요청서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장(인)

참 조 :　　경 유 :　　장(인)

구 분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기업체명[1]	성 명 (대표자)	직업 코드[2]	업종 코드[3]	관 련 인[4] KEY 구분	관 련 인[4]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계좌 번호	영업점 지 로 코 드	관련인 코 드	등록 코드	등록사유 발생일자	해제사유 발생일자	해제 코드	약정 일자	등 록 금 액 (천원)	연체 금액	법 인 등록번호	대출 (담보) 종류	서민 금융 구분	비 고
정정전																					
정정후																					
정정전																					
정정후																					

〈작성요령〉

1. "정정전"란에는 기존의 등록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정정후"란에는 정정하여야 할 항목만 기입
2. 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 이관으로 인한 정정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
   ※ 가계당좌예금 이관시 : 0077, 당좌예금 이관시 : 0088,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이관시 : 0099
3. 거래처가 정정 청구한 신용정보로서 정정여부가 미확인된 상태(소송계류, 민원제기 등의 사유로 정정여부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인 경우에는 "정정전"란에만 기존 등록사항을 기입하고 비고란에는 "정정청구중"이라 기재함
   ◦ 정정청구한 신용정보의 정정여부가 미확인된 상태인 경우 : 비고란에 "정정청구중" : 0044
   ◦ 정정청구한 신용정보의 정정여부가 확인되어 확정된 경우 : 비고란에 "정정청구 해소(해지)" : 0055
4.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보고하되 정보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법인등록번호를 기입

주 : 1) 기업체명은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명기 [예 : (주), (합자), (합명)]
2) 직업코드는 "직업구분코드" 참조. (단,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제외함)
3)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 업종 기입
4) 관계거래처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Key 구분은 법인과 개인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인은 "1", 개인기업은 "2", 법인은 "3"으로 기입

5. 대출(담보)구분은 '대출(담보) 종류 코드' 참조
6. 서민금융 구분은 '서민금융 종류 코드' 참조

직업구분코드

직업구분	코 드
공무원	10
교육공무원	20
군인	30
국영기업체	40
은행원	50
회사원	60
자유업	70
협력상점	80
기타	90

대출(담보종류)

구 분	코드
신용대출	100
학자금대출	150
예·적금담보대출	200
유가증권(주식,채권, 펀드 등) 담보대출	210
주택담보대출	220
주택외 부동산(토지,상가 등) 담보대출	230
지급보증(보증서)담보대출	240
학자금(지급보증담보)대출	250
기타 담보대출	290
신차 할부금융	500
중고차 할부금융	510
기타 할부금융	590
금융리스	700
운용리스	710

서민금융 종류

구 분	코드
새희망홀씨	100
햇살론	200
기타	900

〈별지 제6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

(조사표1)

31. 신용공여조사표(은행)

년월						은행Code				사업자(법인,주민)등록번호	차 주 명

수 신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장
발 신 : (인)

신용공여기록	31			〈만기구조〉[1]								(단위 : 백만원)
대과목	중과목	소과목	code	금잔(1)	3월이하(2)	3월초과 ~ 6월이하(3)	6월초과 ~ 1년이하(4)	1년초과 ~ 2년이하(5)	2년초과(6)	연체	
										연체금액(7)	연체기산일(8)
대출채권	원화 대출금	상업어음할인	101								
		당좌대출	103								
		일반자금 운전자금	105								
		일반자금 시설자금	107								
		무역금융	109								
		신탁계정대출	111								
		기업어음할인	113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15								
		구매자금대출	117								
		기타	129								
		(소계)	**130**								
	외화대출금		131								
	내국수입유산스		133								
	역외외화대출금		135								
	외화저관자금대출금		137								
	지급보증대지급금		139								
	원화환어음매입		141								
	매입외환		143								
	매입외환(신용위험)		**144**								
	외상채권매입(팩토링채권)		145								
	기업구매자금전용카드		146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 신탁포함)		147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탁포함)		149								
	콜론(신탁포함)		151								
	사모사채(신탁포함)		153								
	신탁계정 금전채권		155								
	기타		189								
	대출채권계		190								
유가증권	은행계정 CP (보증어음 포함)		201								
	매입어음 (신탁포함)	보증어음	211								
		자유금리기업어음	213								
		주개어음	215								
		기타	229								
		(소계)	230								
	공모사채[2]		231								
	대여유가증권[3]		233								
	기타		289								
	유가증권계		**290**								
주 석	확정(원화) 지급보증	융자담보지보	301								
		사채지보	303								
		기타	329								
		(소계)	330								
	확정(외화) 지급보증	인수	331								
		화물선취보증	333								
		기타	349								
		(소계)	350								
		(현지지급보증)	348								
	미확정지급보증	신용장개설관계	351								
		기타	369								
		(소계)	370								
	외화대출약정(역외포함)		371								
	배서어음		373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신탁포함)		375								
	기타		389								
	주석계		**390**								
기 타	여신성가지급금(신탁,종금포함)		401								
	미수금		403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단(050701)		405								
	대손상각채권		**407**								
	기타		489								
	(소계)		**490**								
종금계정	대출채권 (CMA 계정 포함)	할인어음	501								
		팩토링어음	503								
		기타	529								
		(소계)	530								
	리스채권[4]	금융리스채권	531								
		운용리스채권	533								
		기타	549								
		(소계)	550								
	주석	어음지급보증	551								
		무역어음인수	553								
		담보배서어음매출	555								
		기타	569								
		(소계)	570								
	종금계		**590**								
신탁	원본또는이익보전약정이없는신탁		995								
신용공여 합 계 (A)	대출채권		610								
	유가증권		620								
	리스채권		630								
	주석		640								
	기타		650								
	합계		690								

〈 작 성 요 령 〉

1. 년월 : 2007년 5월인 경우 200705로 기입한다.
2. 기관코드 : 은행연합회에서 부여한 기관별 코드 예) 111기관은 0111로 표기.
3. 발신 : 은행명을 기입하고 신용정보업무담당 부장 직인을 날인한다.
4. 사업자(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 및 비법인기업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5. 차주명 : 업체의 상호를 기입한다(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 등)이 상이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 등) 기준)
   ① 법인 : 법인명의를 첫자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예)한국XX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XX산업사 등
   ② 개인 : 개인명의일 경우에는 상호명(개인명의)을 기입하고 개인기업체이거나 비법인조합 및 비법인단체(이하 "비법인기업" 이라 함)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입함
6. 금액단위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 (금잔은 만기구조의 기간별 금액의 합계와 일치 되어야 한다. 주채무자의 대출원금 기준.)
7. 외화표시금액은 매월 최종영업일 현재 장부가격을 당일자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8. (기업)어음할인 등 : 어음할인의 경우 직접어음 및 제3자 어음할인 포함. 의뢰인 기준 작성(할인가 기준)
9. 기업어음매입 : 금융회사가 유통시장 등을 통하여 매입 및 보유하고 있는 잔액(액면가 기준)
10. 리스채권 : 종금계정의 리스채권.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는 리스채권(선급금포함) 잔액 기준
11. 공모사채 : 차주발생 사모사채를 제외한 회사채 보유분(공채포함)
12. 대여유가증권 : 신탁계정 주석사항의 대여유가증권은 제외
13. 원본또는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의 만기구조 집중 제외
14. 만기구조 :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구분
    ① 일반신용공여 :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구분
    ②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기일 기준 잔존만기 구분
    ③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 한도거래 여신 : 한도약정기일 기준 잔존만기 구분
    ④ Rollover 조건 : Rollover 약정기간 기준 잔존만기 구분
16. 대과목합계 및 신용공여합계는 집중 제외
17. 집중기한 : 평일보-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말일보-익월6영업일 이내
18. 일보상 유가증권의 범위 : 국채, 지방채, 외평채, 통안채 등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
15. 연체기준 : 원금(분할상환금포함)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익일을 연체기산일로 하며, 연체기산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때
20. 평일보는 금잔(1), 연체금액(7), 연체기산일(8)만 집중, 말일보는 금잔(1)■연체기산일(8)까지 집중.
21. 지급보증대지급금(139), 대손상각채권(407), 원본또는이익보전약정이없는신탁(995) 계정은 연체 및 말일보의 만기구조 집중제외.
22. 신용공여조사표 세분화에 따른 신용공여조사표(은행) 적용기관 :
    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조사표2)

31. 신용공여조사표(특수금융기관)

년월						은행Code				사업자(법인,주민)등록번호	차 주 명

수 신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장
발 신 : (인)

신용공여기록	31			〈만기구조〉[1]								(단위 : 백만원)
대과목	중과목	소과목	code	금잔(1)	3월이하(2)	3월초과 ~ 6월이하(3)	6월초과 ~ 1년이하(4)	1년초과 ~ 2년이하(5)	2년초과(6)	연체	
										연체금액(7)	연체기산일(8)
대출채권	원화 대출금	상업어음할인	101								
		당좌대출	103								
		일반자금 운전자금	105								
		일반자금 시설자금	107								
		무역금융	109								
		신탁계정대출	111								
		기업어음할인	113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15								
		구매자금대출	117								
		기타	129								
		(소계)	**130**								
	외화대출금		131								
	내국수입유산스		133								
	역외외화대출금		135								
	외화차관자금대출금		137								
	지급보증대지급금		139								
	원화환어음매입		141								
	매입외환		143								
	매입외환(신용위험)		**144**								
	외상채권매입(팩토링채권)		145								
	기업구매자금전용카드		146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 신탁포함)		147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탁포함)		149								
	콜론(신탁포함)		151								
	사모사채(신탁포함)		153								
	신탁계정 금전채권		155								
	기타		189								
	대출채권계		190								
유가증권	은행계정 CP (보증어음 포함)		201								
	매입어음 (신탁포함)	보증어음	211								
		자유금리기업어음	213								
		중개어음	215								
		기타	229								
		(소계)	230								
	공모사채[2]		231								
	대여유가증권[3]		233								
	기타		289								
	유가증권계		**290**								
주 석	확정(원화) 지급보증	융자담보지보	301								
		사채지보	303								
		기타	329								
		(소계)	330								
	확정(외화) 지급보증	인수	331								
		화물선취보증	333								
		기타	349								
		(소계)	350								
		(현지지급보증)	348								
	미확정지급 보증	신용장개설관계	351								
		기타	369								
		(소계)	370								
	외화대출약정(역외포함)		371								
	배서어음		373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신탁포함)		375								
	기타		389								
	주석계		**390**								
기 타	여신성가지급금(신탁,종금포함)		401								
	미수금		403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단(050701)		405								
	대손상각채권		**407**								
	기타		489								
	(소계)		**490**								
종금계정	대출채권 (CMA 계정 포함)	할인어음	501								
		팩토링어음	503								
		기타	529								
		(소계)	530								
	리스채권[4]	금융리스채권	531								
		운용리스채권	533								
		기타	549								
		(소계)	550								
	주석	어음지급보증	551								
		무역어음인수	553								
		담보배서어음매출	555								
		기타	569								
		(소계)	570								
	종금계		**590**								
신탁	원본또는이익보전약정이없는신탁		995								
신용공여 합 계 (A)	대출채권		610								
	유가증권		620								
	리스채권		630								
	주석		640								
	기타		650								
	합계		690								

〈 작 성 요 령 〉

1. 년월 : 2007년 5월인 경우 200705로 기입한다.
2. 기관코드 : 은행연합회에서 부여한 기관별 코드 예) 111기관은 0111로 표기.
3. 발신 : 은행명을 기입하고 신용정보업무담당 부장 직인을 날인한다.
4. 사업자(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 및 비법인기업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5. 차주명 : 업체의 상호를 기입한다(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 등)이 상이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 등) 기준)
   ① 법인 : 법인명의를 첫자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예)한국XX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XX산업사 등
   ② 개인 : 개인명의일 경우에는 상호명(개인명의)을 기입하고 개인기업체이거나 비법인조합 및 비법인단체(이하 "비법인기업" 이라 함)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입함
6. 금액단위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 (금잔은 만기구조의 기간별 금액의 합계와 일치 되어야 한다. 주채무자의 대출원금 기준.)
7. 외화표시금액은 매월 최종영업일 현재 장부가격을 당일자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8. (기업)어음할인 등 : 어음할인의 경우 직접어음 및 제3자 어음할인 포함. 의뢰인 기준 작성(할인가 기준)
9. 기업어음매입 : 금융회사가 유통시장 등을 통하여 매입 및 보유하고 있는 잔액(액면가 기준)
10. 리스채권 : 종금계정의 리스채권.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는 리스채권(선급금포함) 잔액 기준
11. 공모사채 : 차주발생 사모사채를 제외한 회사채 보유분(공채포함)
12. 대여유가증권 : 신탁계정 주석사항의 대여유가증권은 제외
13. 원본또는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의 만기구조 집중 제외
14. 만기구조 :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구분
    ① 일반신용공여 :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구분
    ②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기일 기준 잔존만기 구분
    ③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 한도거래 여신 : 한도약정기일 기준 잔존만기 구분
    ④ Rollover 조건 : Rollover 약정기간 기준 잔존만기 구분
16. 대과목합계 및 신용공여합계는 집중 제외
17. 집중기한 : 평일보-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말일보-익월6영업일 이내
18. 일보상 유가증권의 범위 : 국채, 지방채, 외평채, 통안채 등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
15. 연체기준 : 원금(분할상환금포함)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익일을 연체기산일로 하며, 연체기산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때
20. 평일보는 금잔(1), 연체금액(7), 연체기산일(8)만 집중, 말일보는 금잔(1)■연체기산일(8)까지 집중.
21. 지급보증대지급금(139), 대손상각채권(407), 원본또는이익보전약정이없는신탁(995) 계정은 연체 및 말일보의 만기구조 집중제외.
22. 신용공여조사표 세분화에 따른 신용공여조사표(특수 금융기관) 적용기관 :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④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표3)

31. 신용공여조사표(비은행 금융기관)

수 신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장
발 신 : (인)

년 월	기관코드

사업자(법인,주민)등록번호	차 주 명

신용공여기록	31

〈만 기 구 조〉 (단위 : 백만원)

대과목	소과목	Code	금잔 (1)	3월이하 (2)	3월초과 6월이하 (3)	6월초과 1년이하 (4)	1년초과 2년이하 (5)	2년초과 (6)	연 체	
									연체금액 (7)	연체기산일 (8)
대출채권	상업어음할인(CMA포함)	101								
	무역어음할인(CMA포함)	102								
	유가증권담보대출	104								
	부동산담보대출	106								
	예적금담보대출	108								
	계약금액내대출	110								
	어음담보대출	112								
	기업어음할인(CMA포함)	113								
	지급보증(담보)대출	114								
	공제금대출(K biz)	116								
	농수산정책자금(aT)	118								
	종금원화대출	119								
	신용대출(종합통장대출)	120								
	신기술금융대출	121								
	외화대출금	131								
	금융리스	132								
	내국수입유산스	133								
	역외외화대출금	135								
	운용리스	136								
	자금대여	138								
	지급보증대지급금	139								
	약정투자	140								
	할부금융	142								
	외상매출채권(팩토링채권)	145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포함)	147								
	환매조건부채권매입(신탁포함)	149								
	콜론	151								
	사모사채	153								
	기타	189								
	대출채권계	190								
유가증권	기업어음매입	202								
	공모사채	231								
	대여유가증권	233								
	기타	289								
	유가증권계	290								
주 석 (지급보증 등)	지급보증	302								
	어음지급보증	304								
	담보배서어음매출	305								
	무역어음인수	306								
	이행지보	307								
	외화대출약정(역외포함)	371								
	기타	389								
	지급보증등계	390								
기 타	**자산유동화에따른신용보강수단**	**405**								
	대손상각채권	407								
	기타	489								
	기타계	490								
신 탁	원본또는이익보전약정이없는신탁	995								
신용공여합계	대출채권	610								
	유가증권	620								
	지급보증등	640								
	기타	650								
	합계	690								

〈작성요령〉

1. 년월 : 2007년 5월인 경우 200705로 기입한다.
2. 기관코드 : 은행연합회에서 부여한 기관별 코드 예) 111기관은 0111로 표기.
3. 발신 : 은행명을 기입하고 신용정보업무담당 부장 직인을 날인한다.
4. 사업자(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 및 비법인기업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5. 차주명 : 업체의 상호를 기입한다(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 등)이 상이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 등) 기준)
   ① 법인 : 법인명의를 첫자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예)한국XX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XX산업사 등
   ② 개인 : 개인명의일 경우에는 상호명(개인명의)을 기입하고 개인기업체이거나 비법인조합 및 비법인단체(이하 "비법인기업"이라 함)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입함
6. 금액단위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 (금잔은 만기구조의 기간별 금액의 합계와 일치 되어야 한다. 주채무자의 대출원금 기준)
7. 외화표시금액은 매월 최종영업일 현재 장부가격을 당일자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8. (기업)어음할인 등 : 어음할인의 경우 직접어음 및 제3자 어음할인 포함. 의뢰인 기준 작성(할인가 기준)
9. 기업어음매입 : 해당기관이 유통시장등을 통하여 매입 및 보유하고 있는 잔액(액면가 기준)
8. 리스채권 :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는 리스채권(선급금포함) 잔액 기준
9. 공모사채 : 차주발행 사모사채를 제외한 회사채 보유분(공채 포함)
10. 원본또는이익보전약정이없는신탁, 기업어음매출, 중개어음의 만기구조 집중 제외
11. 만기구조 :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구분
    ① 일반신용공여 : 각 금융회사의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구분
    ②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기일 기준 잔존만기 구분
    ③ 할인어음 등 한도거래 여신 : 한도약정기일 기준 잔존만기 구분
    ④ ROLLOVER 조건 : ROLLOVER 약정기간 기준 잔존만기 구분
12. 대과목합계 및 신용공여합계는 집중 제외
13. 집중기한 : 평일보-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말일보-익월6영업일 이내
14. 일보상 유가증권의 범위 : 국채, 지방채, 외평채, 통안채 등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
15. 연체기준 : 원금(분할상환금포함)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익일을 연체기산일로 하며, 연체기산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때
16. 평일보는 금잔(1), 연체금액(7), 연체기산일(8)만 집중, 말일보는 금잔(1)■연체기산일(8)까지 집중
17. 지급보증대지급금(139), 대손상각채권(407), 원본또는이익보전약정이없는신탁(995) 계정은 연체 및 말일보의 만기구조 집중제외
18. 신용공여조사표 세분화에 따른 신용공여조사표(비은행 금융기관) 적용기관 : 은행 및 특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

(조사표4)

32. 신용공여조사표(한도거래상황)

수 신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장
발 신 : (인)

년월	은행Code	사업자(법인,주민)등록번호	차 주 명

(단위 : 백만원)

한도거래상황	32	한 도 거 래 회 전 대 출			
과 목		Code	회전한도액	Code	대출(보증) 잔액
상업어음할인		1111		1112	
당 좌 대 출		1121		1122	
일반자금대출		1131		1132	
기업어음할인		1141		1142	
무 역 금 융		1151		1152	
무역어음할인		1161		1162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171		1172	
구매자금대출		1181		1182	
보증기관 지급보증		1191		1192	
기 타		4001		4002	
계		6001		6002	

〈 작 성 요 령 〉

1. 년월 : 2007년 5월인 경우 200705로 기입한다.
2. 기관코드 : 은행연합회에서 부여한 기관별 코드 예) 111기관은 0111로 표기.
3. 발신 : 은행명을 기입하고 신용정보업무담당 부장 직인을 날인한다.
4. 사업자(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 및 비법인기업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5. 차주명 : 업체의 상호를 기입한다(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 등)이 상이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 등) 기준)
   가. 법인 : 법인명의를 첫자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예)한국XX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XX산업사 등
   나. 개인 : 개인명의일 경우에는 상호명(개인명의)을 기입하고 개인기업체이거나 비법인조합 및 비법인단체(이하 "비법인기업"이라 함)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입함
6. 금액단위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
7. 외화표시금액은 매월 최종영업일 현재 장부가격을 당일자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8. 당좌대출 : 실대출잔액을 기입하되 미결제타점권은 제외한다.
9. 집중기한 : 익월 6영업일 이내

(조사표5)

33. 신용공여조사표(담보기록)

수 신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장
발 신 : (인)

년월	은행Code	사업자(법인,주민)등록번호	차 주 명

담보기록	33

(단위 : 백만원)

담보종류			유효담보가액	
			Code	금월말잔액
재산권	부동산	대지건물	1111	
		임야	1121	
		기타부동산	1191	
	특수저당	선박, 항공기	1211	
		자동차, 중기	1221	
		광업권, 어업권	1231	
		기타특수저당	1291	
	동산	기계기구	1311	
		기타동산	1391	
	유가증권		1401	
	채권	예금적금	1511	
		확정채권	1521	
		기타채권	1591	
	기타재산권		1601	
보증	정부보증		2111	
	금융기관지급보증		2121	
	보증기금보증		2131	
기타			3001	
담보총계			**6001**	

〈 작성요령 〉

1. 년월 : 2007년 5월인 경우 200705로 기입한다.
2. 기관코드 : 은행연합회에서 부여한 기관별 코드 예) 111기관은 0111로 표기.
3. 발신 : 은행명을 기입하고 신용정보업무담당 부장 직인을 날인한다.
4. 사업자(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 및 비법인기업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5. 차주명 : 업체의 상호를 기입한다(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 등)이 상이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 등) 기준)
   가. 법인 : 법인명의를 첫자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예)한국XX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XX산업사 등
   나. 개인 : 개인명의일 경우에는 상호명(개인명의)을 기입하고 개인기업체이거나 비법인조합 및 비법인단체(이하 "비법인기업"이라 함)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입함
6. 금액단위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
7. 외화표시금액은 매월 최종영업일 현재 장부가격을 당일자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8. 담보 :
   가.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 차고취득등 담보효력이 확보된 담보만을 기입한다.
   나.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에서 선순위담보, 실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담보권실행이 가능한 유효(가용)가액을 기입
   다. "금융회사지급보증"은 대외지급보증취급액 또는 대상대출취급액에 상당하는 담보지급액만을 기입
9. 담보총계 : 유효담보가액 대지건물에서 기타까지의 합계(순담보)
10. 월보상 유가증권의 범위 : 국채, 지방채, 외평채, 통안채, 주식 등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유가증권에 포함
11. 집중기한 : 익월 6영업일 이내

(조사표6)

34. 신용공여조사표(법인채무보증및채무인수약정)

수 신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장
발 신 : (인)

법인등록번호	보 증 법 인 명

(단위 : 백만원)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34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과 목		Code	잔 액
법인채무보증(일반 및 SOC PF 등)		1111	
법인채무보증(부동산개발(PF) 관련)		1121	
법인채무보증 소계		1901	
법인채무인수약정(일반 및 SOC PF 등)		2111	
법인채무인수약정(부동산개발(PF) 관련)		2121	
법인채무인수약정 소계		2901	
기 타		4111	
합 계		6001	

〈 작 성 요 령 〉

1. 년월 : 2007년 5월인 경우 200705로 기입한다.
2. 기관코드 : 은행연합회에서 부여한 기관별 코드 예) 111기관은 0111로 표기.
3. 발신 : 은행명을 기입하고 신용정보업무담당 부장 직인을 날인한다.
4.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5. 차주명 : 업체의 상호를 기입한다(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 상이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법인 : 법인명을 첫자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예)한국XX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XX산업사 등
6. 금액단위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
7. 외화표시금액은 매월 최종영업일 현재 장부가격을 당일자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8. 집중대상 :
   가.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연대보증(특정채무보증, 근보증(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및 채무인수 (중첩적채무인수약정 및 면책적채무인수약정 등 포함)
   나. 가계 및 기업여신에 대한 법인의 채무보증현황 및 채무인수현황
   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지역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의 보증도 집중
   라. 협약서에 의한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포함
9. 집중기한 : 익월 6영업일 이내
10. 집중기준 : 법인채무보증(인수약정)중 (일반 및 SOC PF 등)는 부동산개발 PF를 제외한 부분이며, 법인채무보증(인수약정)중 (부동산개발(PF) 관련)은 부동산개발 PF와 관련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의 건설업체 채무보증(인수약정)이며, 기타에는 자금보충 및 책임준공 사항(금액 구분이 가능한 경우) 등을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기업어음(CP) 거래상황표

수신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장

발신 : (인)

년월일	기관코드	계정코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발행사명

(단위 : 백만원)

거래 구분	종류	발행 금액	발행일	매매일	만기일	매매 금리	매입(매출)처 (상대거래처)	평가 등급	평가 기관
합계									

(작성요령)

1. 년월일 : 2008년 6월 30일인 경우 20080630로 표기
2. 기관코드 : 은행연합회에서 부여한 기관별 코드(4자리) 예) 111기관은 0111로 표기
3.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정코드 : .①고유 ②신탁 ③종금으로 구분
5. 발행사의 산업분류, 그룹구분 : 은행연합회에서 처리
6. 거래구분
   ①직접매입 : 할인 또는 제1배서인의 매입 ②유통물매입 : 직접매입분을 제외한 매입분
   ③매출 ④중도상환
7. 종류 : ① 일반 기업어음(CP) ②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8. 매매금리 : 소수점 3자리
9. 매입(매출)처 : ①금융회사(1.은행 2.투신 3.종금 4.증권 5.보험 6.기타)
   (상대거래처) ②연·기금
   ③법인(1.국내법인 2.외국계)
   ④기타
10. 평가등급 및 평가기관 : 평가기관(한신평,한신정,한기평,서신평)의 평가등급중 낮은등급으로 집중
11. 집중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신용정보관리규약 해설

목 차

Ⅰ. 신용정보 관리체계 ····· 73

【1】 신용정보 관련법령 체계 ····· 73
【2】 신용정보의 범위 ····· 77
【3】 신용정보 교환·활용 대상기관의 범위 ····· 81

Ⅱ. 신용거래정보 ····· 84

【1】 개설·발급정보 ····· 84
【2】 개인대출정보 ····· 84
【3】 카드론 현황 등 ····· 85
【4】 채무보증정보 ····· 86
【5】 기업신용공여정보 ····· 87

Ⅲ. 신용도판단정보 ····· 105

【1】 '연체 등' 정보 ····· 105
【2】 금융질서문란정보 ····· 139

Ⅳ. 공공정보 ····· 140

【1】 공공정보의 범위 ····· 140
【2】 관리원칙 ····· 140
【3】 공공정보 집중 관련 법률 ····· 142

Ⅴ. 기업의 신용능력정보 ····· 147

【1】 신용능력정보의 범위 ····· 147
【2】 집중대상기업 및 집중시기 ····· 148
【3】 신용능력정보의 제공·이용기관 ····· 148
【4】 집중 및 제공방법 ····· 148

Ⅵ. 기 타 ····· 149

【1】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간 채권 양·수도시의 신용정보 관리 ····· 149
【2】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채권에 대한 처리 방법 ····· 150
【3】 법인(신용정보주체의 경우)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청산의 경우 신용정보 처리 방법 151
【4】 대출정보와 연체정보와의 관계 ····· 151
【5】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제도 ····· 152
【6】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확인 제도 ····· 152

Ⅶ. 금융기관 유의사항 ····· 154

【1】 신용정보의 등록·해제·정정·삭제 ····· 154
【2】 고객의 본인 신용정보조회 요구시 주의사항 ····· 154
【3】 신용정보의 전산처리기간 및 동 정보 공유에 소요되는 기간 ····· 155

※ 신용정보업무 관련 사례별 질의·응답 ····· 156

Ⅰ. 신용정보 관리체계

【1】 신용정보 관련법령 체계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동 법률은 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②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여 ③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 동 규정은 〔1〕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신용정보관리규약

- 동 규약은 상기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금융기관 간 신용정보의 교환·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신용정보협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관리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

〔4〕 기타 세부규정

가.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 동 규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설치하는 신용정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동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함

신용정보협의회

- 기 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신규 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제재금의 부과·사용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구 성
  - 전국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상근부회장(의장)
  - 농협중앙회 담당이사
  - 신한은행 담당이사
  - 우리은행 담당이사
  - 하나은행 담당이사
  - 중소기업은행 담당이사
  - 국민은행 담당이사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담당이사
  - 새마을금고연합회 담당이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담당이사
  - 생명보험협회 담당이사
  - 손해보험협회 담당이사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담당이사
  - 신용조회회사 중 대표사의 담당이사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신용정보실무협의회 규정

- 동 규정은 신용정보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정보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신용정보실무협의회

- 기 능 : 신용정보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 협의회의 협의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
  -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결정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결정
  - 협의회가 인정한 사항에 대한 결정

- 구 성
  - 신용정보담당부서장(전산부문의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
  - 전국은행연합회(의장)
  -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 구성 은행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수협회원조합 중 대표기관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연합회
  - 한국금융투자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팀)
  - 신용조회회사 중 대표사
  - 보증보험사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다.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실시기준

- 동 기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의거 신용정보제공기관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 기준은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정함

라.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

- 동 기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제공기관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지연·누락·거짓등록 등에 대한 제재금부과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함

【2】 신용정보의 범위

〔1〕 식별정보

가. 개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조합한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 : 〈별표 2〉 외국인·재외동포의 신용정보 등록시 관리번호 부여요령 참조), 직업

나. 개인기업 및 법인

- 개인기업의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차주번호 : 금융기관별 임의부여)

※ 정확한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주민)등록번호로 각각 조회하여야 함

〔2〕 신용거래정보

가. 개설 발급정보

-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나. 개인대출정보

- 대출현황(담보종류, 서민금융종류 등)

다. 카드론현황 등

- 카드론현황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라. 개인채무보증정보

마. 기업신용공여정보

- 대출, 지급보증, 기업어음 등 신용공여현황
- 한도거래상황
- 담보기록현황
-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현황
- 기업어음(CP) 정보

〔3〕 신용도판단정보

가. 연체정보

- 대출금 등의 연체사실, 신용카드대금 연체사실, 할부금융대금 연체사실
- 매입외환 연체사실, 외환 관련 연체사실, 해외대출금 연체사실
- 기일경과어음 미결제 사실, 무보증회사채 상환 불이행자
- 무담보 미수채권, 부실채권 인수사실 등

나. 대위변제 · 대지급 정보

다. 부도정보(어음 또는 수표 부도사실 포함)

라.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마. 관련인 정보

〔4〕 신용능력정보

가. 회사에 대한 일반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등)
나. 재무정보(재무상태, 재무비율)
다. 비재무정보(상장유무,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5〕 공공정보

가. 국세·지방세·관세 등 체납사실

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실

다. 산재·고용보험료, 과태료체납사실

라. 회생절차(기업체, 일반, 개인)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마.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사실

바.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사실 등

사. 국외이주신고 정보

아. 조달청의 정보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자. 사망자 정보

개인신용정보 집중시기

구 분	집중정보	집중시기	비고
연체등정보 주1)	제공·이용기관	1995. 7. 6.	
	한국자산관리공사	1999. 2.	
	근로복지공단	2002. 12.	
개인대출정보	3천만원 이상	1995. 7. 6.	
	2천만원 이상	1998. 3. 10.	
	1천만원 이상	1999. 4. 1.	
	1원 이상	2002. 7. 1.	
	계좌별 관리(담보구분포함)	2012. 1. 25.	
채무보증정보	은행권	2001. 4. 1.	
	제2금융권	2001. 7. 1.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주1)		1995. 7. 6.	
신용카드개설 주1)		1995. 7. 6.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2002. 7. 1.	
카드론현황 주2)		2005. 11. 8. 개정	2006. 2.집중
공공정보	국세체납정보	2000. 7.	
	지방세체납정보	1997. 7.	
	과태료체납정보	2008. 9. 1.	
	관세체납정보	2002. 10. 1.	
	채무불이행정보	2002. 10. 제정	2003. 11. 집중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정보	2008. 1.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정보	2002. 10. 20.	
	법원 파산·면책정보	2003. 6. 16.	2005. 9.부터 법원에서 통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2004. 9. 10.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지원정보	2005. 6. 3.	
	조달청의 정부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2011. 1. 31.	
	사망자 정보	2011. 12. 27	

주1) 1995. 7. 6. 이전에는 은행 및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율로 연체등정보 집중·활용

주2) 2005. 11. 이전에는 개인대출정보에 포함

【3】 신용정보 교환·활용 대상기관의 범위

〔1〕 **금융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자를 말함

- 1995년 7월 6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과 동시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의 은행 등 금융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기관은 물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당국의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합리적인 자금운용과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음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공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6호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2〕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3〕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Ⅱ. 신용거래정보

【1】 개설·발급정보

〔1〕 집중대상

-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단 가족회원 신용카드 발급 사실은 제외함

〔2〕 집중시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중함

〔3〕 관리원칙

-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집중하며 정보 조회시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징구

【2】 개인대출정보

〔1〕 집중대상

- 대출 금액·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집중함. 예를 들어 정책자금 등의 경우에도 대출정보를 집중해야 함

〔2〕 집중 및 해지시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집중
- 대출상환 또는 채권포기,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청구할 수 없을 때 해지

〔3〕 관리원칙

-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집중하며 정보 조회시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징구
- 개인대출정보는 발생내역별(계좌별)로 관리함
- 한도거래 약정대출금은 한도약정금액을 대출금 잔액으로 봄(실제 사용금액을 고려한 대출금 잔액 변경 없음)
- 등록대출담보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대손상각 시에도 관리함(기 등록된 대출정보를 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부담으로 당초 등록사유발생일 관리가 어려울 경우 특수채권 편입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등록 가능 : 신규 등록 시에는 기존 대출정보 계좌번호를 추가)
- 각 업권별 범위 내 대출(예·부·적금의 납입액 담보대출 및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등)도 정보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대출은 제외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금융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시행하는 대출인 임직원대출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은 등록하고 사내 복지차원의 임차보증금은 등록하지 않음. 단, 임차보증금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업권의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됨
- 공동차주의 경우 각각 대출금 잔액으로 집중함
- 대출 원금 상환 후 이자 및 제비용이 남은 상태로 관리할 경우 등록금액을 "1"로 변경

【3】 카드론 현황 등

〔1〕 집중대상 및 관리방식

-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집중하며 정보 조회시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징구
- 카드론현황 및 신용카드현금서비스정보는 신용정보주체별로 관리함
- 집중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신용정보주체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 잔액·현금서비스 사용 잔액을 개인대출현황과 구분하여 집중
- 대손상각 시에도 관리함

〔2〕 집중 및 해지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상환 또는 채권포기,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청구할 수 없을 때 해지

【4】 채무보증정보

-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집중하며 정보 조회시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징구」
- 채무보증정보는 신용정보주체별로 관리함

〔1〕 집중대상

가. 금융기관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연대보증
나.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에 대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채무보증현황
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의 보증도 집중대상임
라. 기업여신의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의 보증현황도 집중대상임

〔2〕 집중금액

가. 금액 제한 없음
나. 주채무자의 대출원금 기준(단, 마이너스대출, 당좌대출 등 한도거래대출은 대출약정한도액으로 함)
다. 보증인별, 금융기관별로 보증 총액을 집중

〔3〕 주채무(여신금액)의 변동으로 인한 보증금액의 정정

가. 주채무자의 일부변제 등 주채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신용정보의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예 1 **주채무금액 1,000만원에 대해 1인(보증인 A)이 입보시**

⇒ 주채무자가 500만원을 변제한 경우 보증인 A의 보증금액을 500만원으로 정정

예 2 **주채무금액 1,000만원에 대해 2인(보증인 A, B)이 입보시**

⇒ 주채무자가 500만원을 변제한 경우 보증인 A 및 보증인 B의 보증금액을 500만원으로 정정

예 3 **주채무금액 1,000만원에 대해 보증 600만원(보증인 A), 담보설정액 400만원인 경우**

⇒ 주채무자가 500만원 변제시 담보설정액과 관계없이 보증인 A의 보증금액만 500만원으로 정정

나. 부분보증의 경우 주채무금액의 변동으로 인한 보증금액은 보증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율안분하여 금액을 정정

예 4 **주채무금액 1,000만원에 대해 보증인 A가 300만원, B가 700만원 입보시**

⇒ 주채무자가 500만원(주채무액의 50%) 변제한 경우 보증인 A의 보증금액은 150만원으로, 보증인 B의 보증금액은 350만원으로 정정

〔4〕 집중시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중

【5】 기업신용공여정보

〔1〕 금액기준

- 신용공여 금액에 제한이 없음(금액단위 백만원)

〔2〕 신용공여의 종류

-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함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7호)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대출
> 2. 지급보증
>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 5.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 6. 은행이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3〕 신용공여의 계정과목

-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정한 신용공여조사표(은행, 특수금융기관,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함

〔4〕 집중시기

- 일일집중〔신용공여(10일 이상 연체 포함), 기업어음〕 :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단 말일보는 6영업일 이내

- 월집중(담보기록, 한도거래상황,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 익월 제6영업일 이내

〔5〕 기록보존기간

- 해당 자료의 등록기준일로부터 12월보의 경우 3년, 기타월보의 경우 1년, 일보의 경우 1개월 이상 그 기록을 보존함

※ 기업어음(CP) 정보

- 현행 기업신용공여정보에 포함되는 내용 이외 기업어음의 발행회사, 종류, 발행금액, 매매금리, 만기일 등의 거래정보
- 기업정보 집중·활용 금융기관
  - 은행, 증권사, 종금사, 자산운용사
  - 공유시기 : 2005. 8. 1. (정보 집중은 2004. 8. 1.)
- 집중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 이내
- 집중항목
  - 발행회사, 종류, 발생금액, 발행일, 매매일, 만기일, 매매금리, 매입(매출)처(상대거래처), 평가등급, 평가기관
  - 금융기관 간 공유항목 : 집중항목 중 매매금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

<은행/특수금융기관 신용공여조사표상의 계정과목 해설>

대 과 목	계정과목 (과목코드)	내 용
대출채권	원 화 대 출 금	-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일정한 담보(물건, 지급보증)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한 고객에게 융자해 준 원화자금 - 은행간(외화)대여금은 집중대상에서 제외
	상 업 어 음 할 인 (101)	- 금융회사가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에 의거 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업어음을 어음액면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 즉,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매입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
	당 좌 대 출 (103)	- 당좌예금 거래자가 금융회사와 당좌대월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좌예금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에 응함으로써 생기는 대출 - 기업·운전자금대출금의 당좌대출, 자유원당좌대출,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금의 당좌대출 등
	일 반 자 금	- 자금용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출을 처리하는 계정 - 기업자금대출금의 운전자금대출·시설자금대출 및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금의 운전자금대출·시설자금대출중 일반자금대출
	운 전 자 금 대 출 (105)	- 운전자금은 기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원재료비, 인건비, 판매비, 세금과공과,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연구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특별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대출
	시 설 자 금 대 출 (107)	- 시설자금대출금은 제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장건물의 신축·증축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최장 10년의 장기대출
	무 역 금 융 (109)	- 수출관련업체 즉 수출업체나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원자재나 완제품의 공급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출제도로서 금융회사가 이와 관련한 대출을 취급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 - 무역어음대출 등
	신 탁 계 정 대 출 (111)	- 신탁계정에서 대출금으로 계리되어 처리되는 계정 - 할인어음(상업어음 할인, 무역어음 할인), 유가증권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 부동산저당대출, 재단저당대출, 채권담보대출, 수익권담보대출, 공공단체에대한대출, 보증대출, 증서대출, 어음대출 등 - 신탁자금 중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본이익무약정신탁(955) 계정으로 집중등록

대 과 목	계정과목 (과목코드)	내 용
대출채권	기업어음할인 (113)	-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자기발행어음, 즉 융통어음을 금융회사가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의거 할인 매입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 - 은행의 회계관리상 원화대출금으로 계리되면 기업어음할인(113)으로, 매입어음 CP 매입으로 계리되면 매입어음(원화환어음매입, 141)으로 처리함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15)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하는 업체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로써 대출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어음 발행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의 납품에 대한 내역을 금융회사에 전송하면 판매기업은 동 금융회사에 본인을 차주로 하는 개별대출을 신청하고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에 구매기업이 상환하는 절차를 취함.(구매업체 및 판매업체가 은행과의 대출신청 및 납품내역 전송 등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 - 구매자금대출의 경우 구매업체가 차주로 되나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다수의 판매업체가 차주로 등재됨 -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비소구권)에는 집중제외
	구매자금대출 (117)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따른 구매자금결제를 위한 제도(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관련)로써, 판매기업이 환어음 및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서류로써 은행(제시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구매업체의 거래은행(지급은행)은 동 환어음에 대한 인수여부를 결정한 후(서류 전송후 7일 이내에) 구매업체에 대해 대출(구매자금대출)을 일으켜서 구매자금을 결제해주는 절차를 취함(B2B 방식 포함) - 구매카드대출은 기타로 분류하여 등록
	기타 (129)	- 원화대출금 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원화대출금은 기타 항목으로 처리
	외화대출금 (131)	-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 외화로 대출하거나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취급한 대출

대 과 목	계정과목 (과목코드)	내 용
대출채권	내국수입유산스 (133)	- 외국환은행이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신용장에 의거 발행된 수입환어음을 수입화물 도착 즉시 인수함과 동시에 대외결제하고 동 어음 만기일내에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상환 받는 외화여신으로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정하는 외국환은행이 이를 취급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
	역외외화대출금 (135)	- 외국환은행이 외국의 타 off-shore 계정으로부터 조달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 및 외국의 타 off-shore 계정 앞으로 취급한 외화대출
	외화차관차금대출금 (137)	- 외국의 수출입은행 등 ADB(아시아개발은행), IBRD(세계부흥개발은행) 등 세계 유수의 개발은행 및 기금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을 재원으로 장기저리의 외화대출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외화대출의 일종이나 이를 구분 처리함
	지급보증대지급금 (139)	- 금융회사가 신용장 개설이나 지급보증서 발행에 의하여 고객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후 결제기일에 고객이 채무를 결제하지 않아 은행이 대신하여 결제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고객에 대한 구상권임
	매입어음 (원화환어음매입) (141)	- 매입어음은 기업 등이 발행한 상업어음, 무역어음,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다만, 상업어음할인이나 무역어음할인 등의 경우에는 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이긴 하나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용공여로 당해 어음은 담보의 성격이 강하므로 원화대출금으로 처리한다. - 매입어음으로 처리하는 예로는 내국신용장어음매입, 원화수출환어음매입, 은행발행표지어음매입, CP매입, 기타 매입어음이 있음
	매입외환 (143)	- 외국환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를 대가로 매입하여 추심 중에 있는 외환의 대금이 해외 예치환거래 금융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당방계정이나 외화본지점 계정에 입금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과계정이다.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수표, 여행자수표 또는 수출환어음, 외화내국신용장어음 등을 매입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입한 외화수표 또는 수출환어음은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하는 일종의 여신행위이며 특히, 수출환어음의 매입은 수출상(매입신청인)이 신용장 또는 D/A, D/P계약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 일체를 거래은행(매입은행)이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함

대 과 목	계정과목 (과목코드)	내 용
대출채권	매 입 외 환 (신용위험) (144)	- 매입외환 중 개설은행의 신용장방식이 아닌 D/A, D/P, O/A 등의 계약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함
	팩토링채권 (외상채권매입) (145)	- 금융회사가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와 팩토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처가 상거래와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채권 또는 비어음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처리하는 계정 -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비소구권)에는 집중제외
	기 업 구 매 전 용 카 드 (146)	- 기업이 영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활동으로 발생하는 구매대금 지급업무(구매카드)와 판매활동을 통한 판매 수금업무(역구매카드)를 「신용카드 업무 Flow」와 「자금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전자방식의 결제시스템 -〈구매카드〉 구매기업(회원, 예 : 의류제조업체)은 판매기업(가맹점, 예 : 원단공급업체)으로부터 납품받은 내역을 은행에 전송하고 은행은 동 자료를 근거로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선지급(만기지급도 가능)한 후 결제기간에 구매기업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납하는 절차를 취함 -〈역구매카드 : 대리점카드〉 판매기업(가맹점, 예 : 복사기제조업체)은 판매자료를 은행에 전송하여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결제기일에 은행은 구매기업(회원, 예 : 판대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금 결제를 받는 절차를 취함 - 신용카드채권중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별도 표시하여 처리
	신 용 카 드 채 권 (직불, 신탁 포함) (147)	- 신용카드업무와 관련하여 가맹점에 선지급한 회원의 신용구매대금과 회원에게 자금을 융통한 신용판매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회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 - 신용카드 채권 중 기업구매전용카드 관련금액 금액은 차감 표시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계정으로 처리 - 법인카드,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 사용액(신용판매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기타) - 신탁자금 중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본이익무약정신탁(995) 계정으로 집중등록

대 과 목	계정과목 (과목코드)	내 용
대출채권	환매조건부 채 권 매 수 (신탁포함) (149)	- 타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수하였을 경우 동 매수가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매매 당사자 사이의 채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이율에 의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매매방법으로서 본질상 단기자금의 대차거래이지만 그 거래대상이 장기금융자산인 채권이며 담보의 성격이다 - 신탁자금 중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본이익무약정신탁(995) 계정으로 집중등록
	콜 론 (신탁포함) (151)	- 한국자금중개(주)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기관간 직접거래에 의하여 콜거래가 허용된 기관에게 원화 및 외화자금을 단기로 대여한 경우 처리하는 계정 - 금융회사간조정자금은 집중대상에서 제외 - 신탁자금 중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본이익무약정신탁(995) 계정으로 집중등록
	사 모 사 채 (신탁포함) (153)	- 공모사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소수인에 대하여 발행된 회사채(금융채 포함)로서 정보의 공시의무가 면제되고 유통성이 제약된다는 점이 공모채와 다르며 이를 금융기관이 인수하였을 경우 인수분을 처리하는 계정 - 신탁자금 중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본이익무약정신탁(995) 계정으로 집중등록
	신 탁 계 정 금 전 채 권 (155)	- 신탁계정의 계정과목으로서 채권의 성질에 따라 추심금전채권과 생명보험채권을 말하며, 추심금전채권은 수탁받은 금전채권의 채권실행과정인 추심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생명보험채권은 수탁받은 금전채권의 신탁중 보험신탁의 처리 즉, 보험료 납입대행,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행사 등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 신탁자금 중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본이익무약정신탁(995) 계정으로 집중등록
	기 타 (189)	- 대출채권 중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

대 과 목	계정과목 (과목코드)	내 용
유가증권	은 행 계 정 C P (보증어음 포함) (201)	-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기업발행어음으로 기업어음할인, 보증어음 매입, 자유금리어음매입, 중개어음매입을 포함 -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의 분류에 불구하고 해당 과목을 집중
	매 입 어 음 (신탁포함)	- 기업 등이 발행한 사업어음, 무역어음,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 -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보 증 어 음 (211)	- 기업체가 어음을 발행하고 은행,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인수·보증한 어음을 말함
	자 유 금 리 기 업 어 음 (213)	-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단기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약속어음)으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B급 이상인 적격업체 또는 통합 금융회사가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종합금융회사가 매입하여 다시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어음을 매입시 처리하는 계정
	중 개 어 음 (215)	- 종합금융회사가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B급 이상의 적격업체인 발행자와 투자자를 연결하여 상호합의된 금리와 금액으로 무담보기업어음을 발행 및 매입토록 중개한 어음을 매입시 처리하는 계정
	기 타 (229)	- 신탁 매입어음중 상기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하며, 표지어음, 발행어음 등이 있음.
	공 모 사 채 (231)	-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에 의하여 발행된 회사채(금융채 포함)로서 상품유가증권이나 투자유가증권의 분류에 불구하고 집중 - 국채, 지방채, 주식은 집중대상에서 제외. 담보의 경우 집중등록
	대 여 유 가 증 권 (233)	- 금융회사가 대여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후 동종, 동액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 거래처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시킨 유가증권으로서 주식, 채권 등 모든 유가증권 포함
	기 타 (289)	- 유가증권 중 상기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하며, 수익증권은 집중대상에서 제외

대 과 목	계정과목 (과목코드)	내 용
주 석	확 정 지 급 보 증	- 금융회사가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채무를 보증해주는 경우 이에 따른 우발채무(보증채무)중 확정우발채무를 처리하는 계정 - 원칙적으로 지급보증표시통화를 기준으로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지급보증 표시통화와 보증채무 이행통화가 상이한 경우는 보증채무 이행통화를 기준으로 구분
	융 자 담 보 지 보 (301)	- 원화융자에 수반되는 담보조의 지급보증을 처리하는 계정
	사 채 지 급 보 증 (303)	-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은행이 보증하는 것임
	기 타 (329)	- 원화확정지급보증 중 상기항목을 제외한 지급보증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상업어음보증, 무역어음인수, 수입신용자관련보증, 기타 원화지급보증 등이 있음
	인 수 (331)	-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선적서류가 도착하거나 수입업자의 의뢰로 내국수입유산스 L/C를 개설하고 해외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자행인수어음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차관인수를 포함
	화 물 선 취 보 증 (333)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에 의한 수입거래의 경우 은행이 동 보증서 발급시 우발채무를 처리하는 계정
	기 타 (349)	- 외화확정지급보증 중 상기항목을 제외한 지급보증으로 처리하되 현지지급보증(348)을 포함
	현 지 지 급 보 증 (348)	- 기타(349)중 해외에서의 현지차입과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및 선수금환급 등을 위한 지급보증으로 처리
	미 확 정 지 급 보 증	- 은행이 부담하는 우발채무(보증채무)중 미확정 우발채무인 것을 표시하는 계정
	신 용 장 개 설 관 계 (351)	- 금융회사가 신용장발행에 따라 부담하는 우발채무(보증채무)중 미확정우발채무인 것을 표시하는 계정

대 과 목	계정과목 (과목코드)	내 용
주 석	기 타 (369)	- 미확정 지급보증 중 상기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 처리
	외화대출약정 (역외포함) (371)	- 고객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대출공여약정 체결 시 그 한도 중 미인출금액을 계상하는 과목
	배서어음 (373)	- 동 계정은 배서어음의 양도에 따른 우발채무를 계상하는 계정으로 무역어음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무역어음을 할인매입 후 동 무역어음(매입어음이 함)의 매각과 관련하여 표지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매입어음을 직접 매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하고,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으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발채무로 본 계정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화여수신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국수입유산스의 취급에 있어서 타행이 인수한 은행인수어음을 할인매입하였다가 이를 타행 또는 일반에게 할인매각할 경우 등 대차대조표 난내에 표시되지 않는 미확정 우발채무도 여기에 기재하고 있음 - 담보 유무에 따라 담보배서어음과 무담보배서어음이 있음 - 종전〈상업어음할인 및 매출취급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할인한 상업어음을 일반에게 매출할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상업어음 일반매출시 할인어음을 차감하지 않고 매출어음계정(부채)에 표시하게 되므로 상업어음제도에서는 발생치 않게 됨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신탁포함) (375)	-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으로 조건부환매특약내용을 포함하여 무수익여신(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와 국내외 기관투자가 또는 유동화전문회사(SPC) 앞으로 환매특약내용을 포함하여 대출채권을 매각한 경우에 환매특약내용이 포함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 - 신탁자금 중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본이익무약정신탁(995) 계정으로 집중등록
	기 타 (389)	- 상기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

대 과 목	계정과목 (과목코드)	내 용
기 타	여 신 성가지급금 (신탁, 종금 포함) (401)	- 채권보전, 법적절차 및 회수절차상 부득이한 지출로서 장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신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차주의 상환약정 등과 같은 확정계정처리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 -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미 수 금 (403)	- 미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매입외환 대체분만을 포함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 수단 (405)	- 자산보유자가 SPC에 원화대출약정, ABCP(유동성기업어음) 매입약정, 하자담보책임 등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질 경우 처리하는 계정
	대손상각채권 (407)	-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회계기준에 따라 손비처리하는 것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보증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로서 거래 존속시 까지 집중 -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 등록, 채권포기,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의 경우에는 집중 제외
	기 타 (489)	- 상기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
종금계정	대 출 채 권 (CMA 계정포함)	-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 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등의 구상채권 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계정
	할 인 어 음 (501)	- 금융회사가 신용조사를 통하여 선정한 적격업체 또는 유가증권 담보업체가 발행, 배서,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이나 보증업무 취급기관(은행, 신용보증기금, 종합금융회사, 보증보험)이 지급을 보증한 기업어음을 할인 의뢰인(어음발행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할인매입하는 것을 처리하는 계정 - 기업이 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융통어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어음할인과 상거래에 수반되어 지불수단으로 발행되는 진성어음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어음할인으로 분류됨 - CMA 할인어음을 포함

대 과 목	계정과목 (과목코드)	내 용
종금계정	팩토링어음 (503)	- 기업의 미결제 판매대금의 조기 현금화를 통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채권 또는 외상 매출채권을 당사(Factor)가 양도받고 금융제공, 매출채권관리 및 대금회수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원 - 팩토링금융 대상어음은 당사가 신용조사를 통하여 선정한 당사의 적격업체가 발행한 상업어음에 한함 - CMA 팩토링어음을 포함
	기 타 (529)	- 종금계정 대출채권중 상기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 - 장단기원화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출자전환채권, 기일경과어음, 기타대출채권 등이 이에 속함
	리 스 채 권	- 리스회사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로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처리하는 계정
	금 융 리 스 채 권 (531)	- 금융회사가 기업 및 고객에게 설비를 임대하는데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책임을 지는 리스채권을 처리하는 계정
	운 용 리 스 채 권 (533)	- 금융회사가 기업 및 고객에게 설비를 임대하고 그 자산의 유지관리 및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리스채권을 처리하는 계정
	기 타 (549)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리스채권을 처리하는 계정
	어 음 지 급 보 증 (551)	- 단기금융시장을 통한 기업금융조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사업어음 보증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동 지급보증액을 처리하는 계정
	무 역 어 음 인 수 (553)	-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된 어음, 즉 무역어음을 인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
	담 보 배 서 어 음 매 출 (555)	- 종금사가 기업 등 고객으로부터 매입절차를 필하고 보관 중에 있는 할인어음을 고객에게 매출하는 것으로 만기시 어음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종금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 담보배서어음
	기 타 (569)	- 상기 항목중 속하지 아니하는 난외계정을 처리하는 계정
원본 (이익) 미보전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 정이 없는 신 탁 (995)	-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에서 발생하는 신용공여를 처리하는 계정

<비은행금융기관 신용공여조사표상의 계정과목 해설>

대과목	계정과목	내 용
대출채권	상업어음할인(CMA 포함)(101)	- 금융회사가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에 의거 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업어음을 어음액면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 즉,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매입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
	무역어음할인(CMA 포함)(102)	-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결제조건부 계약서를 근거로 발행하고 외국환은행이 인수한 어음, 즉 무역어음을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의거 할인 매입한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유가증권 담보대출(104)	- 금융회사가 유가증권(주식,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 등)을 담보로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처리하는 계정
	부동산 담보대출(106)	- 금융회사가 부동산(토지,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을 담보로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처리하는 계정
	예적금 담보대출(108)	- 예금·적금·저축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내에서 예금·적금 등을 담보로 대출 처리되는 계정
	계약금액내대출(110)	- 계약금액, 부금, 적금의 범위 내에서 만기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대출 - 범위내 대출 등
	어음담보대출(112)	-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 - 상업어음담보대출 등
	기업어음할인(CMA포함)(113)	-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자기발행어음, 즉 융통어음을 금융회사가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의거 할인 매입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 - 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 기업어음할인계정으로집중, 유통물(금융기관간) 매입인 경우 기업어음매입으로 집중

대과목	계정과목	내 용
대출채권	지급보증(담보)대출(114)	- 고객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할 경우 처리하는 계정
	공제금대출(116)	-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 조합, 기타의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출할 경우 처리하는 계정 -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공동구매·판매사업자금 대출 등
	농수산정책자금(118)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취급하는 정책자금 대출로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분류하였으나, 2008. 1. 1.부터 본 계정으로 통합하여 집중하는 계정
	종금원화대출(119)	- 종금사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일정한 담보(물건, 지급보증)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신용대출금(종합통장대출)(120)	-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소액신용대출, 인터넷전용대출, 무보증신용대출 등을 실행하고 처리하는 계정 - 예탁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신기술금융대출(121)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 및 국산신기술인정을 받은 기업, 공업발전법에 의한 개발기술 실용화 인정 및 우수품질인정을 받은 기업 등 객관적으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계정
	외화대출금(131)	- 금융회사가 거래처에 외화로 대출하거나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취급한 대출금을 처리하는 계정 - 원화자금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이라도 표시통화 및 대출·회수금액의 결정 통화가 외화인 경우에는 외화대출로 봄
	금융리스채권(132)	- 금융회사가 기업 및 고객에게 설비를 임대하는데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책임을 지는 리스채권을 처리하는 계정

대과목	계정과목	내 용
대출채권	내국수입유산스(133)	- 외국환은행이 자행이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신용장에 의거 발행된 수입환어음을 수입화물 도착 즉시 인수함과 동시에 대외결제하고 동 어음 만기일내에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상환받는 외환여신으로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정하는 외국환은행이 이를 취급하였을 경우리 처리하는 계정
	역외외화대출금(135)	- 타 off-shore(역외금융) 계정으로부터 조달한 외화자금을 외국의 타 off-shore(역외금융) 계정 앞으로 취급한 외화대출계정
	운용리스(136)	- 금융회사가 기업 및 고객에게 설비를 임대하고 그 자산의 유지관리 및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리스채권을 처리하는 계정
	자금대여(138)	-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지급보증대지급금(139)	- 금융회사가 신용장 개설이나 지급보증서 발행에 의하여 고객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후 결제기일에 고객이 채무를 결제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대신하여 결제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고객에 대한 구상권
	약정투자(140)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투자회사 간의 약정에 의하여 투자조건을 결정하는 투자방법으로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투자금 사용료를 받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계획사업의 성공 시에는 주식 전환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실패 시에는 투자자금의 일부만을 상환토록하는 투자방식
	할부금융(142)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처리하는 계정
	외상매출채권(145)	- 금융회사가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처가 상거래와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채권 또는 비어음외상매출채권을 고객으로부터 매입을 통하여 채권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대금을 직접 회수하고 사업체에게는 간접적인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 -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취득한 경우 집중 제외 - 팩토링채권, 외상매출채권매입, 수출팩토링채권 등

대과목	계정과목	내 용
대출채권	신용카드채권 (147)	- 신용카드업무와 관련하여 가맹점에 선지급한 회원의 신용구매대금과 회원에게 자금을 융통한 신용판매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회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탁포함) (149)	- 타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수하였을 경우 동 매수가액을 처리하는 계정 - 종금사의 경우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은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계정으로 집중
	콜론 (151)	- 한국자금중개(주)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 간 직접거래에 의하여 콜거래가 허용된 기관에서 원화 및 외화자금을 단기로 대여한 경우 처리하는 계정 - 종금사의 경우 원금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은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계정으로 집중 - 금융회사간 조정자금은 제외
	사모사채 (153)	- 공모사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소수인에 대하여 발행된 회사채(금융채 포함)로서 정보의 공시의무가 면제되고 유통성이 제약된다는 점이 공모사채와 다르며 이를 금융회사가 인수하였을 경우 인수분을 처리하는 계정
	기타(189)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
유가증권	기업어음매입 (202)	- 기업 등이 발행한 상업어음, 무역어음, 환어음, 표지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식의 대출채권으로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을 포함하여 어음할인의뢰인 기준으로 작성 - 기업으로부터 직접매입한 경우 기업어음할인계정으로 집중하며 유통물 매입인 경우 기업어음매입으로 집중
	공모사채 (231)	-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에 의하여 발행된 회사채(금융채 포함)로서 상품유가증권이나 투자유가증권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집중 - 외화회사채, 원화발행금융채권,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종합금융채권, 정부출자기업채권 등
	대여유가증권 (233)	- 금융회사가 대여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후 동종, 동액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 거래처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시킨 유가증권으로서 주식, 채권 등 모든 유가증권을 포함
	기타(289)	- 상기 유가증권 항목에 속하지 않은 계정을 처리

대과목	계정과목	내 용
주 석 (지급보증등)	지급보증 (302)	- 금융회사가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채무를 주는 우발채무(보증채무)로서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에 대한 보증액을 집중 - 금융회사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 지급보증 포함
	어 음 지급보증 (304)	- 금융회사가 기업 등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하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할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담보배서 어음대출 (305)	- 종금사가 기업 등 고객으로부터 매입절차를 필하고 보관중에 있는 할인어음을 고객에게 할인 매출하는 것으로 만기시 어음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종금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 담보배서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무담보배서어음)
	무 역 인수어음 (306)	- 수출업체가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구입이나 생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출신용장(LC)을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 수출업체는 신용장이 도착하면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수출업체가 이를 종합금융회사나 은행에 지시하면 일정금리를 공제한 뒤 나머지 돈을 대출받게 된다. 종금사는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각, 유통시킨다.
	이행지보 (307)	- 해외건설 또는 무역계약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보증서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계약이행보증이라고도 함.
	외화대출 약 정 (371)	- 고객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대출공여약정(외화대출공여, 역외포함)을 체결 시 그 한도 중 미인출금액을 계상하는 계정
	기타(389)	- 상기 지급보증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
기타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 수단 (405)	- 자산보유자가 SPC에 원화대출약정, ABCP(유동성기업어음) 매입약정, 하자담보책임 등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질 경우 처리하는 계정
	대손상각 채 권 (407)	-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회계기준에 따라 손비처리하는 것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보증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로서 거래 존속시 까지 집중 -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 등록, 채권포기,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의 경우에는 집중 제외
	기타(489)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을 처리
신탁	원본·이익보전약정이 없는 신탁 (995)	-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에서 발행하는 신용공여를 처리하는 계정 -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퇴직신탁, 연금신탁 등 - 일보(말일자)의 만기구조 제외

참고문헌 : 은행회계해설

Ⅲ. 신용도판단정보

【1】 '연체 등' 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1〕 '연체 등' 정보의 등록

가. 연체기준

-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기관이 인수한 사모사채 상환원리금이 약정일에 상환되지 않고 일정기간 연체되는 경우에는 연체대출금과 동일한 등록코드로 연체정보를 등록

※ 법률 등(재산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으로 변제 등이 제한될 경우 연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봄

나. 연체기산일

- 약정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날의 익일. 다만,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상환에 의해 차기납입일이 변경된 경우 연체기산일은 차기납입일의 익일로 변경됨

다. 등록사유발생일

1. 등록사유발생일
   - 등록사유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연체기산일로부터 해당 개월이 되는 때를 말하며 세부적인 등록사유는 규약〈별표1, 35p〉 참조

   ※ 기타 등록사유발생일 기산 관련 사항은 138p 참조

2. 세부사항

① 본인의 예·적금 담보대출

- 대　　상 : 은행(예·적금 담보대출 및 수익권담보대출), 약관대출(생보, 손보), 새마을금고(범위내대출), 증권금융(주식담보대출) 등
- 처리방법 : 상기의 상품 등을 담보로 한 불입액 범위내의 대출로서 거래처가 약정기일 내 또는 만기 경과 후 원금·이자 미납 시 연체등정보로 등록하지 아니함

② 무담보미수채권(증권회사에서만 등록하는 사유임)

- 계좌에 담보잔액이 없이 증권회사에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연체 등' 정보로 등록함

③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 한도초과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에 연체정보로 등록.

> **예**　**한도약정 : 1,000만원, 약정기일 : 1. 1.~12. 31., 최초 한도초과일 : 3. 31. (대출잔액 : 1,005만원), 거래처가 3개월 연체시 처리방법?**
>
> **한도초과일의 익일(4. 1.)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시점인 7. 1.에 해당 거래처를 연체거래처로 등록**
> **[등록금액 : 1,000만원　연체금액 : 1(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는 의미임)]**

-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등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좌번호 대신 고객번호 등의 식별번호를 사용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저촉된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임)

④ 한도범위 내 할인어음

- 만기 경과 시 만기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에 등록함
- 환매기간 내에 환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기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에 등록함

⑤ 특수채권 편입

- '연체 등'에 의한 관련채권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연체 등' 정보를 해제 후 신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연체 등' 정보 등록코드 앞에 '7'을 추가하여 표시(7××××)하며, 〔관련인 특수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등록코드

앞에 '8'을 추가하여 표시함(8××××)〕 특수채권 편입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

-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단지 등록코드, 연체금액이 정정되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원래의 관련채권에 준하여 처리함. 따라서 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 '연체 등' 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을 유지함(등록금액, 연체금액은 별도 설명 참조)

예 1 **대출금 만기일 : 1. 26., 연체기산일 : 1. 27.,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4. 27., 등록금액 : 5백만원, 연체금액 : 5백만원, 일부회수 : 7. 28., 3백만원, 특수채권 편입시점 : 9. 30.**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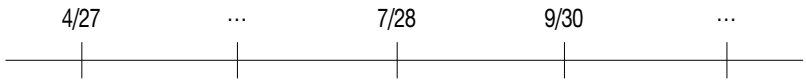

	등록사유발생일	일부회수	특수채권편입일
		3000	
등록코드	0101		70101
등록금액	5000	5000	5000
연체금액	5000	2000	2000

예 2 **대출금 만기일 : 1. 26., 연체기산일 : 1. 27.,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 4. 27., 등록금액 : 5백만원, 연체금액 : 5백만원, 원금회수 : 5. 28., 5백만원, 특수채권 편입시점 : 9. 30.(이자 및 부대비용만 존재한다고 가정)**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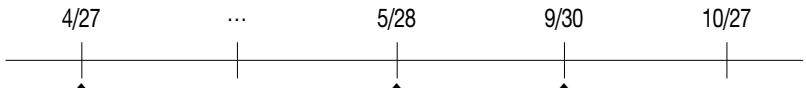

	등록사유발생일	원금회수	특수채권편입일
등록코드	0101	5000	70101
등록금액	5000	5000	5000
연체금액	5000	2 (이자 및 부대비용을 연체하고 있다는 의미)	2 (이자 및 부대비용을 연체하고 있다는 의미)

예 3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원금은 전액 상환되고 이자연체만의 등록사유발생을 가정) : 5. 1., 등록금액 : 1, 연체금액 : 1, 특수채권 편입시점 : 9. 30. (1은 이자연체의 의미)**

⇒ 등록코드 : 70101, 등록금액 : 1, 연체금액 : 1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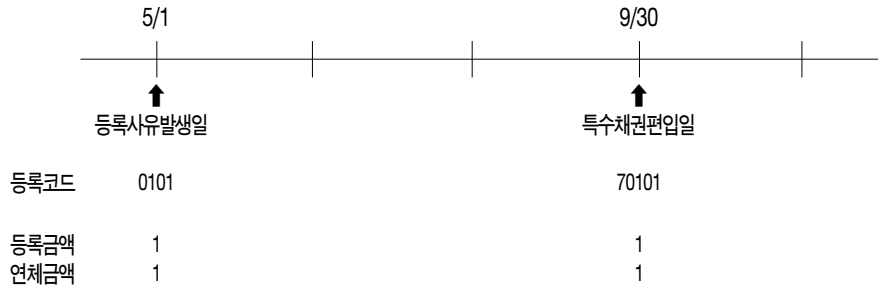

예 4 **대출금 만기일 : 1. 26., 연체기산일 : 1. 27.,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 4. 27., 등록금액 : 5백만원, 연체금액 : 5백만원, 특수채권 편입시점(부분상각 2백만원) : 9. 30.**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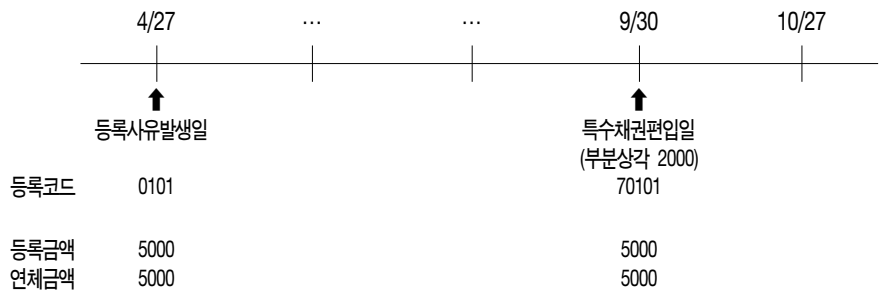

예 5 **대출연체로 인해 연체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0101 등록 없이 바로 특수채권 편입시 70101로 등록하는 경우 인정(지연등록시 제재금 부과). 단, 연체 3개월 미만에 특수채권 편입되었어도 70101로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⑥ 매입외환 및 매입외환부도대전

- "매입외환"은 금융기관이 매입한 수출환어음과 외화수표(추심후 지급 포함)를 말하는 바, 이는 수출상에 대한 금융을 원활히 하여 주는 일종의 여신행위임
- "매입외환 부도대전"은 금융기관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대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신용장방식인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의 통지를 받았거나 입금 또는 인수되어야 할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입금 또는 인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입대금 원금임

- 부도 처리된 후 매입의뢰인이 부도대전을 상환치 아니하고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상 연체 시 당해 거래처를 연체거래처로 등록(거래 상대방간 가격, 품질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중인 경우 등록을 유예할 수 있음)하여야 하며 해당 채무(부도대전 및 부도이자)를 정리한 때 해제함

⑦ 어음·수표 부도사실 처리방법

- 부도사실 발생 시마다 부도일자, 부도금액 및 금융기관 점포명을 열거하며, 부도차수(1, 2, 3차)는 계좌번호란에 표시
- 등록과 동시에 해제되며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기록을 보존

⑧ 거래정지처분사유 및 거래정지처분일(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

- "예금부족"의 부도로서 참가은행으로부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의한 부도어음대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다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등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 "무거래"로 인한 부도가 있을 때. 다만, 발행인이 가설인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타 참가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판명되고 부도발생 익영업일에 그 대금을 제82조의 방법에 의하여 입금하였을 때에는 1년간 1회에 한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면제 : 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 부도어음신고시 제80조에 의한 입금사실의 등록이 없는 "사고신고서 접수",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부도로서 제82조 또는 제83조에 의한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다만, "은행관리기업"의 등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 모든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4회 이상 제82조 또는 제83조, 전자어음업무 시행세칙 제30조에 의하여 입금 통보된 "예금부족", "사고신고서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어음의 부도가 있을 때 : 부도일의 익영업일

-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변조 증빙자료 제출확인서를 기간 내에 교환소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제출마감일의 익영업일
- 모든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2회 이상 "한도초과"로 인한 부도가 있을 때 : 부도일의 익영업일

※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부도정보 등록 후 추가로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사유발생일을 최근 부도일로 정정하고 등록금액을 합산하여 관리함

⑨ 관련인의 정의(과점주주, 30% 최다출자자)

- 법인이 '연체 등' 의 사유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된 경우 등록사유발생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이 등록대상이 되며, 동 관련인 등록코드는 '9+등록코드'의 조합으로 함

예 1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0101**

⇒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의 관련인 : 90101

예 2 **'연체 등' 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법인의 지분율**

- 과점주주 : A(20%), B(15%), C(10%), D(6%)

- 기타주주 : E(31%), F(10%), G(8%)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가 A, 과점주주인 동시에 기업에 연대보증을 한 이사 또는 감사가 B인 경우 관련인 등록대상은?

답변) A(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B(과점주주인 동시에 기업에 연대보증을 한 이사 또는 감사), E(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소유자로서 최다출자자)

※ 당해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예 3 **'연체 등' 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법인의 지분율**
주주 : A(30%), B(30%), C(30%), D(10%)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중복되는 경우 관련인 등록대상은?

답변) A, B, C 모두가 관련인 등록대상임
※ 당해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 관련인 등록소유지분에 대한 판단자료
  - 주식양도사실의 확인은 주식매매사실에 대한 공정증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관련인 등록사유 발생 전) 및 증권거래세납부영수증 등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이어야 함
- 과점주주의 의미
  -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함(『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 관련인 등록 시 유의사항
  -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는 실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관련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단순 출자자에 대해서도 관련인 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대법원 판례 등)
  - 어음·부도사실(0404)의 관련인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⑩ 채무부존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금융기관의 채권확인 관련소송 포함)
- 채무부존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체 등'정보 등록을 유예하며, '연체 등' 정보 등록 후 채무부존재소송 등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를 삭제 처리함
- 채무부존재소송 등을 제기한 후 채무가 존재한다는 최종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처리하지 않고, 최종확정판결일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보아 처리함

⑪ 금융성보증(신용)보험

- 의의
  - 보증보험사의 "금융성보증(신용)보험"이라 함은 자금조달, 시설대여(리스, 렌탈) 등과 관련된 보증(신용)보험을 말함
- 종류
  - 사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회사채 보증보험
  - 은행권 및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주택자금보증
  - 은행권 및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출보증
  - 신기술개발 지원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금보증
  - 리스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리스료 지급보증 등
- 성격
  - 상기 보험종목은 보증보험사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피보험자로부터 자금대여를 받는 경우로서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계약자의 지급능력은 상실되었음을 의미함

⑫ 이행성보증(신용)보험

- 의의
  - "이행성보증(신용)보험" 이라 함은 일반 상거래 및 법령에서 정한 의무 등을 이행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신용)보험으로서 금융성보증(신용)보험을 제외한 전종목 및 부담사유를 말함
- 종류
  - 낙찰자의 계약체결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
  - 계약서에 명시된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
  -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 주계약에서 정한 선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이행(선급금)보증
  - 이동통신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업신용보험 등

- 성격
  - 상기 보험종목은 주계약서상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성 지급보증으로 주계약불이행사실이 지급능력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음

3. '연체 등' 정보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① '연체 등' 정보의 등록 없이 특정기간 경과 시
- 어음 및 수표의 최종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도판단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에는 '연체 등'정보로 등록할 수 없음
  - 수표의 경우는 2009. 10. 2. 최종부도부터 적용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로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등록할 수 없음

② 채무자 사망 시
- '연체 등' 정보를 포함한 모든 신용정보 경우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며, 등록된 이후라면 삭제조치를 취함
- 상속인 명의로 채무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을 '연체 등' 정보로 등록할 수 없으며, 채무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연체 등' 정보로 등록함

③ 각종 협약 등에 따른 등록유예
- 종전 업권별 규약 상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연체 등' 정보의 등록을 유예함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체 등' 정보의 등록을 유예함
- '신용위험평가협의회 협약'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연체 등' 정보의 등록을 유예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에 대하여는 '연체 등' 정보의 등록을 유예함
-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에 의한 기업에 대하여는 '연체 등' 정보의 등록을 유예함

④ 관련인 등록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투자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업체의 관련인이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관에 대한 출자법인 등
- 자본금의 30% 이상을 출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4. '연체 등' 정보 등록특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 등' 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인소유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로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인계절차 미필로 '연체 등' 정보 등록대상이 된 매도인
  - 건설업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자에게 실행된 대출금으로서 건설업자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 등' 정보 등록대상이 된 거래처

라. 등록금액 및 연체금액

1. 등록금액

- 등록금액은 잔여대출원금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잔여대출원금이 증가하는 경우(보증보험사 대위변제 등) 또는 업무착오로 금액을 잘못 등록하는 경우 등] 에 금액정정을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금액정정을 할 수 없음(기록보존기간의 판단자료로 활용)
- 세부사항
  - 신용판매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등록금액은 사유발생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가 발생한 미결제원금을 등록하며 미도래금액(미청구금액)은 제외함
  - 신용판매 할부의 경우 등록금액은 사유발생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초회청구가 발생한 할부이용건은 미결제원금(미도래원금 포함) 전체를 등록하며 초회청구가 발생하지 않은 할부이용건은 등록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신용판매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와 신용판매 할부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상기의 합산한 금액을 등록금액으로 함
- 외화대출 연체시의 금액정정
  : 등록금액은 등록사유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등록하되 업무착오로 금액을 잘못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등록금액은 정정하지 않으며, 일부상환으로 인한 금액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금액변동일의 환율(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액을 정정
-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
  : 등록금액 및 연체금액은 원금회수후의 연체수수료 및 연체이자로 함

2. 연체금액

- 연체금액은 연체중인 잔존채권원금(이자 및 제비용 제외)을 등록하며, 금액이 변동되는 모든 경우〔연체금액의 일부상환, 연체금액의 증가(보증보험사의 대위변제 등), 업무착오로 금액 오류입력 등〕에 금액정정을 함
  다만,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등록된 경우 만기 전이라도 연체원금을 확정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연체금액으로 함. (이자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1"로 등록하되, 만기 전이라도 연체원금을 확정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연체금액으로 정정하며, 원금 상환하고 이자 및 제비용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를 연체금액으로 함)

예 1 **만기일시상환식 대출금 1,200만원, 2. 28.에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납입하지 않고 3개월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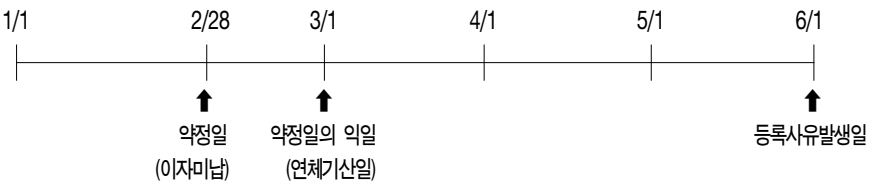

-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일(2. 28)의 익일인 3. 1이 연체기산일이 되며, 연체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6. 1이 등록사유발생일이 됨
- 등록금액(잔여대출원금) : 12,000천원, 연체금액 : 1(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는 의미)

예 2 **대출원금 1,200만원 매월말 분할상환금 100만원, 3월 31일부터 분할상환원리금을 계속하여 연체, 8월 1일 200만원 상환**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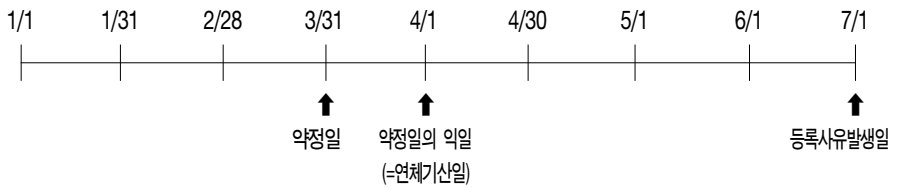

-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일(3. 31)의 익일인 4. 1이 연체기산일이 되며, 연체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7. 1이 등록사유발생일이 됨
- 등록금액(잔여대출원금) : 10,000천원, 연체금액 : 4,000천원
- 8. 1에 연체금액을 3000천원으로 금액정정하여야 함

예 3 **일시불과 현금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1**

결제일이 26일인 회원 A가 1. 26. 결제청구분 신용판매 일시불 250만원과 현금서비스 50만원을 미결제하였으며, 3개월후인 4. 26. 현재 신용판매 일시불 250만원과 현금서비스 50만원을 연체중인 경우

- ○ 등록사유발생일 : 4. 27.
- ○ 등록코드 : 0104
- ○ 등록금액 : 3,000천원(=일시불 250만원+현금서비스 50만원)
- ○ 연체금액 : 3,000천원(만약 5. 26 현금서비스 50만원을 상환하였다면 5. 27.에 연체금액을 250만원으로 금액정정하여야 함)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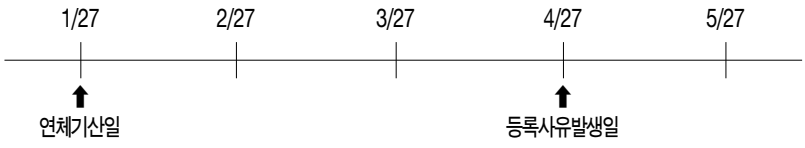

일시불 연체	2,500	2,500	2,500	2,500	2,500
현금서비스 연체	500	500	500	500	0 (5/26상환가정)
등록금액				3,000	3,000
연체금액				3,000	2,500

예 4 **일시불과 현금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2**

결제일이 26일인 회원 B가 1. 26. 결제청구분 신용판매 일시불 250만원과 현금서비스 50만원을 미결제하였으며, 2개월후인 3. 26 현재 296만원을 입금하여 4. 26. 현재 4만원 연체중인 경우

- ○ 등록대상이 아님 : 연체원금 5만원 이상을 연체한 경우 등록하므로 4. 26. 현재 4만원 연체중인 회원 B는 등록대상이 아님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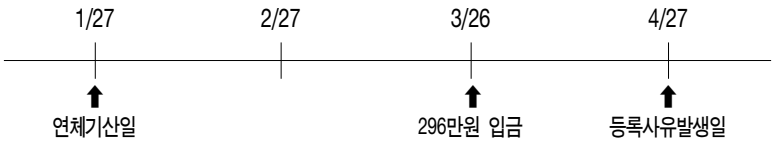

일시불 연체	2,500	2,500	40	40
현금서비스 연체	500	500	0	0
등록금액				0
연체금액				0 → (등록대상이 아님)

예 5 **일시불과 현금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3**

결제일이 26일인 회원 C가 1. 26. 결제청구분 신용판매 일시불 100만원과 현금서비스 50만원을 미결제하였으며, 미청구 일시불(5. 26 결제청구대상) 50만원이 있는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 : 4. 27.
○ 등록코드 : 0104
○ 등록금액 : 1,500천원(=일시불 100만원+현금서비스 50만원)
※ 미청구분(5. 26. 결제청구대상) 50만원은 등록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만약 5. 26. 결제대금 50만원이 연체되었다면 5. 27.에 등록금액을 2,000천원으로 금액 정정하여야 함
○ 연체금액 : 1,500천원(만약 5. 26. 결제대금 50만원이 연체되었다면 5. 27.에 연체금액을 2,000천원으로 금액 정정하여야 함)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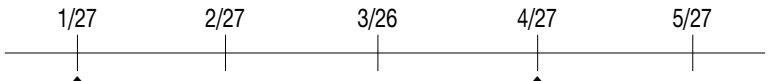

일시불 연체	1000	1000	1000	1000	1500(5/26결제대금 연체가정)
현금서비스 연체	500	500	500	500	500
미청구원금				500	0
등록금액				1500	2000
연체금액				1500	2000

예 6 **할부만 이용하는 경우 1**

결제일이 26일인 회원 D가 300만원의 전자제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월할부금 50만원)하고 1. 26. 초회청구 할부결제금 50만원을 미납하였는데 4. 26.까지 월할부 결제대금을 모두 미납한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 : 4. 27.
○ 등록코드 : 0104
○ 등록금액 : 3,000천원(=연체원금 200만원+결제일 미도래원금 100만원)
○ 연체금액 : 2,000천원
※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5. 27.에 연체금액을 2,500천원으로 금액 정정하여야 함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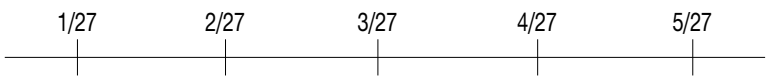

할부 연체	500	1000	1500	2000	2500
미도래할부원금	2500	2000	1500	1000	500
등록금액				3000	3000
연체금액				2000	2500

예 7 **할부만 이용하는 경우 2 (등록사유발생일에 초회미청구할부금액이 있는 경우)**
결제일이 26일인 회원 E가 300만원의 전자제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월할부금 50만원)하고 1. 26. 초회청구 할부결제금 50만원을 미납하였다(4. 26까지 동건에 대한 월할부결제대금을 모두 미납하였음). 4. 20. 150만원의 에어컨을 3개월 할부로 추가구입(월할부금 50만원)하였으며, 에어컨 할부구입대금의 초회청구결제일은 5. 26.인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 : 4. 27.
○ 등록코드 : 0104
○ 등록금액 : 3,000천원(=연체원금 200만원+초회청구발생한 결제일 미도래원금 100만원)
※ 등록사유발생일인 4. 26. 현재 초회청구가 미발생한 에어컨 할부구입대금 150만원은 등록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5. 27.에 등록금액을 4,500천원으로 금액 정정하여야 함
○ 연체금액 : 2,000천원
※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5. 27.에 연체금액을 3,000천원으로 금액 정정하여야 함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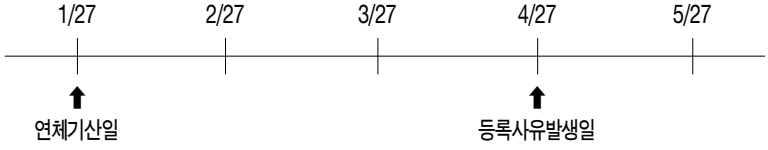

할부 연체	500	1000	1500	2000	3000
미도래할부원금 (초회청구 발생)	2500	2000	1500	1000	500
미도래할부원금 (초회청구 미발생)				1500 (등록금액에 미포함)	1000
등록금액				3000	4500
연체금액				2000	3000

예 8 **일시불과 할부, 현금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1(등록사유발생일에 초회미청구 할부금액이 있는 경우)**

결제일이 26일인 회원 F가 신용판매 일시불 20만원과 현금서비스 3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300만원의 전자제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월할부금 50만원)하였다.

일시불(20만원)과 현금서비스(30만원)의 결제일은 1. 26.이며 할부이용대금의 초회청구결제일은 3. 26이며, 4. 26. 현재 일시불, 현금서비스 및 할부결제대금을 모두 연체중인 경우

- ○ 등록사유발생일 : 4. 27.
- ○ 등록코드 : 0104
- ○ 등록금액 : 3,500천원(= 일시불 연체원금 20만원+현금서비스 연체원금 30만원 + 할부연체원금 100만원 + 초회청구발생미도래할부원금 200만원)
- ○ 연체금액 : 1,500천원(=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연체원금 50만원+할부연체원금 100만원)

※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5. 27.에 연체금액을 2,000천원으로 금액 정정하여야 함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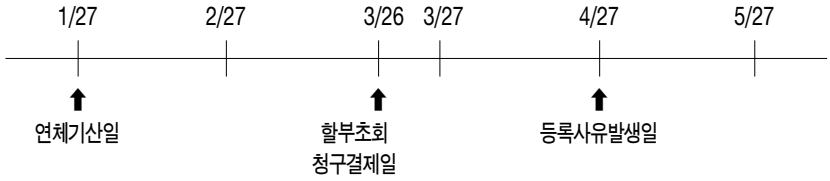

일시불 연체	200	200	200	200	200
현금서비스 연체	300	300	300	300	300
할부 연체			500	1000	1500
미도래할부원금 (초회청구 발생)			2500	2000	1500
등록금액				3500	3500
연체금액				1500	2000

예 9 **일시불과 할부, 현금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2(등록사유발생일에 초회미청구 할부금액이 있는 경우)**

결제일이 26일인 회원 F가 신용판매 일시불 20만원과 현금서비스 3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300만원의 전자제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월할부금 50만원)하였다. 일시불(20만원)과 현금서비스(30만원)의 결제일은 1. 26.이며 할부이용대금의 초회청구결제일은 5. 26이며(4. 26 현재 초회청구 미발생), 4. 26. 현재 일시불, 현금서비스 50만원을 계속하여 연체중인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 : 4. 27.

○ 등록코드 : 0104

○ 등록금액 : 500천원(=일시불 연체원금 20만원+현금서비스 연체원금 30만원)

※ 등록사유발생일인 4. 26. 현재 초회청구가 미발생한 전자제품 할부구입대금 300만원은 등록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5. 27.에 등록금액을 3,500천원으로 금액 정정하여야 함

○ 연체금액 : 500천원(=일시불 연체원금 20만원+현금서비스 연체원금 30만원)

※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5. 27.에 연체금액을 1,000천원으로 금액 정정하여야 함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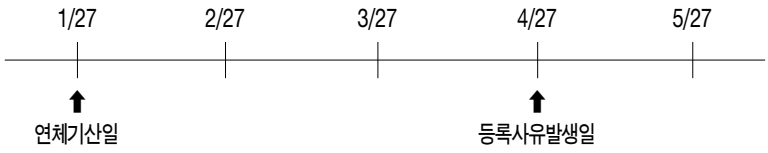

일시불 연체	200	200	200	200	200
현금서비스 연체	300	300	300	300	300
할부 연체					500
미도래할부원금 (초회청구 미발생)				3000 (등록금액에 미포함)	2500 (초회청구발생)
등록금액				500	3500
연체금액				500	1000

마. 소액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정보의 관리

1. 소액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정보의 집중

등 록 금 액		비 고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은 되나 금융기관간 교환·활용대상에서는 제외	금융기관간 교환·활용대상	관리기준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0101~0205, 0208)에 한함 - 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 제외
금융기관에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만 신용정보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관리		

2. 소액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금' 정보의 제공

- 50만원 이하인 소액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의 등록건수가 1건인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만 하며, 금융기관간 교환·활용대상에서는 제외(이하 "관리상태"라 함)
- 소액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의 등록건수를 포함하여 신용도 판단정보가 2건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 간 교환·활용대상에 포함되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이하 "등록상태"라 함)
  - 단, 대사목적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는 제공함(당일 업무마감 후 거래내역을 접속기관별로 취합하여 제공)
  - 해당 금융기관에서 등록한 관리상태의 소액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는 등록 금융기관에서 조회 시 온라인 회보 가능함
- 소액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관리의 예외
  : 다음의 경우는 등록건수가 1건이더라도 정보를 계속 금융기관에 제공(금융기관 간 교환·활용대상에 포함)
  - 관리기준에 의한 연체 등의 사유로 이미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추가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 발생내역별 연체, 대위변제·대지급의 사유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경우
- 소액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정을 할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태(관리상태 또는 등록상태)를 기준으로 처리됨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2건이 등록되어 공유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2번째 등록이 오류로 판명이 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삭제조치를 취해 1건이 되더라도 동 소액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는 계속 제공됨. 이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1건의 소액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를 삭제하고 새로이 등록하게 되면 동 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방지할 수 있음

바. 집중시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해야 함

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시 유의사항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을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가 상환, 등록사유 해소, 기간경과 등으로 삭제(해제)되는 정보와 담당자의 업무착오 등으로 등록되었다가 삭제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07. 8. 20.부터 착오로 등록하여 삭제한 경우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가 삭제된 정보를 구분·관리함
- 금융기관에서 착오 등록으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착오등록(0077) 임을 입력 하여야 함

〔2〕 '연체 등' 정보의 해제

가. 각 등록사유별 해제 기준

1.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란 해당 계좌의 모든 채무(원금,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등을 포함)를 정리하는 것(단, 이자연체의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전액 상환한 때)을 말하며, 금융기관이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 및 채권의 일부는 상환 받고 잔여채권은 포기하는 경우에도 채무를 정리한 것으로 봄

2. 채무감면, 면제, 유예 등의 경우

- 금융기관이 당해 채무에 대해 전액 면제,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일부

채무는 정리하되 잔여채무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감면 조치된 경우,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부분적으로 감면하되 잔여채무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한 경우도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에 해당되어 '연체 등'의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

3.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확정 받은 거래처의 등록 · 해제

① '연체 등' 정보의 해제 시점

- 법원에서 파산·면책결정을 확정한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면책결정일을 해제사유발생일로하여 '연체 등' 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는 일괄하여 해제함

※ '연체 등' 정보 등록거래처가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련채권에 대한 채권포기의 명확한 의사가 없다면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된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할 수 없음

②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연체 등' 정보의 등록 시점

-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 신규 취급된 신용공여를 연체한 경우는 「관리기준」에 의거 '연체 등' 정보 등록
- 파산·면책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파산·면책 확정 이후에 '연체 등' 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며, 기 등록한 '연체 등' 정보는 착오 등록임을 표시(0077)하여 삭제 처리함
- 파산·면책 결정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 발생일로 함

③ 공공정보 등록 시점

- 법원에서 파산·면책 확정자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연체 등' 정보 중 어느 하나가 등록된 거래처에 대하여 면책결정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하여 공공정보를 등록함

④ 공공정보 해제 시점

- 면책 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록·해제

① '연체 등' 정보의 해제시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재조정을 거쳐 인가결정에 대한 판결문 등이 해당금융기관에 도달한 때에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함(채무재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체 등' 정보는 해제함)
- 이때 '연체 등'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은 인가결정일로 하며, 상기 법률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법정관리 및 화의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처리함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의 채무재조정 이후의 '연체 등' 정보의 등록 시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인가결정 이후 신규 취급된 신용공여를 연체하거나 재조정된 채무액을 정리계획안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관리기준에 의거 '연체 등' 정보로 등록(채무조정 전 '연체 등' 정보 사유발생일 적용)해야 함

③ 공공정보 등록 및 해제 시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의한 공공정보의 등록시점은 재산보전처분 명령이 있는 때로 기업신용공여정보, '연체 등' 정보 중 어느 하나가 등록된 거래처에 한하여 적용함
-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법인회생절차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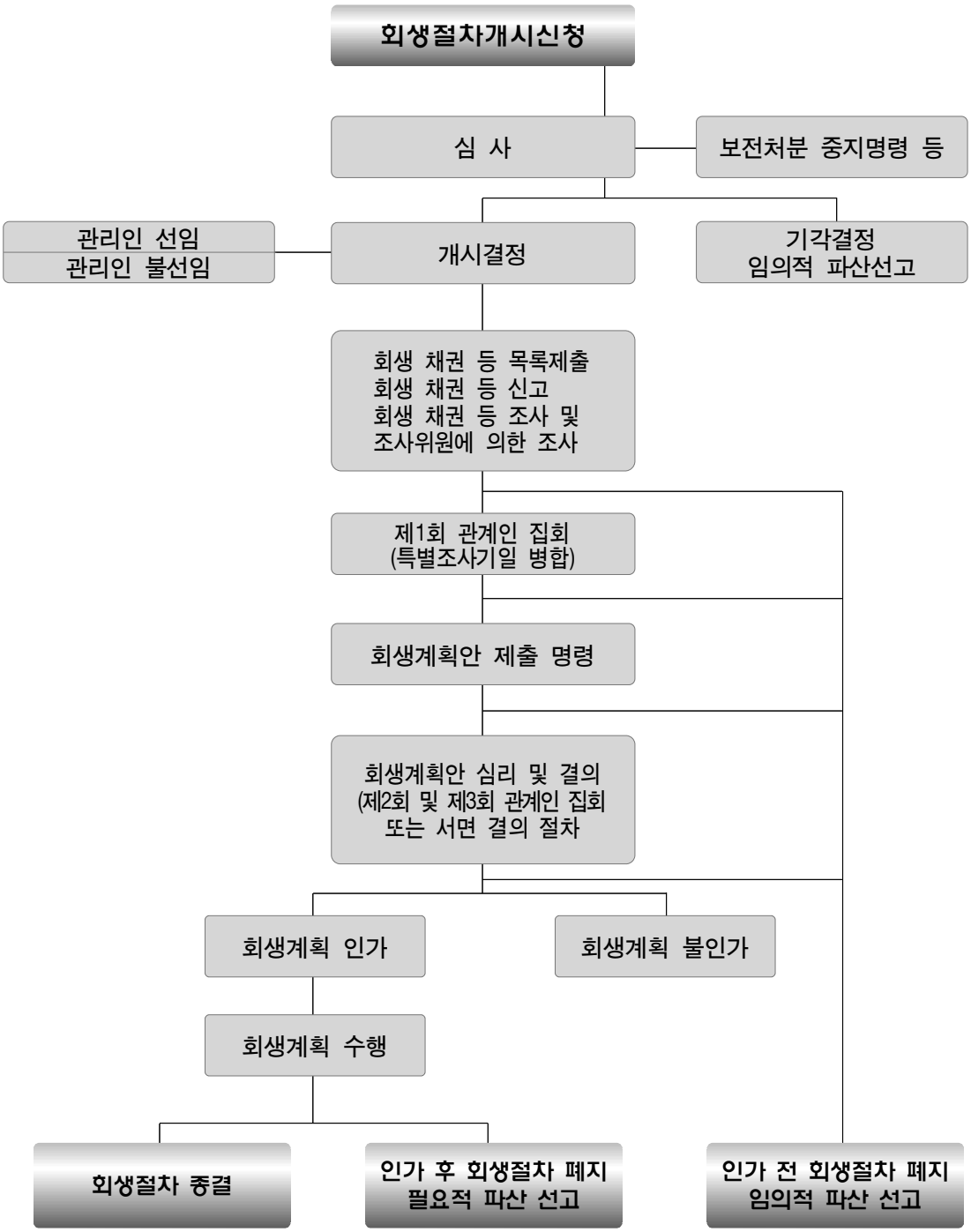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절차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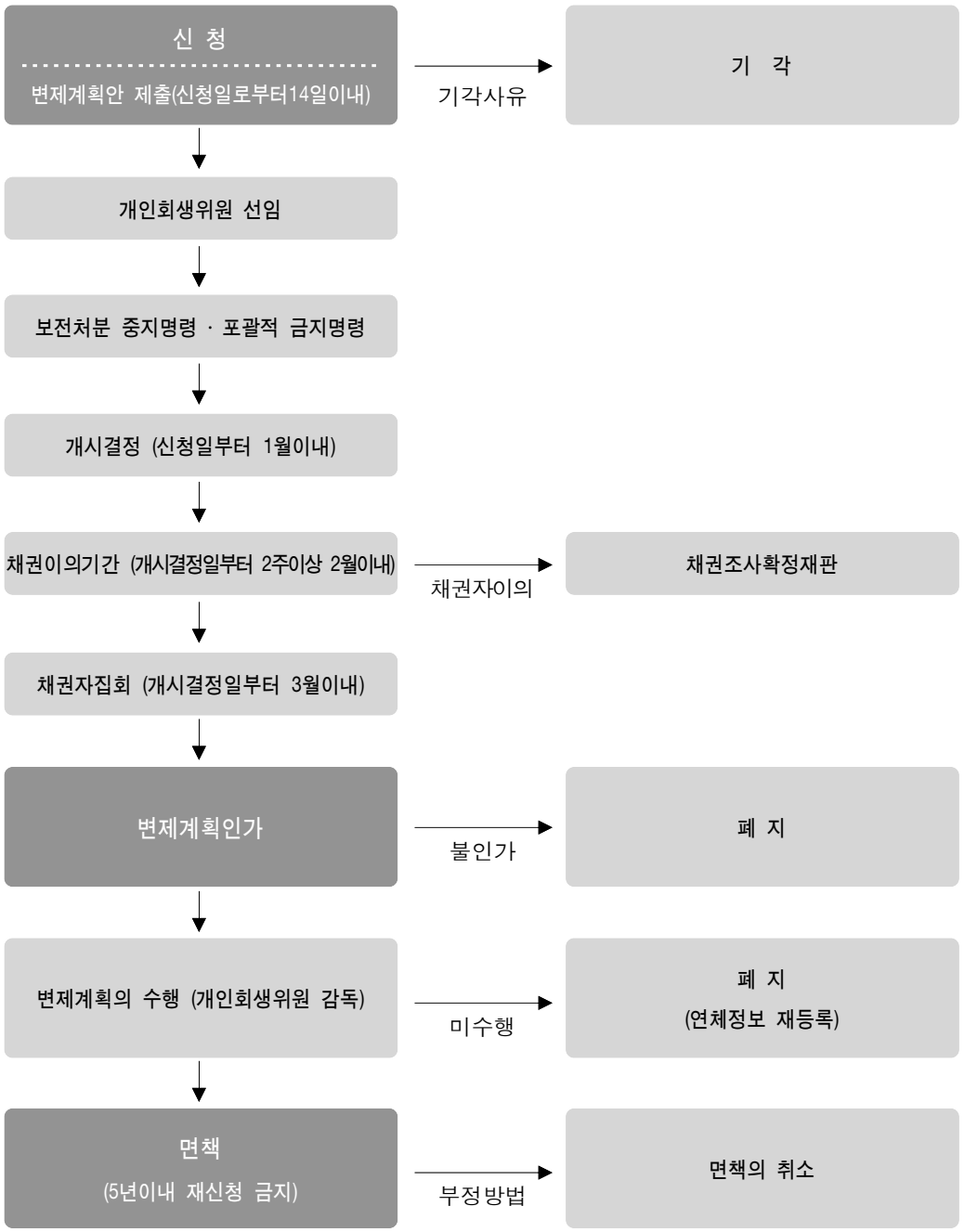

5.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의 등록·해제

① '연체 등 정보'의 해제 시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거래처에 대하여 '연체 등 정보'를 일괄 해제함(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및 신용회복지원 제외 대상 채권도 해제함(단 부도정보 및 관련인 정보는 일괄해제 대상에서 제외)

② 신용회복지원 이후의 '연체 등 정보'의 등록 시점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이후 신규 취급된 신용공여를 연체한 경우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관리기준에 의거 '연체 등 정보'로 등록해야 함
-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실효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 '연체 등 정보' 등록사유발생일로 함
- 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기관 및 신용회복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에 대하여 '연체 등 정보'를 재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 '연체 등 정보' 등록사유발생일로 한다.

③ 공공정보의 등록 시점

- 신용회복지원과 관련된 공공정보 등록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을 확정하는 때에 동 위원회에서 등록함

④ 공공정보의 해제 시점

- 확정된 신용회복 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2년이상 변제한 때 또는 신용회복지원 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연체 등 정보'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신용회복위원회에서 등록 및 해제)가 등록될 경우 공공정보를 해제함. 단. 변제유예기간 적용자 중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자는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확정된 채무를 2년 이상 변제한 때

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등록 · 해제

① '연체 등 정보'의 해제 시점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서 해제함 〔제2005-4차 신용정보협의회 결의 (2005. 6. 3.)〕

② 신용회복지원 이후의 '연체 등 정보'의 등록 시점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이후 신규 취급된 신용공여를 연체한 경우는 관리기준에 의거 '연체 등 정보'를 등록해야 함

③ 공공정보의 등록 시점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동 공사에서 공공정보를 등록해야 함
- 2년 이상 채무변제로 공공정보 해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당초 등록사유발생일로하여 공공정보를 등록해야 함

④ 공공정보의 해제 시점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또는 확정된 신용회복 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이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공공정보를 해제함

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의 등록 · 해제

① '연체 등 정보'의 해제 시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시 법원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며 기존의 '연체 등 정보'는 일괄하여 해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함

② 개인회생절차 진행 확정 이후의 '연체 등 정보' 등록 시점

- 개인회생절차 진행 이후 신규 취급된 신용공여를 연체한 경우는 관리기준에 의거 '연체 등 정보'를 등록해야 함
-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는 폐지 또는 실효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채무조정 전 '연체 등 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 함

③ 공공정보의 등록 및 해제 시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시 법원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할 때 공공정보로 등록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또는 5년이 경과한 때, 개인회생절차가 실효 또는 폐지 시에 공공정보를 해제함

8. 부도정보의 해제

① 부도정보는 부도 처리된 어음·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해제 처리함. 이때 발행은 되었지만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어음·수표 용지의 회수여부와는 무관함. 또한 해제 후 다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부도정보로 등록함

② 어음·수표회수 인정

㉮ 수사기관의 증거물 압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최종부도거래처가 부도금을 결제하였으나 부도수표·어음용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하여 당좌거래은행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물 압수확인서를 당좌거래은행에 제시하면 당해 부도수표·어음용지는 회수된 것으로 인정됨

㉯ 어음·수표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 어음·수표 최종부도거래처가 부도수표·어음금액을 변제공탁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당좌거래은행에 제시하면 당해 부도수표·어음용지가 회수된 것으로 인정됨

㉰ 공시최고와 함께 어음·수표금액을 별단예금에 입금한 경우

- 어음·수표의 분실·도난·멸실 등의 사유로 발행인이 공시최고와 함께 어음·수표금액을 당좌거래은행 별단예금에 입금하는 때에는 당해 부도어음·수표가 회수된 것으로 인정됨. 공시최고는 분실·도난·멸실된 어음·수표의 실권을 제권판결에 의해 선고하는 공시최고절차의 한 과정으로서, 공시최고의 신청은 당해 어음·수표 최종소지인이, 어음·수표금의 별단예금 예치는 어음·수표 발행인이 하는 원칙이나, 다만 발행인이 최종소지인인 경우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어음수표는 상환증권이기 때문에 어음·수표금을 결제 받을 때에는 어음·수표 실물을 발행인·지급인에게 지급제시를 해야 하는데 분실·도난·멸실 등의 사유로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할 수 없는 경우, 어음·수표 최종소지인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을 근거로 발행인에게 어음·수표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있음. 발행인이 어음·수표금을 결제하고 제권판결 정본을 넘겨받아 당좌거래은행에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수표용지가 회수된 것으로 인정됨

㈐ 최종소지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거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결제확인서를 받은 경우

- 어음·수표발행인이 부도어음·수표의 최종소지인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당좌거래은행에 제시하거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한 결제확인서를 받아 당좌거래은행에 제시하면 어음·수표용지가 회수된 것으로 인정됨

㈑ 신문 공고를 하는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가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되고 최종소지인의 사망,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전국 일간지에 2회 이상 신문 공고와 함께 어음·수표금을 당좌거래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하거나,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날까지 어음·수표소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관계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어음·수표용지가 회수된 것으로 인정됨. 신문 공고의 내용에는 어음·수표의 종류, 번호, 발행금액, 발행일, 발행인, 지급장소, 공고인의 성명, 공고의 취지, 어음·수표소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관계를 신고할 장소와 신고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신고 장소는 당좌거래은행 영업점으로 하며, 신고기간은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함

▣ 공시최고 신청 시 제출 서류

1. 공통제출서류

☞ 어음·수표의 도난·분실에 관한 소명자료

(예) 경찰관서의 도난분실신고 접수증명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 증권의 분실공고

2. 증권의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

가. 자기앞수표

- 발행은행의 미제시 또는 미지급증명서

나.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1) 지급은행의 미제시증명서

- 공시최고 신청당시 미지급이 아닌 미제시인 점을 명백히 한 것이어야 함

※ 은행에서 비치 사용하는 〈미제시 및 미지급증명서〉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기재를 말소하고 말소부분에 은행의 날인을 하여 "미제시"인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함

(2) 어음·수표의 사본 또는 발행인의 발행확인서

- 발행인이 신청하는 공시최고인 경우에는 불필요

※ 〈미제시 및 미지급증명서〉에 증명서를 발행하는 은행영업점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함

【상기 내용은 서울지방법원장이 각 은행 영업점장에게 업무협조 요청한 사항임】

9. 기간 경과 후 해제

-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의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함(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의거 재등록 금지)
- 어음부도거래정보는 기간경과로 인한 해제가 없음
  단 2001년 1월 2일 전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어음부도거래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함

10.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이 소멸되는 경우

- 상기 기관이 소멸되는 시점에 동 기관(신용정보의 처리 없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사후적인 확인절차 등에 의함)에 의해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처리하고, 기타 신용정보는 해지 처리함
- 인가 취소된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청산 또는 파산절차 완료시까지는 청산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기 등록한 신용정보를 계속 유지시키거나 새로이 발생되는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나. 집중시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해야 함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라 함은 사유발생일을 제외한 익일부터 10일까지를 말하며, 그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그 익영일로 함

다. 해제코드 경합시의 업무처리

- '연체 등 정보'의 해제는 채무자변제(관련인변제 포함)의 경우 해제코드는 "01"로, 보증인변제의 경우 해제코드는 "02", 강제회수의 경우 해제코드는 "03"으로, 감면·면제인 경우 해제코드는 "04"로, 양도의 경우 해제코드는 "05"로, 개별기관 신용회복지원인 경우 해제코드는 "06"으로, 채무자변제 및 손실처리의 경우 해제코드는 "07"로, 보증인변제 및 손실처리인 경우 해제코드는 "08"로, 강제회수 및 손실처리의 경우 해제코드는 "09"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인 경우 해제코드는 "10",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지원의 경우

해제코드는 “11”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경우 해제코드는 “12”로, 소멸시효 완성은 “13”로,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은 “14”로, 법인청산은 “15”, 기타(유예 포함)의 경우 해제코드는 “99”로 구분하여 해제처리를 함

- 채무자변제, 손실처리・보증인변제, 손실처리, 강제회수 및 손실처리 이외에 해제코드의 해당사유가 중복된 경우 상환비중 및 상위코드(“99” ⇒ “01”의 순) 우선으로 해제코드를 입력

〔3〕 ‘연체 등’ 정보의 삭제 및 기록보존기간

가. 기록보존기간

- 해제사유발생일 이후 활용・관리하는 기간으로 연체정보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이내)

나. 해제와 동시 삭제 기준

- 해제와 동시 삭제는 해제 등록 시 추가 관리기간 없이 정보가 삭제됨

1.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공휴일도 포함)이내에 발생내역별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1)
   -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02)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14)
   - 교육과학기술부(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15)
   -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3)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4)
   -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5)
   -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추심후 지급부도 포함) (0106)

-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107)
-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8)
- 만기일 경과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거래처 (0109)
-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처 (0110)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수한 부실채권 차주(0112)
- 정리금융공사가 이수한 부실채권 차주(0112)
-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0201)
-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0202)
-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거래처 (0203)
-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204)
-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단, 선적전금융은 대위변제후 1개월로 할 수 있다) (0205)
- 학자금대출 관련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0208)

2. 발생내역별 등록금액 1,000만원 이하 보유거래처

-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1)
-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02)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14)
- 교육과학기술부(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15)
-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추심후지급 부도 포함) (0106)

-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107)
-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8)
- 만기일 경과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거래처 (0109)
-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처 (0110)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0112)
- 정리금융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0113)
-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0201)
-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0202)
-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거래처 (0203)
-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204)
-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단, 선적전금융은 대위변제 후 1개월로 할 수 있다) (0205)
- 학자금대출 관련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0208)

3. 발생내역별 등록금액 500만원 이하 보유거래처
-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3)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4)
-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5)

4.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111)

5. 「신용정보관리기준」에서 정한 관련인에 해당하는 거래처(9××××)

6. 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0206)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 한 자 (0207)

다. 기간경과(7년)로 인한 해제 시의 기록보존기간

등 록 사 유	등록코드	보 존 기 간
- 연체 - 대위변제·대지급 - 부도(어음최종부도거래처 제외)	0101~0116 0201~0208 0401~0402	1년
- 관련인(어음최종부도거래처 제외)	9××××	관련 거래처의 기록보존기간을 따름

1. 기간경과(7년)로 해제된 후 차주가 실제 상환한 경우

- 해제와 동시 삭제요건(나, 다)인 경우
  기간경과(7년)로 해제된 경우에도 해제와 동시 삭제요건이면서 차주가 연체금액을 모두 정리(보증인변제, 신용회복지원 등에 의한 해제 모두 포함)하면 상환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됨. 단,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해제사유 발생일을 실제 상환일로 정정처리하여야 함
- 해제와 동시 삭제요건이 아닌 경우
  실제 상환한 날로 해제사유 발생일을 정정하게 되면 그 후부터 1년간 기록이 보존되므로 7년 기간경과 후 해제된 해제사유 발생일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래의 해제사유 발생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제 사유만 정정처리 함

2. 어음최종부도거래처의 경우

- 기간경과(7년) 해제를 적용을 받지 않음. 단 2001. 1. 2. 전에 발생한 어음최종부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경과 후 해제됨

〔4〕 연체기산일, 등록(해제)사유발생일, 제재금 유예가 되는 등록(해제)기한 등이 공휴일인 경우

가. 연체기산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 '연체 등' 정보 등록 시 이자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영업일)은 연체일수 계산 시 불산입하며, 이자납입일의 익일(연체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연체일수 계산 시 산입

> **예 1** **이자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
> : 실제 이자납입일이 공휴일의 익영업일이 되므로 실제 이자납입일의 익일부터 연체기산

> **예 2** **이자납입일이 금요일인 경우**
>
> : 이자납입일의 익일이 토요일이라도 연체일수 계산 시 산입. 따라서 토요일부터 연체기산

나. 등록(해제)사유발생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연체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영업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함

  (예) 등록사유발생일이 일요일인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은 월요일(영업일)로 연장됨

다. 제재금 유예가 되는 등록(해제)기한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 '연체 등' 정보의 등록사유 또는 해제사유 발생 시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입력, 파일전송 등 전산매체 또는 (서식 3)(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에 의거 집중하여야 함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라 함은 사유발생일을 제외한 익일부터 10일까지를 말하며, 그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그 익영업일로 함

예 **기간계산 :**

※ 11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13일이 등록가능 최종일이 됨

【2】 금융질서문란정보

〔1〕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범위

-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
- 가계당좌불량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 수출보험사고
- 신용카드관련 부당행위자
- 신용회복지원관련 부당행위자
- 상기 거래처의 관련인

〔2〕 관리원칙

-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차주별로 관리함
- 금융질서문란정보는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해제기록이 보존됨

〔3〕 기타 사항은 '연체 등' 정보의 관리방법을 준용함

Ⅳ. 공공정보

【1】 공공정보의 범위

〔1〕 국세체납정보

〔2〕 지방세체납정보

〔3〕 과태료체납정보

〔4〕 관세체납정보

〔5〕 법원의 채무불이행자정보

〔6〕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정보

〔7〕 신용회복지원정보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 기업체 및 기업체의 관련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자
- 파산·면책결정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자

〔8〕 국외이주신고정보

〔9〕 조달청의 정보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10〕 사망자 정보

【2】 관리원칙

〔1〕 공공정보는 차주별로 관리함

〔2〕 공공정보는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됨

〔3〕 해제사유

- 해당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4〕 기간 경과 후 해제

- 각종 체납정보 및 법원의 채무불이행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동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함
- 신용회복지원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동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함

공공정보 관리기준

구 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자	개인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법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일반회생 포함)
등록코드	1101	1201	1301	1003
등록기관 및 등록일자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확정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법원의 통보시) - 면책결정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법원의 통보시) - 변제계획인가일	해당금융기관 - 재산보전처분일
등록기준	- 관련 정보(연체등 정보)가 기 등록된 경우에 적용	- 관련 정보(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연체등 정보)가 기 등록된 경우에 적용	- 관련 정보(연체등 정보)가 기 등록된 경우에 적용	- 관련 정보(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연체등 정보)가 기 등록된 경우에 적용
연체등정보 해제일 및 기타	- 신용회복지원확정일 - 연체 등 정보 해제 - 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기관 및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 등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재등록	- 면책결정일 - 연체등 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일괄 해제(지)	- 변제계획인가일 - 연체 등 정보 해제 -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 등 정보는 해당금융기관에서 재등록	- 법원의 인가결정일 -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 정보 해제
해제 사유	- 2년이상 변제 또는 변제 완료 - 신용회복지원효력을 상실하여 연체등정보 또는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시	- 면책 채권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정리절차 종결 - 회생조건 이행이 완료된 시점 (법원의 보고 의무 면제시 포함)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체등정보 재등록	- 신용회복지원 실효 시 - 신규 취급 대출 등 연체 시	- 면책 취소 시 - 신규 취급 대출 등 연체 시	- 개인회생절차 취소 시 - 3개월 연체 시 - 신규 취급 대출 등 연체 시	- 신규 취급 대출 연체 시

【3】 공공정보 집중 관련 법률

〔1〕 국세 체납정보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4〕

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 2013.1.1]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으로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0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시행일 : 2013.1.1]

〔2〕 **지방세 체납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과태료 체납정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관세 체납정보 :** 관세법제44조(결손처분)

① ~ ② 생략

③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료나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5〕 **채무불이행자 :**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① 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산재 · 고용보험료 체납정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 ③ (생략)

〔7〕 신용회복지원정보

가. 파산면책정보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나. 개인회생정보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 법 제624조 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 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 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3.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Ⅴ. 기업의 신용능력정보

【1】 신용능력정보의 범위

〔1〕 일반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 일반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만 집중
  ※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업신용거래정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연결

〔2〕 재무정보

-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재무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3〕 비재무정보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 비재무정보 중 '상장유무'는 아래와 같이 표시(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산프로그램 수정사항임)
  - 코스닥등록업체 : 코스닥등록
  - 거래소상장업체 : 거래소상장
  - 제3시장 거래업체 : 기타

【2】 집중대상기업 및 집중시기

〔1〕 대상기업 : 외부감사 실시 기업

-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업(자산규모 70억 이상)으로서 외부감사를 실시한 기업
- 코스닥 등록, 무보증사채 발행,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 기타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집중대상에서 제외

〔2〕 집중시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등록사유발생일 : 신용조사완료일(신용평점확정일) 및 매분기말

【3】 신용능력정보의 제공·이용기관

〔1〕 제공기관 : 국내은행

〔2〕 이용기관 : 국내은행(정보를 집중한 금융기관 간에만 활용할 수 있음)

【4】 집중 및 제공방법

- 신용능력정보 관리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한 Web기반으로 구축
- 정보 집중 시에는 기존의 신용정보온라인시스템의 Host FTP방식을 이용하며, 정보활용은 인터넷을 이용한 화면을 통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

Ⅵ. 기 타

【1】 신용정보 제공 · 이용기관간 채권 양·수도시의 신용정보 관리

〔1〕 관리원칙

가.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인 상태에서 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함

나. 신용정보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관련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 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은 대출정보를 해지처리하고,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관련채권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정보로 등록할 수 있음. 이때 등록사유발생일은 원채권의 등록사유발생일을 그대로 유지함
- 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은 '연체 등' 정보를 해제처리하고,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관련채권의 등록사유발생일을 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의 등록사유발생일로 유지해야 함. 즉, 양수일이 등록사유발생일이 아니고 양도 금융기관의 당초 등록사유발생일이 양수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는 신용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이 됨
- 양도한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은 관련 신용정보를 채권 양도 즉시 해지 및 해제하여야 함. 단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관련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
- 양도한 채권이 환매되는 경우에는 당초 등록사유발생일로 해제한 신용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다. 양수한 채권을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의 채권을 양수한 경우
-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이 되기 전에 발생한 동 법인의 채권

-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의 금융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채권. 단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관련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리라 함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지(해제) 및 정정 등 신용정보 집중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미함

예 1 **금융기관이 파이낸스사 소유의 부실채권을 할인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대출채권 연체자에 대한 '연체 등' 정보의 등록여부?**

⇒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제공 · 이용기관이 아닌 기관(파이낸스사)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없음.

예 2 **금융기관이 론스타(Lone Star)와 공동으로 부실자산처리회사(SPC)와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 매각채권의 '연체 등'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규약 제25조에 의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자산관리자로서 매각채권관련 신용정보를 계속 관리할 수 있음.

예 3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렌탈회사(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기관)의 채권을 양수관리하는 경우 동 채권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여부**

⇒ 여신전문회사가 신용정보제공 · 이용기관이 아닌 렌탈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없음.

【2】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채권에 대한 처리 방법

- 단순한 담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체 등' 정보로 등록할 수 없음

【3】 법인(신용정보주체의 경우)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청산의 경우 신용정보 처리 방법

1. 법인 합병의 경우

- '연체 등 정보'로 등록된 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일방이 '연체 등 정보' 등록 거래처인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등기 시점에 피합병법인의 당초 '연체 등 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을 합병법인의 등록사유발생일로 보아 '연체 등 정보'를 등록함

2. 법인 분할의 경우

- '연체 등 정보'로 등록된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된 법인 중 연체여신을 보유한 법인을 '연체 등 정보'의 거래처로 등록함

3. 법인 소멸의 경우

- 별도의 처리절차 없음

【4】 대출정보와 연체정보와의 관계

〔1〕 대출정보가 해지되면 관련 연체정보, 대지급·대위변제정보는 해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확정, 기간경과에 따른 연체정보, 대지급·대위변제정보의 해제시에는 관련 대출정보를 해지처리하지 않음

〔3〕 면책, 소멸시효경과시에는 대출정보 해지함(보증 및 현금서비스 포함)

【5】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제도

〔1〕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4. 7. 30.부터 시행(2004. 4. 30.이후 자료)

〔2〕 통보의무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임

〔3〕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보의무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한 정보를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위반시 과태료)

〔4〕 통보내용은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정보제공일자 및 주요내용 등이 포함

〔5〕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 제공사실"은 금융기관에서 오조작등으로 인한 조회 기록도 포함되며 삭제가 불가하니 조회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단 "본인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 받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본인정보조회시스템(www.credit4u.co.kr)을 로그인 후 삭제할 수 있음.

【6】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확인 제도

〔1〕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조회동의서를 받은 후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있는지 확인(2010. 3부터 시행)

〔2〕 확인대상 추출기준은 약정체결 유무와 관계없이 조회기록이 있는 경우 무작위로 조회대상자 추출

- 기관별 조회동의서 확인건수는 월조회 건수가 1만건 이하일 때 50건, 1만건 초과시 100건 등으로 차등

〔3〕 주요 점검 대상 : 날짜, 동의서 양식, 조회목적코드 등

- 날짜 : 동의서를 먼저 징구하고 조회를 하고 있는지 여부
- 양식 : 동의 받은 시점의 동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조회 목적코드 : 동의 받은 목적에 맞게 조회목적코드를 입력하고 있는지 여부

Ⅶ. 금융기관 유의사항

【1】 신용정보의 등록·해제·정정·삭제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정보의 등록·해제·정정·삭제 등의 권한 및 의무는 해당 금융기관에 있으며, 정정·삭제 등의 경우 입증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업무 착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등록된 신용정보의 정정, 삭제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 또는 영업점에서 직접 전산조작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조치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업무착오로 인하여 등록된 신용정보의 관련정보(연체금액, 해제사유발생일자 등)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함
- 대출금 등의 연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채권확인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해당 대출금 등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신용정보의 등록을 보류하고, 확정판결의 내용이 채무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등록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며, 기타 사실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신용정보의 등록을 보류하여야 함

【2】 고객의 본인 신용정보조회 요구시 주의사항

- 전화·컴퓨터통신 등 이용시 : 신용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유효기간 또는 신용카드비밀번호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단순히 전화상의 통화 등만으로는 본임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회를 거절하여야 함
- 창구방문시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받아 조회 응대

【3】 신용정보의 전산처리기간 및 동 정보 공유에 소요되는 기간

집 중 방 식		연체 등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정보공유시 소요기간
		등 록	해 제	삭 제	
온라인 시스템 주1)	Real Time방식	실시간	좌 동	좌 동	좌 동
	FTP방식	1일 소요 주2)	〃	〃	〃
fax 또는 서면 주3)		2일 소요 (전일 접수분을 당일 전산처리 의뢰)	〃	해제일로부터 1일 소요	-

주1) web방식 포함

2) 당일 24시까지의 접수분에 한하여 익일 6시까지 전산처리하여 오전 8시까지 금융기관에 전송 (금융기관에 따라서 update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

3) fax 또는 서면에 의한 집중방식은 전산처리 불가능시 예외적으로 적용

신용정보업무 관련 사례별 질의·응답

사례연구 1 공공정보의 조회방법

Q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면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할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집중하고,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로 집중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중 하나로만 조회해도 동 법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일부 공공정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조회시 해당법인의 신용정보가 누락되어 조회되는 바, 누락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법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A 국세체납 등의 공공정보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에 의거 집중되고 있으며 국세청의 국세체납정보는 법인등록번호로 등록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해당법인의 공공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정확한 법인의 공공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동시에 조회해야 함

사례연구 2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조회

Q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순수개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로 받은 신용공여액도 알 수 있는지?

A 상기 차주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개인대출정보를 조회하게 되면 순수개인으로서 받은 채무액을 알 수 있으며,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조회하면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채무액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로서 신용공여를 받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음

사례연구 3 명의차주와 실제차주 중 등록대상

Q "갑" 주식회사가 개인인 제3자 명의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사용하였고 동사 부도 후 해당 대출금이 연체상태이며 제3자인 명의차주는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누구를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A "갑" 주식회사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질서문란정보에 해당되며, "갑" 주식회사가 제3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다는 것(실제차주)을 구두약정 등을 통하여 취급했다면 명의차주가 아닌 실제차주인 "갑" 주식회사를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하여야 함

사례연구 4 동업자 또는 경영실권자 등록대상여부

Q 개인기업의 대표자 A가 사업자등록증상 단독 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신용보증서 및 대출약정도 대표자 A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신용조사 시 조사결과 실질적인 동업자 또는 경영실권자(동업계약서 및 기타증빙에 의한 확인 가능)가 있는 경우 동업자 또는 경영실권자도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해야 하는지?

A 사업자등록증상 단독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업계약서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동업자 또는 경영실권자에게 사업체 운영을 맡겼다 하더라도 '연체 등' 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며, 동업자 또는 경영실권자는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하지 아니함

사례연구 5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등록 방법

Q "갑"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하고자 법인등기부 등본을 새로 받아본 결과 법인등록번호는 종전과 같으나 법인 상호와 사업장 주소가 바뀌어 "을"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변경된 경우, "갑" 주식회사로의 '연체 등' 정보 등록은 의미가 없게 되어 변경된 새로운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A 법인에 대한 '연체 등' 정보 등록 시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번호로 하고 법인등록번호도 반드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체 등' 정보 주체가 같은 법인(법인등록번호 동일)이라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연체 등' 정보 등록대상이 되며 변경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함

사례연구 6 신용카드 가족회원 등록 여부

Q 신용카드 가족회원이 이용한 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는 경우 신용카드 가족회원을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해야 하는지?

A 규약상의 신용정보주체인 본인회원만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연구 7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 처리 방법

Q 신용카드 회원이 본인의 카드를 분실하고 카드사에 분실신고하기 전에 제3자가 카드를 주워 부정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회원에 대하여

가. 부정사용대금 조사 의뢰중인 경우 '연체 등' 정보의 등록시점은?

나. 부정사용확인에 따라 보험금 최고 한도액으로 일부 결제된 후 잔액에 대해 소송중일 경우 등록시점은?

다. 부정사용대금 최초 연체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연체회원을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가 가능한지?

A 가. 관련기관이 부정사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시점임

나. 부정사용이 확인된 카드대금은 카드회원이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다. 카드대금이 제3자 부정사용이라고 금융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체 등' 정보 등록내용은 삭제함

사례연구 8 가계당좌예금 공동계좌인 경우 등록대상

Q 가계당좌예금 공동계좌(예금주 본인과 대리인으로 지정된 배우자가 공동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계좌)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발행된 가계수표가 부도발생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규약상 부도거래처로 (1)배우자 (2)예금주 본인 (3)배우자 및 예금주 본인 중 누구를 등록하여야 하는지?

A 배우자 명의로 발행된 가계수표의 부도 발생 시에는 배우자는 물론 예금주 본인도 포함하여 부도거래처로 등록함

사례연구 9 당좌거래 명의도용 시 삭제 여부

Q A가 당좌예금 개설 신청 시 수표발행용 인감 및 명판을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당좌개설을 보류한 상태에서 B가 인감과 명판을 도용 제출하여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은행도 A에게 확인하지 않고 어음·수표용지를 지급함으로써 B가 A명의로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발생하여 A가 부도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A의 부도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지?

가계당좌거래처인 A의 동생 B가 A의 사용인감을 유사인장으로 위조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부도 발생하여 당좌명의인인 A가 형사고발되었으나 검찰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B가 유가증권 위조, 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혐의처분증명서로써 등록된 A의 부도정보 해제가 가능한지?

A 제3자의 명의도용, 위조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어음·수표부도가 발생하여 발행명의인이 부당하게 부도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취소" 승인이 있거나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있는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부도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사례연구 10 법인 관련인 등록시점 및 판단기준일자

Q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연체정보로 등록되는 "갑" 법인의 관련인 등록시점 및 판단기준일자?

A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시점에 "갑" 법인을 연체정보로 등록 시 "갑" 법인의 관련인도 등록하는 것이 원칙으로 등록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인 등록대상은 연체, 부도 등으로 해당 기업체의 '연체 등' 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또한 "갑" 법인의 관련채권이 특수채권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 '연체 등' 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로 됨(관련인 포함)

사례연구 11 법인부도에 따른 관련인 등록대상

Q 부도발생 당시 대표자 및 주주명부가 변경되어 있지 않아 보유중인 자료에 의거 A를 관련인으로 등록했는데 A는 주식과 함께 회사를 B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관련인 등록은 부당하다며 검찰청이 발행한 혐의 없음으로 기재된 부도수표 "피의사건 결과통지서"를 증거서류로 제시하면서 삭제를 요청하는데 그 타당성 여부?

A 관련인 등록의 기준시점은 해당 거래처의 '연체 등' 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부도로 인한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일 시점의 관련인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거래정지처분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는 관련인 등록대상이 아님

사례연구 12 형식적 주주의 관련인 등록대상여부

Q A는 "갑"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동서로서 동사의 주주명부상에는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식대금의 납입, 주주총회의 참석, 의결권의 행사 등의 사실이 전혀 없고, 동사의 경영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은 형식적인 주주로 판명되었는데 '연체 등' 정보 거래처 관련인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A 규약 제2조 제8호의 "과점주주"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해당자를 말하는 바, 주금의 납입,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의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주주의 지위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권리행사 여부는 각 금융기관에서 자체판단토록 함

사례연구 13 상호 및 무한책임사원 변경 시 등록대상

Q 합자회사 "갑" (대표사원 무한책임사원 A)은 당좌예금을 개설하여 당좌거래를 하던 중 '08. 1. 30 부도 발생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으로 "갑"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07. 12. 31 상호(합자회사 "을")와 무한책임사원(B)이 변경 등기되었는바, 기존의 당좌거래처인 합자회사 "갑"을 부도거래처로 등록하고 무한책임사원 A를 관련인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합자회사 "을"을 부도거래처로 등록하고 B를 관련인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A 1. 당좌거래 중인 법인(합자회사)이 부도발생당시 상호와 출자자(무한책임사원), 사업자등록번호가 개설당시와 다르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법인이기 때문에 "을"을 부도거래처로 등록해야 함

2. 어음·수표부도로 인한 부도거래처의 관련인은 부도정보 등록사유 발생시점(거래정지처분일)에서의 무한책임사원(B) 관련인으로 등록하는 것임

사례연구 14 오류 등록한 법인관련인에 대한 삭제 증빙자료

Q '연체 등' 정보 거래처의 관련인으로 기 등록한 자 중 등록시점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한 "주식양도계약서"에 의거 관련인 등록을 삭제할 수 있는지?

A 등록사유발생일 이전에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 수 없어 착오 등록된 관련인을 삭제해야 할 경우 주식양도사실의 확인은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 〔주식매매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주식양도사실의 확인은 주식매매사실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일자가 관계법인의 등록사유발생일보다 빨라야 객관성이 부여됨),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관련인 등록사유 발생 전) 및 증권거래세납부영수증 등〕 이어야 함. 이때 착오 등록된 관련인을 삭제할 경우 착오등록(0077)임을 표시하여야 함

사례연구 15 법인관련인의 주식양도사실 인정여부

Q '연체 등' 정보 등록사유발생일 이전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공증 미필),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등록사유발생일 이후에 납부한 증권거래세납부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이를 근거로 관련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지?

A '연체 등' 정보 거래처 관련인으로 등록된 자가 동 거래처의 '연체 등' 정보 등록사유발생일 이전에 본인의 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인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주식양도사실의 확인은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 (주식매매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주식양도사실의 확인은 주식매매사실에 대한 공정증서 공증일자가 관계법인의 등록사유발생일보다 빨라야 객관성이 부여됨),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관련인 등록사유 발생전) 및 증권거래세납부영수증 등) 에 의하여야 함

사례연구 16 소송제기 시 등록보류여부

Q 연체대출금 보유로 인하여 연체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채무자가 해당대출금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법률이 정한 공탁을 한 경우 등록사유 발생시점에서 연체정보를 등록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판결 시까지 연체정보 등록을 보류하고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인지?

A 채무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 시까지 연체정보의 등록을 보류하고, 확정판결의 내용이 채무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 최종확정판결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등록하는 것임

사례연구 17 본인소유 담보주택 양도에 따른 채무인계 미필 시 등록기준

Q 본인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계자금대출을 받은 거래처가 담보부동산을 양도하고 은행에 채무인계절차(채무자 명의 변경)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연함으로써 매도인의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이의 해제가 가능한지?

A 본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가계자금대출 포함) 거래처가 담보부동산 양도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보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변동 확인과 매매계약서에 대출금을 매수인이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양도되었음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연체를 발생시킴으로써 등록된 매도인의 연체정보는 삭제 가능함

사례연구 18 건설회사가 대납키로 한 대출금 이자 미납 시 등록기준

Q 1) 건설업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자에게 실행된 대출금(이주비 대출)으로서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출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연체정보 등록여부?

2) 상기 대상자가 연체정보 등록대상인 경우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권을 제3자앞 매매하였으나 채무인계절차 미필인 매도인의 연체정보 등록여부?

A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는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분양계약자에게 없는 경우 연체정보의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그런데 분양계약자가 만기경과 시 대출원금을 연체한 경우라면 분양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2) 매도인이 채무인계절차를 미필하였으나 분양계약권 매매에 의한 경우 분양계약권은 채권에 불과할 뿐 부동산이 아니며 실행된 대출이 신용대출이므로 동매도인에 대해서 본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에 있어서의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례연구 19 미수이자 납입 유예 시 해제사유 해당 여부

Q 연체대출금 보유거래처로 등록된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환취급으로 연체대출원금을 상환 받고 기 발생된 미수이자를 5년간 분할 납입토록 유예한 경우 '연체 등' 정보의 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A 연체대출금 보유거래처에 대해 대환취급으로 연체대출원금을 상환 받고 미수연체이자는 분할납입토록 유예하여 기존의 연체대출금을 정상화시킨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모든 채무(원금,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등을 포함)를 정리(완제)한 것으로 보아 해제사유인 "발생내역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로 볼 수 있음

사례연구 20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시 해제 여부

Q "갑" 주식회사(과점주주 A)가 무역금융이 연체되어 3개월 이상 경과됨에 따라 '연체등' 정보로 등록된 이후 동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B가 4회에 걸쳐 대위변제하여 전액 상환하고 A에 대한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지 말도록 요청해 온 바, A에 대한 관련인 등록을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해제해야 하는지?

A A에 대한 관련인 등록은 과점주주요건 확인시점에서 등록하면 되며, 연대보증인 등 제3자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인 정보의 해제사유(보증인 변제 02)에 해당함

사례연구 21 기존 연체대출금 정리 시 해제 여부

Q 신규대출을 취급하여 연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정상적으로 거래 중인 때에는 '연체 등' 정보의 해제가 가능한지?

A 신규대출을 취급하여 연체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에 해당되므로 해제 가능함

사례연구 22 일부채권(손해금) 포기 시 해제사유 해당 여부

Q 신용보증대지급금 보유거래처에 대한 해제사유가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라고 되어 있는 바, 신용보증대지급급 보유자가 손해금의 일부를 면제받고 잔여채무를 전액 정리한 경우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 손해금이란 법적으로는 지연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출금 이자와는 다르나, 약정만기일이 경과된 연체대출금에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과 유사한 성격으로 판단됨

A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란 신용보증대지급급 보유자가 "대지급금과 그와 관련된 부대채무 일체를 납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동기금의 특성상 은행의 여신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의 개념과는 다른 손해금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잔여채무(대지급금

및 비면제 손해금)를 전액 납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례연구 23 일부채권(손해금) 포기 시 해제사유 해당 여부

Q 연체대출금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후 원금 또는 원금과 미수이자 중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포기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 "해당 연체금액을 정리한 때"로 해석하여 동 정보의 해제가 가능한지?(포기하기로 합의된 채권은 더 이상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함)

A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상 해제사유는 해당 채권을 보전한 때를 말하는 바, 금융기관에서 일부(일정금액) 회수 후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제사유로 인정됨

사례연구 24 일부채무 면제 시 해제사유 해당 여부

Q 금융기관이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채권 중에서 구상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고 시효완성된 편입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대위변제금의 일부만 회수하고 채무면제할 경우 해제할 수 있는지?

A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해당 금융기관이 채무자와 협의하여 대위변제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여채무 면제(포기)결정을 하는 경우 모두 해제사유인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에 해당함

사례연구 25 가계수표 허위 분실신고 시 처리 방법

Q 가.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제권판결을 받은 날짜와 선의의 최종소지인에게 결제를 하고 실물을 회수하여 은행에 제출한 날짜가 다른 가계수표 부도거래처의 해제사유 발생시점은?

나. 가계수표부도거래처가 부도수표금을 결제 후 부도처리된 수표용지를 회수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였으나 미발행 수표용지와 기발행 미제시수표가 있을 경우가계수표 부도거래처의 해제가 가능한지?

다. 선의의 소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수표 분실신고를 하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거래처를 금융거래질서문란정보로 등록 가능한지?

A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에 의거 어음·수표부도거래처는 부도어음·수표를 결제한 때 해제사유가 발생하며, 동규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어음·수표금 결제여부를 확인하고 해제처리하면 됨. 한편, 동규약 제9조의 회수인정규정은 부도처리된 어음·수표금이 결제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만 결제된 어음·수표용지 회수가 불가능한 때 어음·수표용지회수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인정여부는 부도어음·수표금 결제여부를 전제로 금융기관(영업점)이 판단할 사항임

나. 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전부를 결제했을 때에는 미사용 어음·수표용지 및 기발행 미제시 어음·수표가 존재하더라도 해제사유가 발생되며, 해제 후 미제시 어음·수표가 추가로 부도처리될 경우 해당 거래처를 다시 가계수표 부도거래처로 등록하여야 함

다. 정상적인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금융기관(영업점)이 해당 거래처에 대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음

사례연구 26 공시최고중의 회수 인정

Q 가. 부도거래처가 부도발생한 어음·수표금액은 전부 결제하여 회수하였는데 부도정보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미제시 어음·수표 및 미발행 용지도 회수하여야 하는지?

나. 공시최고중에 있으나 어음·수표금액을 별단예금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도 어음·수표용지의 회수로 인정되는지?

A 가. 부도거래처의 해제사유는 부도발생한 어음·수표금액을 전부 결제한 때 발생하며, 결제확인을 위하여 부도어음·수표용지를 회수(미제시 어음·수표 및 미발행용지는 제외)토록 함

나. 공시최고후 어음·수표용지 회수인정은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와 해당 어음·수표금액을 별단예금에 예치한 경우에 가능함

사례연구 27 신문공고 시 회수인정 기준

Q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다수의 미회수 부도어음·수표는 있으나 규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증자료 등의 제출이 없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문공고를 하면 부도어음·수표용지 회수로 인정해야 하는지?

나. 부득이한 사유의 타당성 인정 기준은?

A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 제6호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부도거래처가 최종소지인의 사망, 행방불명, 주민등록 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문공고를 하면 부도어음·수표용지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부도거래처의 부도어음·수표금의 적극적인 변제의무 행위를 요하는 것이므로 부도거래처가 적극적인 변제의무행위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문에 공고한 경우에는 부도어음·수표용지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나. 부득이한 사유의 타당성 인정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사례연구 28 신문공고 시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

Q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어음 및 수표용지의 회수인정) 제1항 제6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최종소지인의 실명확인 및 주소 추적이 불가능하여 사망,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사망확인서, 주민등록말소확인서 등)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증빙자료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지?

A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과 같이 최종소지인의 소재를 추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의 정황은 해당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것임

사례연구 29 신문공고 시 신고장소의 효력

Q 『신용정보관리규약』 9조 제2항에 의한 신문공고시 어음·수표 소지인이 권리관계를 신고하여야 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부도거래처가 신고장소를 지급지 은행으로 하지 않고 공고인의 주소로 하여 신문공고한 경우에도 유효한지?

A 『신용정보관리규약』 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권리관계를 신고하여야 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지급지 은행 영업점과 같이 객관적인 장소가 타당하며, 신고장소를 공고인의 주소로 신문공고한 경우 어음·수표 소지인의 권리관계 신고여부의 확인은 해당 은행에서 판단함

사례연구 30 신문공고 시 전국 일간지의 범위

Q 『신용정보관리규약』 9조 제2항의 규정에는 "전국 일간지에 2회 이상"이라는 문구가 있는 바, (주)전남매일신문(배포지역 : 광주, 전남, 서울, 부산)에 공고해도 '연체 등 정보' 해제가 가능한지? 전국일간지의 범위는?

A 한국언론연구원 발간 매스컴대사전에는 "전국지"를 "전국을 그 배포대상지역으로 하는 신문. 주로 일간신문을 말한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발행하는 중앙지를 일반적으로 전국지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일부지방을 배포지역으로 발행하는 신문은 전국일간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게재된 공고는 제9조 제2항의 절차로는 적절치 않음

사례연구 31 금융업 등록말소와 관련된 신용정보 관리절차

Q 금융기관의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동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A 금융기관이 등록말소되어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동 금융기관은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에서 제외되므로 동 금융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 처리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기록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며, 기타의 신용정보는 해지처리 한다.

사례연구 32 연체정보의 해제와 동시에 삭제 여부

Q 신용카드연체정보가 등록(등록사유발생일 : 2004. 12. 31., 등록금액 : 385만원)된 개인이 채권금융기관에 일부 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를 받은 경우 해제 여부는? 이때 해제사유발생일이 2005. 2. 28.인 경우 등록금액에 상관없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지 여부?

A 해당 금융기관이 일부 금액을 상환 받고 나머지 금액을 면제해 준 경우에도 해당 채무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보아 동 신용카드연체정보를 해제 처리함. 또한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록금액에 상관없이 해제와 동시에 삭제조치가 됨

사례연구 33 기간경과 해제된 후 기록관리

Q 1. 개인의 연체정보가 기간경과로 인하여 해제된 이후 동 개인이 금융기관에 실제 연체된 금액(등록코드 0101, 등록금액 450만원)을 모두 상환한 경우 동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기록보존기간은?

2. 상기 개인의 연체정보 등록코드가 0104, 등록금액이 550만원인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기록보존기간은?

A 1. 해당 금융기관은 동 해제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을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날로 정정처리하며, 이때 해제정보는 등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록이 삭제가 됨

2. 해당 금융기관은 해제사유발생일을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날로 정정처리하여도 등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제정보는 삭제가 되지 않고 기간경과로 인한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해제기록이 보존됨

사례연구 34 해외투자자에게 부실채권 매각 시 신용정보 관리주체

Q 금융기관이 부실여신을 해외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해외투자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동 부실채권의 매수와 동시에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였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당행이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의 자산관리회사(AMC)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맺어 매수한 동 유동화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신용정보관리주체는?

A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자산관리자(자산보유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함. 따라서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해외투자자가 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한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양도한 경우 포함) 동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자산보유자로서 '연체 등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 그러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보유자가 아닌 별도의 자산관리회사(AMC)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자산관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 제공기관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실채권 매각즉시 관련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여야 함

사례연구 35 금융기관이 인가 취소되어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의 신용정보 관리 범위

Q 금융기관이 인가 취소되어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동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지?

A 인가 취소된 금융기관일지라도 청산 또는 파산절차 완료시까지 청산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기 등록한 신용정보를 계속 유지시키거나 새로이 발생되는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신용정보관련 법령·규정 등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73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67
- 국세기본법·시행령 신용정보 관련사항 3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나. 기업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槪況),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5.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재판,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보증재단 및 그 중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2. "신용평가업무"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	회·연합회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나.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비슷한 행위		
		제2조 삭제 〈2011.8.18〉
제3조(신용정보업의 육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제3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는 해당 업(業)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발생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에 딸린 업무 가. 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한 컨설팅 사업 및 신용정보 상담업무 나. 신용정보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2.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신용조사업(가목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제3호의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가.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업무 나.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 제공 및 구축 관련 자문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신용평가업에 딸린 업무 가.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8.17〉 1. 정관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적은 서류 3. 재무제표 4.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입·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8〉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용정보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0.4.5〉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6.28, 2010.11.15〉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해당하는 자 및 법인이 아닌 자는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라 한다)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자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나. 출자금융기관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허가의 요건)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1. 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공인회계사 5명 및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그에 상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명 이상 및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4.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5.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출자자 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④ 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는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신용정보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상호 등 정관의 변경 ②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3.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 체계의 변경,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 미만 보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1. 신용조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채권추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용조회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 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2. 신용평가회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주요출자자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半旗)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2010.11.2, 2011.8.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 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수, 처분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항에 따른 처분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양수·분할·합병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나. 사업의 양수·분할·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 다. 사업의 양수·분할·합병에 따른 신용정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④ 신용정보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 사유 등을 적은 휴·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겸업)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1.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加工)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2.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겸업)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겸업신고 등) 법 제11조에 따라 겸업을 하려는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업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 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겸업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3.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2. 외국인인 채권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는 서류 또는 확약서 3.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만 해당한다) 4. 신용정보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	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7. 제40조제1호·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만 해당한다)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4. 제22조제1항, 제27조제1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항 및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5. 제4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7.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8.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 및 처리** 제15조(수집 · 조사의 원칙)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	[별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처분 사유** (제14조제2항제7호 관련) 1. 제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5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5조제7항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45조제7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45조제7항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	제14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조까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 시설과 보안대책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 이용 및 관리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3.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5.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8.17〉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7〉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제16조(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 · 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 · 조회 권한을 직급별 · 업무별로 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을 체결하여야 한다.	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신	제17조(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신용정보관리인이 제4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의 처리 3. 임직원이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4. 법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신용정보 관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임원 2.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5장 신용정보업 **제1절 신용조회업 등**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① 신용조회회사(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신용조회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회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19〕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대상자 및 수집·조사·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①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	②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말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④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7〉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8.17〉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 3.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1.25〉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1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⑤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를 갖출 것 2.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신용조회회사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같은 종류의 업체 간에 협약의 불성립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집중 제한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무단 활용 및 교환 등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4.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을 해친 경우 ⑦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⑧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은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제26조(신용정보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협의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둔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3.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신용정보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	제22조(신용정보협의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에서 신용정보협의회를 구성하며, 신용정보협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협의회가 보고한 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추심인 등) ①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0조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 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되 2만원 내로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채권추심회사 또는 제5조 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제1호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②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신용평가업 제28조(신용평가업 종사자)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신용평가업 종사자) 법 제2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제26조(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③ 신용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신용평가서를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가 한 신용평가의 등급별로 유가증권의 원리금 상환이행률을 적은 것을 말한다) 등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능력의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적힌 서류(이하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실적서등 해당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⑥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신용평가회사는 임직원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신용평가화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뢰인이 제공·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② 법 제29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부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③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제30조(의결권의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자한도를 넘겨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자한도를 넘겨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나 같은 항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7.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로 한다. 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⑧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⑨ 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8.17〉 1. 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2.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실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3. 법 제32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⑩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점포 등에서의 비치·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1.8.17〉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	⑪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정 2011.8.17〉 ⑫ 법 제32조제6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8.1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③ 개인식별정보가 이 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으로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 요구에 따르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④ 개인식별정보가 제32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① 법 제35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법 제35조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 제공사실의 통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4. 전화 5. 인터넷 홈페이지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일 및 주요 내용 등(이하 "신용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통보나 조회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3.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②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4. 전화 5. 인터넷 홈페이지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39조(무료 열람권)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1.8.17〉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신용평가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금융투자상품, 법인 및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및 신용공여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일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①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제44조(신용정보협회) ①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들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신용정보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2. 신용정보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3. 신용정보업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2. 신용정보업 관련 교육업무 및 출판업무 3.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위탁한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제7장 보칙 제45조(감독 ·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46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적용 특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3항, 제31조, 제38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 및 신용정보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겸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4항·제5항·제7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제29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33조를 위반한 자 6. 제42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3.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4.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한 자 7. 제40조 각 호를 위반한 자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1조를 위반한 자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8.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10.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11.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자 12. 제30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9〉 1. 제8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한 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 11. 제35조 후단을 위반한 자 12.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14.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 15.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58호, 2011.8.18, 일부개정]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별표】

〔별표 1〕

주요출자 요건(제6조 제4항 및 제9조 제2항 관련)

요 건	구 분
1. 주요출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일 것 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기준을 넘을 것 2)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업종과 유사한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넘을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 업종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목·다목·라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라.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사실이 경영하려는 업무의 건전한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요 건	구 분
2. 주요출자자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 가목·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 ·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21조제3항 관련)

Ⅰ. 개인

구분	집중관리 · 활용 대상 정보
1. 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신용거래정보	가. 대출 현황 나.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다.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결제·미결제 금액(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3. 신용도판단정보	가. 대출금 등의 연체 내용 나. 대위변제·대지급 발생 사실 다. 어음 또는 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라.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금융질서 문란정보)

Ⅱ. 기업 및 법인

구분	집중관리 · 활용 대상 정보
1. 식별정보	기업의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2. 신용거래정보	가.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현황 나. 시설대여 현황 다. 신용보증 현황 라. 보증보험 현황 마.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바.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사.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결제·미결제 금액(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구분	집중관리 · 활용 대상 정보
3. 신용도판단정보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도 포함한다)	가. 대출금 등의 연체 내용 나. 대위변제·대지급 발생 사실 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사실 라.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마. 리스자금 및 리스료의 연체 사실 바.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사실 사.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금융질서 문란정보)
4. 신용능력정보	가. 계열기업체 현황 등 회사의 개황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라. 자본금 증자 및 사채 발행 현황

[별표 3]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의 접수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또는 보고의 접수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의 인가 신청의 접수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6. 법 제11조에 따른 겸업업무 신고의 수리
7. 법 제13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8.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보고의 접수

8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신용조회회사의 보고에 대한 접수(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포함한다)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의 승인 신청의 접수
10.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협의회 협의·결정사항 보고의 접수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협의회 협의·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권고
11.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12.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제공 대상 신용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13.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 요청의 접수
14.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5.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감독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1.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호	1,000
2.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	1,000
3.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2호	1,000
4.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3호	1,000
5.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4호	600
6.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5호	600
7.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5호	1,000
8.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4항제1호	500
9.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6호	600
9의2.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2	500
10.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7호	600
11.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4항제2호	300
12.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8호	600
13. 법 제29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8호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14. 법 제3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9호	600
15. 법 제32조제3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0호	600
16. 법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	1,000
17. 법 제35조 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1호	600
18.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2호	600
19.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3호	600
20.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4호	600
21. 법 제38조제3항, 제4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4호	300
2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4호	1,000
23. 법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4항제3호	300
24.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5호	1,000
25.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6호	500

【시행규칙 별표】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무정지 기 간	업무정지 범 위
1.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1호	6개월	전부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7호, 법 별표 제1호	6개월	전부
3.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2호	3개월	일부
4. 법 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제2항제3호	6개월	전부
5.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 2항제4호	3개월	일부
6.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7호, 법 별표 제2호	6개월	전부
7.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7호, 법 별표 제3호	1개월	일부
8. 법 제4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5호	1개월	일부
9.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7호, 법 별표 제4호	1개월	일부
10.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7호, 법 별표 제5호	1개월	일부
11. 법 제45조제7항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7호, 법 별표 제6호	1개월	일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무정지 기 간	업무정지 범 위
12. 법 제45조제7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7호, 법 별표 제7호	1개월	일부
13. 법 제45조제7항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7호, 법 별표 제8호	1개월	일부
1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법 제14조 제2항제6호	1개월	일부
15.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8호	2개월	일부
16.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법 제14조 제2항제8호	3개월	전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시행 2011.8.20〕〔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5호, 2011.8.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5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조회회사"라 한다)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산출한 개인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2. 법 제20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기록을 보존하는 정보 중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규정에 의한 채무재조정 약정정보
4.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제3조(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
2.「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제4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영 제3조에 따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해당 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의 임대차 및 해당 업무관련 교육, 홍보, 출판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조회업에 딸린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

나.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

다.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연구조사 용역업무

2. 신용조사업(가목 및 마목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가. 사업장 현황조사업무

나.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

다. 기한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

라.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등 우편물 발송대행 업무

마.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대행업무

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3. 신용평가업에 딸린 업무

다른 법령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고시 및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하도록 지정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제5조(신용정보업 허가신청) ①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란 해당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정보집중업무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란 해당 신용평가업무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로서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7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주가 영 6조제3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주요출자자 요건) 영 제6조제4항 〔별표1〕제1호라목3)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란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제외)를 말하며 주요출자자가 금융회사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③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배주주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의 효력은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⑤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흠의 보완기간은 30일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을 말한다.

제12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규칙 제4조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겸업신고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② 규칙 제5조에 따라 겸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1. 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상임임원의 겸직이 당해 신용정보회사 및 관련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영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탁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처리 위탁관련 계약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본
2. 위탁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시설에 대한 사항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기준
4.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반기현황을 당해 연도 7월말 또는 다음 해 1월말까지 보고함으로써 제1항의 보고의무에 갈음한다.

1. 당해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이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상대방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2.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16조(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신용조회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 · 변경 · 관리) ①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2조제1항의 신용정보별로 등록·변경·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② 신용조회회사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선별기준 및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별 정보 등록 방식에 관한 사항
2.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제18조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등록시 제재에 관련한 사항
3.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어음 및 수표의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1.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2.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제18조의2(불이익 정보의 범위) 영 제15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란 제2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 다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2.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3.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의 수립,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집중관리, 활용의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범위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실행
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업무 처리절차
5.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동 신용정보의 이용이 법, 영, 규칙 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점검절차와 위반시 제재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수행하는 업무
7.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처리 절차
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업무 처리절차
9. 동의철회권 등의 업무 처리절차
10. 신용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및 보유한 정보의 정확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11. 신용정보처리 위탁의 기준
12. 그 밖에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실행절차

제23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2.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3. 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보관된 파일등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등)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① 신용조회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제공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2(신용정보의 집중·관리기관) 영 제21조제2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①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7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여야 한다.

제27조(위임직 채권추심인 자격요건) 영 제2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란 법 제44조의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28조(신용정보협의회 협의 · 결정 사항의 보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협의회가 협의·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
2.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제30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신청)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영 제2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 금액은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인적·물적시설 비용 등을 감안하여 2만원이내에서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32조(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교부하는 신용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신용평가실적서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의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평가한 내용과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기재한 서류(평가의견서)
2.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도별·업체별·신용등급별 원리금의 상환이행률을 기재한 서류(신용평가실적서)
3.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신용등급변화표)
4.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업체별·신용등급별로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등(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 신청 및 그 결정, 부도유예협약적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발생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평균누적부도율표)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및 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에 비치·공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및 비치·공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2호의 서류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10일내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20일내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작성방법은〔별표10〕부터 〔별표12〕까지에 따른다.

제33조(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평가회사 내부통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② 영 제28조제2항의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3조제1호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및 "표준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서"를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개인 비밀번호"란 다음 각 호의 비밀번호를 말한다.

1. 일회용비밀번호(OTP)
2. 금융회사에게 등록한 비밀번호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안카드의 특정 번호

제35조(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② 영 제28조제6항의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표준 조회동의서의 작성) 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정할 수 있다.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 ①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
2. 법 제32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방식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

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태, 정보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방식 중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방식을 통해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통보 또는 공시) ① 영 제28조제9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 사실을 알려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8조제9항제1호의 경우: 30일 이내
2. 영 제28조제9항제2호의 경우: 30일 이내
3. 영 제28조제9항제3호의 경우: 180일 이내

② 영 제28조제10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점포 등에서의 비치·열람
3. 영 제30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③ 영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2. 법 제32조제4항제7호 중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39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의 확인)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

2. 의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조회회사가 법 제2조제8호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1항의 제공의뢰인 확인을 갈음한다.

제40조(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우편요금, 배송요금 등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한한다.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른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를 등록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시정요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43조(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감독원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제45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적용특례)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업무이외의 신용정보업을 허가받은 자는 신용평가업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37조부터 제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 ① 신용정보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표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연도말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011-15호, 2011.8.18〉

이 규정은 2011년 8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용조회업무 허가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에 필요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요건(제6조제1항 관련)

구성	세부 요건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 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 저장장치 ○ 그밖에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시스템 성능	1. 보유정보를 절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보안체계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침입탐지제어시스템(IDS)를 갖출 것 3.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운용할 것 4.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5.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6.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7.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운용능력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별표 2]

신용평가업무 허가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제6조제2항 관련)

1. 전산설비

구분	세부 요건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ㅇ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ㅇ WEB서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ㅇ 저장장치 ㅇ 기타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시스템 성능	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보안체계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3.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운용능력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2. 자료관리체제

구분	세부 요건
신용평가 기초자료	1. 산업·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실적, 경제동향 등 각종자료의 수집·정리·가공등의 적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2. 평가대상기업 내부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
신용 평가모형	산업별·업종별로 세분화된 합리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갖추고 있을 것
신용 평가결과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Ⅰ. 목 적

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이용자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패스워드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2.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패스워드, 생체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복호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한다.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디스켓, 콤팩트디스크 등 이용 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주지시켜야 한다.

Ⅲ. 관리적 보안대책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개정
2.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의 처리
3.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 점검

4. 법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 점검
5. 임·직원 대상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교육 실시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감사체제 정비
2.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가.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나.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고객 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

③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코드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제재기준 마련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관련)

1.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 및 제3자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1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라.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1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5]

공공단체 등의 지정범위(제24조 관련)

구분	지정범위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1.「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8.「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9.「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10.「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1.「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2.「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1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식별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영 〔별표2〕의 식별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및 기업체	수 시	식별정보와 연결된 정보의 이용기관

2. 신용거래정보

(1) 개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대출현황(대출일자, 대출금액, 담보여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 등 포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단, 신용정보회사는 당해 정보를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채무보증현황(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등 포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주]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2) 기업 및 법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신용 공여 현황[1] (담보,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등 포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기업체(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 관련인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단, 신용정보회사는 당해 정보를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개인기업체·법인 및 그 관련인[2]	위와 같음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3], 연체정보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 1)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8-33조에서 정한 신용공여, 그 밖의 금융회사는 이에 준하는 정보
2)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한함
3)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대출금 등의 연체 현황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당해 기업체 ○관련인[주]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대위변제, 대지급 발생 현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현황	위와 같음	○당해 기업체 ○관련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어음·수표 거래정지 처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영 〔별표 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	위와 같음	○당해 개인 ○당해 기업체 ○관련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한함

4. 신용능력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증자 및 사채발행계획 확정내용	협조기관 (금융감독원)	○당해 기업체(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과 영 〔별표 2〕에 의한 신용능력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기업체, 법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5. 공공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경제법령 위반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위반자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변경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위와 같음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정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회생·개인회생 결정, 파산·면책 결정, 채무불이행자 등재 결정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국세·지방세·관세의 체납정보 -과태료·사회보험료·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규정에 의한 채무재조정 약정정보 -그밖의 공공정보(특허권,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주체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위와 같음

[별표 7]

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4조의2 관련)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 주체	등록 시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써 보험료 납부정보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당해 개인 및 기업, 법인	당해 공공 기관과 협의 하여 정함	신용조회회사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써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정보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신용조회회사 (단,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21조 제2항의 기관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음)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변경 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신용조회회사 (단,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21조 제2항의 기관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음)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영 제21조 제2항의 기관

[별표10]

평가실적서 작성방법(제32조제5항 관련)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는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최근 10년간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 연도별·업체별·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다만, 작성 당해연도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연간부도율은 부도업체수를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연간부도율 = 부도업체수/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는 연초에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수를 말한다.
3. 부도업체수는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중 1년 이내에 부도등이 발생한 업체수로 한다.
4.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 발행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부도업체수 및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5.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 간 부 도 율

(단위 : %)

연도별 / 등급별														
	부 도 업체수	부도 율												
AAA														
AA														
A														
BBB														
BB														
B														
CCC														
CC														
C														
투자등급														
투기등급														
전 체														
연초신용등급 보유업체수														

[별표11]

신용등급변화표 작성방법(제32조제5항 관련)

제32조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변화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업체별로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작성한다.

1. 신용등급변화표의 각 칸은 각 연말에 특정신용등급으로 변동된 업체수의 합을 각 연초의 특정신용등급 보유업체수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

   Σ(각 연말에 특정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업체수) / Σ(각 연초의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는 연초에 특정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수를 말한다.
3.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 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부도업체수 및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4.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 용 등 급 변 화 표

(대상기간 : 1998년이후 ~ , 1998년 이후 각년도별)

(단위 : %)

구 분		연 말 등 급							
		AAA	AA	A	BBB	BB	B이하	D*	WR**
연초등급	AAA								
	AA								
	A								
	BBB								
	BB								
	B이하								

* D : 부도등이 발생한 업체의 신용등급

** WR :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상환 또는 피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등급이 소멸된 비율

[별표12]

평균누적부도율표 작성방법(제32조제5항 관련)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누적부도율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신용등급부여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등이 발생한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작성한다. 다만, 작성대상기간이 n년일 경우 (n-1)년차까지 작성한다.

1. 평균누적부도율 = 1 - Π(1 - i년차 한계부도율)

   Π(1-i년차 한계부도율) = {(1-1년차 한계부도율)×(1-2년차 한계부도율)× · · · · (1- i년차 한계부도율)}

   i년차 한계부도율 = ∑(각 연도 특정 신용등급의 i년차 부도업체수) / ∑(각 연초의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1년차 부도업체수 및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3.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 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 균 누 적 부 도 율 표

(대상기간 : 1998년~)

(단위 :%)

구 분	1년	2년	3년	·····	9년	10년
AAA						
AA						
A						
BBB						
BB						
B이하						
투자등급 부도율						
투기등급 부도율						
전체 부도율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앞면)

<table>
<tr><td colspan="5">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td><td>처리기간
: 30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명(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상호 또는 명칭</td><td colspan="4">(전화번호)</td></tr>
<tr><td>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td><td></td><td>자본금 또는
기본재산</td><td colspan="2"></td></tr>
<tr><td>법인의 목적</td><td colspan="5"></td></tr>
<tr><td>허가받고자
하는 업무</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5">※ 구비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재무제표 1부.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4.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1부.
5. 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6. 출자 및 주주관계 확인서류 1부.
7.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사본 1부.
8. 그 밖에 출자자, 인적·물적·전문성 등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뒷면)

<table>
<tr><td colspan="2">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td><td></td></tr>
<tr><td colspan="2">인력에 관한 사항</td><td></td></tr>
<tr><td rowspan="3">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td><td rowspan="2">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td><td></td></tr>
<tr><td></td></tr>
<tr><td>그밖의 시설</td><td></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table>
<tr><td colspan="4">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td><td>처리기간
: 30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명(대표자)</td><td></td><td>신용정보업허가일자</td><td>0000년 00월 00일</td></tr>
<tr><td>상호 또는 명칭</td><td></td><td>허가번호</td><td></td></tr>
<tr><td>본점 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변경
사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4">※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별지 제3호 서식]

허가사항변경신고서(제9조제1항 관련)

<table>
<tr><td colspan="4">허가사항 변경 신고서</td><td>처리기간
15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명(대표자)</td><td></td><td>신용정보업
허가일자</td><td>0000년 00월 00일</td></tr>
<tr><td>상호 또는 명칭</td><td></td><td>허가번호</td><td></td></tr>
<tr><td>본점소재지</td><td></td><td></td><td></td></tr>
<tr><td>변경
사항</td><td colspan="4">1.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 상호 등 정관의 변경</td></tr>
<tr><td>변경
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4">※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별지 제4호 서식]

허가사항 변경보고서(제10조 관련)

<table>
<tr><td colspan="4">허가사항 변경 보고서</td><td>처리기간
15일</td></tr>
<tr><td rowspan="3">보고자</td><td>성명(대표자)</td><td></td><td>신용정보업
허가일자</td><td>0000년 00월 00일</td></tr>
<tr><td>상호 또는 명칭</td><td></td><td>허가번호</td><td></td></tr>
<tr><td>본점소재지</td><td></td><td></td><td></td></tr>
<tr><td>변경
사항</td><td colspan="4">1.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 정관의 변경 중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td></tr>
<tr><td>변경
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4">※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별지 제5호 서식]

지배주주 변경승인신청서(제11조 관련)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상호(성명), 업종, 국적,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본점소재지(주소지) 등
2.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주식수, 지분율, 취득방법, 취득금액 등)
3.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의 취득계획(발행회사명 및 개황, 주식취득 목적,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수, 지분율, 예정시기, 취득방법 등)
■ 첨부서류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1부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1부 5.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변동내역서 포함) 및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7. 그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휴·폐업신고서(제12조 관련)

<table>
<tr><td colspan="3">신용정보업(휴업, 폐업) 신고서</td><td>처리기간
즉시</td></tr>
<tr><td>상호</td><td></td><td>허가번호 및 일자</td><td></td></tr>
<tr><td>본점소재지</td><td></td><td></td><td></td></tr>
<tr><td>휴업기간</td><td>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td><td>폐업연월일</td><td>0000년 0월 0일</td></tr>
<tr><td>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휴업, 폐업)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3">※ 첨부서류
신용정보업 허가증</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별지 제7호 서식]

겸업신고서(제13조제2항 관련)

<table>
<tr><td colspan="4">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서</td><td>처리기간
: 15일</td></tr>
<tr><td rowspan="4">신
청
인</td><td>법인명칭</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법인주소</td><td></td><td></td><td></td></tr>
<tr><td>임원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소속기관</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신고하고자 하는
업무 및 업무방법</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4" rowspan="2">※ 구비서류
1. 겸업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겸업업무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3.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td><td>수수료</td></tr>
<tr><td>없음</td></tr>
</table>

[별지 제8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

<table>
<tr><td colspan="6">신용정보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td><td>처리기간
: 15일</td></tr>
<tr><td rowspan="5">신
청
인</td><td>성명</td><td></td><td rowspan="5">겸직
대상
법인</td><td>상호</td><td colspan="2"></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td><td>주소</td><td colspan="2"></td></tr>
<tr><td>소속</td><td></td><td>업종</td><td colspan="2"></td></tr>
<tr><td>직위</td><td></td><td>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연락처</td><td></td><td>법인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겸직하고자
하는 업무</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겸직 사유</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6">※ 구비서류</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별지 제9호 서식]

신용정보 처리위탁보고(제15조제1항 관련)

신용정보 처리 위탁 보고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계약건명	
계약상대방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수)	
계약기간	
계약내용	

※ 첨부서류

1. 신용정보 처리 위탁관련 계약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보안관리대책 포함) 사본
2. 위탁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시설에 대한 사항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기준
4.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 내용

대표이사　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반기별 신용정보 처리위탁 현황보고(제15조제2항 관련)

년도 상(하)반기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현황보고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___년 상(하)반기 중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현황(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전보고사항 제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계약건명	
계약상대방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수)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전보고대상에서 제외한 사유	

대표이사　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제25조 관련)

<table>
<tr><td colspan="3">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청서</td><td>처리기간
30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집중기관명</td><td></td><td></td></tr>
<tr><td>대표자</td><td></td><td></td></tr>
<tr><td>소재지</td><td></td><td></td></tr>
<tr><td colspan="2">집중정보의 범위</td><td></td><td></td></tr>
<tr><td colspan="2">교환대상자</td><td></td><td></td></tr>
<tr><td colspan="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3">※ 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집중관리·활용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
3.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정보협의회의 협의·결정 사항의 보고(제28조 관련)

신용정보협의회의 협의·결정 사항의 보고	처리기간
	15일

협의 · 결정 사항	1. 협의·결정 일자 □ 2. 협의·결정 내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협의·결정과 관련된 서류	없음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제30조제1항 관련)

<table>
<tr><td colspan="5">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신청서</td></tr>
<tr><td rowspan="3">자 격 구 분
(☑ 표시)</td><td>☐ 신용관리사</td><td colspan="3">자격증 번호 ( )</td></tr>
<tr><td rowspan="2">☐ 경력자</td><td>경력</td><td colspan="2">○ 경력기관 :
○ 경력기간 :</td></tr>
<tr><td>연수</td><td colspan="2">○ 연수기관 :
○ 연수기간 :</td></tr>
<tr><td>회 사 명</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td><td>연 락 처</td><td colspan="2"></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 – □□□</td></tr>
<tr><td colspan="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신 용 정 보 협 회 장 귀 하</td><td>수수료</td></tr>
<tr><td colspan="4">※ 첨부서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td><td></td></tr>
</table>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부(제30조제3항 관련)

<table>
<tr><td colspan="5">【 신 상 정 보 】</td></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d rowspan="4">사 진</td></tr>
<tr><td>주민번호</td><td colspan="3"></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3"></td></tr>
<tr><td>소속회사</td><td colspan="3"></td></tr>
<tr><td>등록번호</td><td></td><td>등록 일자</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자격 구분</td><td rowspan="2">□ 신용관리사</td><td colspan="3">자격증 번호 ( )</td></tr>
<tr><td colspan="3">합격일(년 월 일) 회차</td></tr>
<tr><td>□ 경력자</td><td>경력</td><td colspan="2">○ 경력기관 :
○ 경력기간 :</td></tr>
<tr><td>주 소</td><td colspan="4">□□□ – □□□</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 변경 사항 】</td></tr>
<tr><td>연 월 일</td><td>내 용</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able>

[별지 제15호 서식]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서(제40조제1항 관련)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_____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년 월 일(통보요구일)부터 최근 1년간 제3자 또는 본인에게 귀하의 신용정보를 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신용정보 제공내역

일자	이용자	이용목적	주요내용

* 기재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내용 별도 첨부

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대표이사 (인)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영업점 주소	

〈첨부-예시〉

□ 이용자의 범위

○ 이용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공공기관, 그밖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본인 등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 기재

□ 이용목적의 종류별 안내

○ 여신심사, 신용카드발급, 신용상황변동확인, 신용정보 집중(수집), 채권추심, 신용조사, 고용, 민원처리, 재판, 수사, 본인조회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예) 여신심사 : 대출, 지급보증 등의 신규 취급, 기간연장, 한도변경, 여신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

□ 주요내용의 종류별 안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 그밖의 안내 사항

○ 그밖에 본 통보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내용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정보시정요청서(제42조 관련)

<table>
<tr><td colspan="4">신용정보 시정요청서</td><td>처리기간 : 15일</td></tr>
<tr><td rowspan="2">요청인</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열람 및 정정청구기관</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시정요청내용</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4">※ 첨부서류
1.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1부
2.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1부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별지 제17호 서식]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제43조 관련)

<table>
<tr><td colspan="4">시정조치 결과보고서</td><td>처리기간
15일</td></tr>
<tr><td rowspan="3">보고자</td><td>상호</td><td></td><td>신용정보업
허가일자</td><td>0000년 00월 00일</td></tr>
<tr><td>대표자</td><td></td><td>허가번호</td><td></td></tr>
<tr><td>본점 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보고
내용</td><td colspan="4">1. 시정요청 내용

2. 발생사유

3. 시정조치 내용</td></tr>
<tr><td colspan="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4"></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국세기본법·시행령 신용정보 관련사항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전문개정 2011.12.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등

•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315
• 신용정보실무협의회 규정 320
•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실시기준 322
•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 330

신용정보협의회규약

제정 1997. 11. 29
개정 1998. 09. 30
개정 1999. 12. 15
개정 2000. 08. 01
개정 2000. 11. 03
개정 2000. 12. 15
개정 2001. 07. 21
개정 2002. 09. 02
개정 2002. 12. 17
개정 2006. 1. 25
개정 2009. 10. 2
개정 2009. 10. 1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설치하는 신용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 10. 2.)

제2조【대상】 이 규약은 신용정보법 제25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09. 10. 2..)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위원 15인으로 구성 한다. (개정 '09. 10. 2, '09. 10. 13.)

1. 농협중앙회 담당이사
2. 신한은행 담당이사
3. 우리은행 담당이사
4. 하나은행 담당이사
5. 중소기업은행 담당이사
6. 국민은행 담당이사
7.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담당이사

8. 새마을금고연합회 담당이사
9. 금융투자협회 담당이사
10. 생명보험협회 담당이사
11. 손해보험협회 담당이사
12.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담당이사
13. 신용조회회사 중 대표사의 담당이사
1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의장은 전국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상근부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 유고 시 전국은행연합회 담당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9. 10. 2, '09. 10. 13.)

③ 신용정보의 정책, 감독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06. 1. 25. 개정 '09. 10. 2.)

제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6〉 및 동 규정 제19조제1항의 범위내에서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관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09. 10. 2.)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제재금의 부과·사용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연구회 활동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09. 10. 2.)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6조【결의】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② 위원은 차하급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06. 1. 25. 신설)

제7조【소집】 협의회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09. 10. 2.)

제9조【결의사항 통지】 간사는 의사록을 위원 및 그 외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원본과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개정 ‘09. 10. 2.)

제10조【보고】 간사는 제4조제1호, 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09. 10. 2.)

제11조【신용정보연구회】 협의회는 신용정보연구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제4조에 규정된 협의사항 및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전산 등 부문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09. 10. 2.)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09. 10. 2.)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199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199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신용정보협의회의 협의·결정 사항의 보고 (신설 '09. 10. 2.)

신용정보협의회의 협의·결정 사항의 보고	처리기간 15일
협의 · 결정 사항	1. 협의·결정 일자 □ 2. 협의·결정 내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협의·결정과 관련된 서류	수수료 없음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8조)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정보실무협의회규정

제정 2000. 12. 15
개정 2006. 1. 25
개정 2009. 10.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정보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 10. 2)

제2조【기능】 실무협의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협의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
2.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결정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결정
4. 협의회가 인정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3조【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정보 담당부서장(전산부문의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으로 구성 한다. (개정 '09. 10. 2.)

1. 전국은행연합회
2.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 구성은행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 농·수협회원조합중 대표기관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새마을금고연합회
7. 한국금융투자협회
8. 생명보험협회
9. 손해보험협회
10.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팀)
12. 신용조회회사 중 대표사

13. 보증보험사

1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신용정보협의회 의장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담당 부서장(전산부문의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09. 10. 2.)

③ 회의소집, 의안보고,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통보 및 기타 필요한 사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담당한다.

제4조【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③ 위원은 위임장을 지참한 자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의무】 실무협의회 소속기관은 실무협의회 제 규정과 결정사항을 준수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신용정보·전산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록의 배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고 그 원본과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제7조【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보완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10. 2.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실시기준

제정 1998. 09. 30
개정 1999. 12. 15
개정 2000. 11. 03
개정 2005. 9. 22
개정 2009. 10. 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의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제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 10. 26.)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09. 10. 26.)

제3조【조사계획】 신용정보협의회는 매년도 12월말까지 조사 실시목적, 기준, 업권별 대상기관 수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익년도의 조사계획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09. 10. 26.)

제4조【조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09. 10. 26.)

1. 정기조사는 제3조에 의거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시조사는 종합집중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임점조사 또는 서면조사 방법에 의하며, 종합집중기관은 조사실시 1개월 전까지 그 방법을 정하여 해당 피 조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09. 10. 26.)

제5조【조사실시 등】 종합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1. 종합집중기관은 조사 시 피 조사기관(부서 또는 점포)장에게 "조사실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09. 10. 26.)
2. 정기조사의 조사범위는 최종 정기조사 대상기간 이후 분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 2년 이내에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종합집중기관이 정한다.

(개정 '09. 10. 26.)

3. 수시조사의 조사범위는 당해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4. 조사실시기간은 피 조사기관별로 임점조사의 경우 1일,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요구자료접수일로부터 7일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집중기관은 조사 과정상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9. 10. 26.)
5. 제4호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신용정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09. 10. 26.)
6. 조사반은 조사결과 지적사항의 입증 또는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 조사기관의 부서장, 점포장 및 관련 직원에게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관련 자료 등을 징구할 수 있다. (개정 '09. 10. 26.)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종합집중기관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피 조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신설 '09. 10. 26.)

② 제1항에 의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조사실시 2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지원】 ① 종합집중기관은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 협회(중앙회, 연합회)에 대하여 당해 회원(사원) 조사시 필요한 인력, 동행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9. 10. 26.)

② 각 협회(중앙회,연합회)는 회원(사원)사의 조사 자료 제출과 관련된 전산지원 등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09. 10. 26.)

제8조【조사결과 통보 및 조치 등】 ① 종합집중기관은 조사결과를 피 조사기관에 통보하고 등록,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9. 10. 26.)

② 종합집중기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신용정보제재금부과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09. 10. 26.)

③ 종합집중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09. 10. 26.)

④ 종합집중기관은 조사실시현황 및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연 1회 신용정보협의회에 보고한다. (신설 '09. 10. 26.)

제9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피 조사기관은 제8조제1항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종합집중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09. 10. 26.)

제10조【조사원의 준수사항】 조사원은 복무 및 조사와 관련된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 ①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기준의 세부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종합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9. 10. 26.)

② 종합집중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 등의 개정의 경우 〈별지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09. 10.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집중기관이 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차기 신용정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09. 10. 26.)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1998.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01. 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05.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09. 10. 23.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 사 실 시 서

문서번호 : 신용정보부 제 - 호

1. 조사대상기관(부서 또는 점포) :
2. 조사실시일자 : 20 . . . ~ . . * 이번 조사는 약___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3. 조사대상기간 : 20 . . ~ 조사실시 10일전
4. 조 사 원 :
5. 조사주관부서 : 신용정보부(☏ :)

위와 같이 조사실시를 명함.

20 . . .

전 국 은 행 연 합 회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요청자료 양식

1. 연체등 정보 대상자명단(주민(사업자)등록번호순)

성명 (기업체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록 코드	계좌(관리) 번호	등록금액	연체금액 *(주)	연체 기산일	등록사유 발생일

(주) 이자연체는 '1'로 표시

2. 개인 대출자 명단(주민등록번호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코드 *(주)	최초대출일자	최종변경일자	대출잔액

(주) 개인대출 : 0031

3. 개인 채무보증자 명단(주민등록번호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코드* (주)	최초보증일자	최종변경일자	보증잔액

(주) 개인 채무보증 : 33

4. 가계당좌 및 당좌예금 개설자 명단(주민(사업자)등록번호순)

성 명(기업체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코드 *(주)	법인등록번호	발생일자

(주) 가계당좌 : 11 , 당좌예금 : 21. (본 항목은 종합집중기관의 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5. 신용카드 발급자(체크카드포함) 명단(주민(사업자)등록번호순)

성 명(기업체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록코드1	개설일자	등록코드2	현금서비스 발생일자	현금서비스 금액

주) 등록코드1은 81(신용카드), 83(신용이 부여된 체크카드). 등록코드2는 카드론(0037)등 현금서비스(0041)코드. (본 항목은 종합집중기관의 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6. 기업신용공여 잔액 보유 기업체 명단(법인(주민)등록번호순)

(금액 : 백만원(반올림))

기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3) 취급 점포명	구분	1) 계정 과목	대출일자 (증권매입일 또는 보증일)	대출잔액 (증권잔액 또는 보증잔액등)	2) 10일이상 연체금액	2) 연체 기산일
					대출채권					
					유가증권					
					지급보증 등 주석					
					한도					
					담보					
					법인채무보증및채무인수약정 등					
					대출채권					
					유가증권					
					지급보증					
					한도					
					담보					
					법인채무보증및채무인수약정 등					

주1) 계정과목 : 해당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계정과목명을 기입. 한 기업체의 신용공여중 동일 계정과목에 다수의 계좌가 있는 경우 금액을 합산하고, 다수의 계정과목이 있는 경우 각각 작성.

주2) 연체금액/연체기산일의 경우 만기경과 연체원금(분할상환 연체원금) 및 연체기산일 기입

주3) 취급점포명은 한 금융기관의 본지점 전체를 조사할 경우 각 취급점포명을 기입.

〈별지 제3호 서식〉

확 인 서

1. 구 분 : □ 제재대상 □ 현지조치

2. 제 목 :

3. 내 용 :

□ 위 사실을 확인함

□ 상기 _____건에 대해 동 확인서 작성일로부터 제____일(20 . . .) 이내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20 . . .까지 공문(관련 증빙자료 별첨) 발송할 것을 확인함.

20 . . .

기관 점포장(부점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조 사 대 상 기 관
일 반 현 황

(20 . . . 현재)

1. 기 관 명 :

2. 임직원현황황 : 명

3. 자본금규모 : 억원

4. 지 점 수 : 개

5. 대출 규모 : 억원

6. 신용정보담당자 현황

직책 및 성명	직무(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

제정 1998. 10. 01
개정 1999. 12. 15
개정 2000. 11. 03
개정 2001. 07. 21
개정 2002. 04. 26
개정 2002. 09. 02
개정 2002. 12. 17
개정 2003. 6. 16
개정 2004. 6. 18
개정 2005. 3. 25
개정 2007. 8. 31
개정 2008. 7. 28
개정 2008. 9. 1
개정 2009. 10. 2
개정 2010. 8. 1
개정 2011. 11. 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제공기관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누락·지연, 거짓 등록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 10. 2.)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09. 10. 2.)

제3조【부과기준】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에 대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관련 법령, 신용정보협의회 및 관련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할 신용정보의 누락·지연, 거짓 등록 등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며, 제재금부과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개정 '08. 7. 28. '09. 10. 2.)

제4조【제재금 용도】 제3조에 의거 징수한 제재금은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용도는 신용정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특별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09. 10. 2.)

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② 신용질서 확립을 위한 세미나·행사 개최

③ 신용정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④ 신용정보 교육, 교재발간 및 포상

⑤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확충

⑥ 신용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구입 및 특별용역비

⑦ 기타 신용정보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의신청】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매월단위로 신용정보의 누락·지연, 거짓 등록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예정 통보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제재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09. 10. 2.)

제6조【사후처리】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제5조의 이의신청 등 제재금 부과 관련 사무처리를 각 협회 또는 중앙회를 통하여 업권별로 일괄처리 할 수 있다.

제7조【부과배제】 ①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배제기준(별표2)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09. 10. 2., '10. 8. 1, '11. 11. 10)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및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전산시스템 구축·변경(프로그램의 개발 및 변경 포함) 또는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경우
3. 채무재조정 이후에 폐지 또는 실효 등의 사유로 재등록 하는 경우
4. 채권의 양·수도 또는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경우
5. 기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원의 파업 및 태업

   나. 경미한 착오로 인한 등록 및 해제

   다. 기업관련 일부 정보 등록 누락

라. 식별정보 변경 등

마. 등록정보 불일치로 오류 통보된 경우

바. 특수한 대출관련 정보

사.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아. 등록유예조치 관련 정보

자. 신규 가입기관

차.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신용정보의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일괄정비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동안 제재금 부과를 배제할 수 있다. (개정 '09. 10. 2.)

제8조【부과제외】 신용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 여부에 따른 판단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09. 10. 2.)

1.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의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로서 법원, 수사기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1998.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합집중기관에 집중된 신용정보의 지연·누락 등에 대해서는 종전 신용정보업무 운용지침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01. 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1.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2. 9.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2.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3. 8. 1.부 터 시행한다. 다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4.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5. 4.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 9. 1.부터 시행한다. 단, 기업신용정보별 집중기한 단축 및 연장, 일보(평일보) 계정별 연체부분 추가 집중, 기업어음할인 및 기업어음매입 계정과목 집중방식 변경(2금융), 신용공여조사표 계정과목추가, 해외현지법인 신규집중(2금융), 기업어음(CP)정보 신규집중(자산운용사)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7.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제1조【시 행 일】** 이 기준은 2009. 10. 2.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제외한 해지(제) 지연 및 거짓 등록에 대한 제재금 부과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 신용정보 등록·해제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제재금 부과기준 3. 부정확에 따른 제재금 부과기준 중 금액오류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 재 금 부 과 기 준

1. 신용정보별 등록 시기

구 분	등 록 시 기
- 연체등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해제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개정 '08. 9. 1.)
- 개인대출정보 등록 ·해지 (개정 '09. 10. 2.)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개정 '08. 9. 1.)
- 채무보증정보 등록 ·해지 (개정 '09. 10. 2.)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개정 '08. 9. 1.)
- 가계당좌 및 당좌예금 개설·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발급 및 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등록 · 해지 (개정 '09. 10. 2.)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개정 '08. 9. 1.)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중 대출(연체포함), 지급보증, 기업어음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거래,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신용공여기간 포함) 등록 (개정 '07. 8. 31. '08. 7. 28.)	○ 일일집중 :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 (말일보 6영업일) 이내 ○ 월 집 중 : 익월 6영업일 이내
- 신용능력정보 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2. 지연 및 누락 기간별 제재금 부과기준

구분	구 분	부과기준	제 재 금	부과사유코드 (신설 '11. 11. 10.)	비 고
등록·해제(지) 지연	- 연체등 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해제	30일 이내	2만원	111	발생내역별 부 과
		90일 이내	4만원	112	
		180일 이내	6만원	113	
		180일 초과	8만원	114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지 - 채무보증정보 등록·해지 -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해지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해지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등록·해지	30일 이내	2만원	121	정보건별 부 과
		90일 이내	4만원	122	
		180일 이내	6만원	123	
		180일 초과	8만원	124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 중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거래 및 신용공여기간 포함)	5일 이내	5만원	131	정보제공 기관별 부과
		5일 초과	10만원	132	
등록·해제(지) 누락	- 연체등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해제	180일 이내	8만원	211	발생내역별 부 과
		180일 초과	10만원	212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지 - 채무보증정보 등록·해지 -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해지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해지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등록·해지	180일 이내	8만원	221	정보건별 부 과
		180일 초과	10만원	222	

구분	구 분	부과기준	제 재 금	부과사유코드 (신설 '11. 11. 10.)	비 고
등록·해제(지) 누락	- 연체등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해제	180일 이내	8만원	231	발생내역별 부 과
		180일 초과	10만원	232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지 - 채무보증정보 등록·해지 -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해지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해지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등록·해지	180일 이내	8만원	241	정보건별 부 과
		180일 초과	10만원	242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 중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 거래 및 신용공여기간 포함) 등록	10억원 미만	5만원	251	등록대상 (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10억원 이상	10만원	252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기업어음거래상황정보 등록	100억원 이하	5만원	261	
		100억원 초과	10만원	262	
	- 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	대상기업체를 4주 계속하여 등록 누락	2만원	271	- 등록대상 (개인기업 및 법인) 별 부과 - 월말여신 제외 - 기간경과시 해당 제재금을 각각 부과함
		대상기업체를 6주 계속하여 등록 누락	5만원	272	
		대상기업체를 2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 누락	10만원 (매4주차별 계속 부과) (개정 '11. 11. 10)	273	

3. 부정확에 따른 제재금 부과기준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부 과 기 준</th><th>제재금</th><th>부과사유코드
(신설 '11. 11. 10.)</th><th>비 고</th></tr>
<tr><td rowspan="5">-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중 대출, 지급보증, 기업어음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거래,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공여기간 포함) 등록 주1)</td><td rowspan="5">①대상기업체, 신용공여 (담보한도포함), 기업 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주민) 등록번호를 부정확하게 등록한 경우
②연체등정보, 신용공여(담보한도,신용 공여기간포함), 기업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의 금액을 오등록한 경우. 다만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500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는 제외)
(개정 '11. 11. 10.)
③일일여신 또는 월말여신, 기업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의 기록 보존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괄 정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금액변동포함)
(개정 '07. 8. 31.)</td><td>10건 이하 착오</td><td>5만원</td><td>311
321
331</td><td rowspan="5">등록대상 (개인기업 및 법인) 별 부과</td></tr>
<tr><td>50건 이하 착오</td><td>10만원</td><td>312
322
332</td></tr>
<tr><td>100건 이하 착오</td><td>20만원</td><td>313
323
333</td></tr>
<tr><td>300건 이하 착오</td><td>30만원</td><td>314
324
334</td></tr>
<tr><td>500건 이하 착오</td><td>40만원</td><td>315
325
335</td></tr>
<tr><td>- 연체등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카드 발급정보,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정보의 거짓 등록 및 부당한 해소</td><td colspan="2"></td><td>50만원</td><td>411</td><td>발생내역별 부과</td></tr>
<tr><td>-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금액 오류 (신설 '11.11.10.)</td><td colspan="2">- 연체등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의 등록(연체)금액을 오등록한 경우. 다만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100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는 제외</td><td>2만원</td><td>511</td><td>정보건별 기준</td></tr>
</table>

주1) 부과기준 세부사항 ①, ②, ③ 중 중복되는 경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사항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본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적용하되 기업신용정보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및 신용정보관리 규약의 개정으로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가. 제재금부과 유예기간

등록기준 변경사항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기업신용정보는 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종합집중기관이 당해 월 말일보를 등록처리하기 전까지 집중한 경우에 한함

나. 상세내용 및 배제요건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정보등록 기준 변경	관계법령 등 정보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신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등록기준 변경사항 확인후 배제	111

2. 전산시스템 구축 변경 (프로그램 개발 · 변경 포함) 및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 제재금부과 유예기간

변경사항 적용일 또는 장애 발생일 등(이하 "적용일 등"이라 함)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적용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단, 적용일 등으로부터 최장 1년 이내로 제한)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정보는 적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종합집중기관이 당해 월 말일보를 등록처리 하기 전까지 집중한 경우에 한함

나. 상세내용 및 배제요건

발생 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전산오류 (장애)등	신규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 재구축(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으로 인한 경우(금융기관의 합병 등으로 인한 전산통합 포함)	시스템 재구축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211

발생 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온라인 전송 시 통신장애로 인하여 정보가 일부만 전송되거나 불완전하게 전송된 경우	해당일자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발송한 전산파일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212
	신규카드의 현금서비스 정보가 구 카드의 현금서비스정보로 등록된 경우	전산원장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213
	대출계정과목 변경시 해제후 등록한 경우		214
협회(중앙회) 등의 전산오류(장애)등	협회(중앙회) 등의 전산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단, 사유코드 211~214의 경우에 한함)	협회(중앙회) 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와 협회(중앙회) 등의 오류사실 확인 후 배제	221

3. 채무재조정 이후에 폐지 또는 실효 등의 사유로 재등록하는 경우

가. 제재금부과 유예기간

사유별로 별도 규정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상세내용 및 배제요건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파산면책 관련	면책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등록채권을 면책결정일자로 소급하여 해제한 경우	면책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311
	면책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신용정보(연체등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는 해제되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신용정보는 해제되지 않아 미해제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면책결정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312
	파산면책 취소에 따라 연체등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313
회생계획 인가 관련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등정보를 등록사유발생일자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321
	회생계획 인가정보 등록누락으로 해지되지 않은 정보 또는 인가정보 등록사실을 알지 못하여 등록한 연체등정보를 인가일로 소급 해제한 경우		322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이행 완료로 면책되어 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 등을 면책일로 소급 해제한 경우		323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지 않아 미해제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인가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324
	회생계획 인가 폐지로 연체등정보를 재등록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 폐지 등 관련 증빙자료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 확인후 배제	325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이 아니거나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연체등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신용회복지원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331
	신용회복(프리워크아웃 포함) 지원결정이 실효 되거나 반송되어 연체등정보를 소급하여 등록한 경우		332
분할상환약정, 개별기관 워크아웃 등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분할상환금 납입 후 연체등정보를 약정체결일로 소급하여 해제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 기간은 납입일, 약정취소일 또는 실효일로부터 1개월 이내	341
	분할상환 약정 취소, 개별기관 워크아웃등 실효자에 대한 연체등정보를 재등록한 경우		342
시효이익 포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제되었으나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로 재등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인후 배제	351

4. 채권의 양수도, 채무자 변경 또는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경우

가. 제재금부과 유예기간

양수도일 또는 양도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상세내용 및 배제요건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채권의 양수	양수한 채권의 대출정보 및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등록한 경우	양수도(취소) 관련 자료 확인 후 배제	411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학자금대출 대위변제후 잔여채권 양수시 대위변제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소급 등록한 경우		412
채권 양도취소	채권 양도 후 양도취소로 재등록한 경우		421
채권양도	채권양도 시 후속업무 처리 후 양도일로 소급하여 해제한 경우	양도 관련 자료 확인후 배제	431

5.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제재금부과 유예기간

사유별로 별도 규정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함. 다만, 기업신용정보는 직원의 파업 및 태업(사유코드 511)인 경우와 신규 가입기관(사유코드 591)의 경우에 한하여 쟁의종료일 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유예하되 종합집중기관이 당해 월말일보를 등록처리 하기 전까지 집중한 경우에 한함

나. 상세내용 및 배제요건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직원의 파업등	직원의 파업 및 태업으로 인한 경우	쟁의신고사실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쟁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511
경미한 등록 및 해제 오류	일부 상환을 전액 상환으로 처리하거나 착오로 등록정보 해제 후 재등록한 경우	원장 등 관련 증빙 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오류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521
	착오로 정보 등록 후 오류 삭제한 경우		522
	등록사유 발생일 또는 해제사유 발생일을 잘못 등록한 경우	원장 등 관련 증빙 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오류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23
	대손상각처리 등으로 해당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면서 연체등정보를 변경(사유코드 변경)하지 않고 특수채권으로 신규 등록한 경우		524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외국법인 등 등록대상이 아닌 기업의 여신정보 등록 후 대상기업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원장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525
기업의 연체등 정보 등록·해제 누락	기업에 대한 정보등록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로 일괄등록 하여야 하나 두 번호 중 하나의 번호로만 등록한 후 미등록번호를 추가 등록한 경우. 또는 해제시 어느 하나를 누락한 경우	변동분 또는 원장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 기간은 등록·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31
식별정보 변경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기 등록정보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재등록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 확인 후 배제	541
	사망자의 정보를 소급 해제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542
등록정보 불일치로 재등록	법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대상 기업체 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 등록정보와 상이하여 카드개설이나 연체등정보 등록 시 오류 통보된 건을 재등록한 경우	오류통보 내역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오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551
특수한 대출 관련 정보	대출 잔액이 1000원 미만이었다가 추가대출이 발생하여 기존 대출의 등록사유발생일로 등록한 경우	원장 등의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추가대출발생일 또는 연체등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561
	예적금 담보대출을 연체시 상계처리 전에 연체등정보로 등록했다가 오등록 삭제한 경우		562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되어 등록정보를 삭제한 경우	소송관련 증빙자료와 원장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 기간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단, 2012년 1월 31일까지는 3개월 이내)	571
등록 유예조치 관련 정보	천재지변, 전염병 및 기타 사유로 일정한 대상자의 연체등정보를 등록유예 하였다가 추후 등록한 경우	등록유예조치, 협약 등 관련 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 기간은 등록유예조치일 또는 등록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581
	학자금 대출, 기업구조정협약, 신용위험평가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령과 금융기관간 협약 등에 따른 등록유예 대상인 연체등정보를 오등록 삭제하거나 추후 재등록한 경우		582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신규 가입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규로 가입한 기관의 정보등록 오류	신규가입일자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591
기타	기타 다른 사유와 유사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유사사유와 동일하게 적용	999

신용정보관리규약

2012년 10월 00일 인쇄
2012년 10월 00일 발행

발행인 박 병 원

발행처 전국은행연합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3길 9
(명동 1가 4-1)
TEL : 02) 3705 - 5000
(www.kfb.or.kr)

인쇄처 태창문예인쇄(주)
성동구 성수2가 3동 284-48
TEL : 02) 2279 - 4750~3
FAX : 02) 2269 - 3780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의 사전 동의없이 이 책자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사·전재·전송하거나 재가공·재인쇄·재판매하는 것을 금함